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집

- 일반대학 -

일시: 2017년 12월 21일

장소: 문화체육관광부 대강당 (정부세종청사 15동)





일정표

□ 1차 (수도권/충청권)

| 일정 | 행사내용 | 비고 |
|-------------|--|------------------------|
| 9:30~10:00 | ○등록 및 자료집 배부 | |
| 10:00~10:10 | ○국민의례 ○개회 및 인사말씀 | 사회 (한국교육개발원 이강주) |
| 10:10~10:30 |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 |
| 10:30~11:10 |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 |
| 11:10~11:30 | ○주요 일정 및 진단 자료 제출 요령 ○진단 운영 관련 공지 및 기타 사항 | |
| 11:30~12:00 | ○ 질의응답 | |

□ 2차 (경상권/전라권/강원/제주)

| 일정 | 행사내용 | 비고 |
|-------------|--|------------------------|
| 13:30~14:00 | ○등록 및 자료집 배부 | |
| 14:00~14:10 | ○국민의례 ○개회 및 인사말씀 | 사회 (한국교육개발원 이강주) |
| 14:10~14:30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 | |
| 14:30~15:10 |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 |
| 15:10~15:30 | ○주요 일정 및 진단 자료 제출 요령 ○진단 운영 관련 공지 및 기타 사항 | |
| 15:30~16:00 | ○ 질의응답 | |

목 차

| I.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 ··································· | 1 |
|---|---|
| II.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 9 |
| Ⅲ. 주요 일정 및 진단 자료 작성·제출 방법 4 1.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주요 일정 4 | 3 |
| 2. 정량 자료 제출 방법 ··································· | 1 |

I.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계획

2017. 12.

교 육 부 (대학평가과)

1. '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개요 및 문제점

□ '15년 평가개요

- (추진배경) 학령인구 급감 시 미충원의 지방대·전문대 집중 및 대학 경쟁력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도입('14)
 - * '23년 이후 대학 입학자원은 40여만명으로 추정('18년 입학정원 50여만명) → '13년 입학정원(56만명) 대비 '23년까지 16만명 감축 목표 설정
- (평가결과) 대학(학부 교육)의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A등급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 D·E등급 대학에 차등적 재정지원 제한* 실시
 - * 정부 재정지원사업 지원 제한, 국가장학금 · 학자금대출 제한

□ 문제점

○ '15년 평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활용·대학**의 **지표적용** 및 **평가운영** 등에서 문제점 다수 제기

| 【현장의견 수렴】 |
|------------|
| 대학 현장 관계자 |
| 및 단체 등 |
| 【자체 분석】 |
| 설문, 정책연구 등 |
| 【전문가 분석】 |
| 전문가 연구 분석 |
| 다수 |

| = | 구분 | 주요 내용 |
|---|----------------------|--|
| | 결과 활용 평가 지표 | • 전국단위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서열화 및 지역대학 고려 부족 |
| 5 | | • 정원 감축 에만 초점 |
| · | | •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 미흡 |
| | | • 법인의 책무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 평가 필요 |
| 지 | | • 비정년 트랙 저보수 전임교원 양산 문제 |
| | 평가 운영 | • 현장평가 미흡, 공정성·신뢰성 문제 |
| | | |

- ❖ '15년 평가의 문제점과 함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규모 조정의 불가피성,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 (2018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
- ⇒ (차기진단) 진단 전반에 논의로 새로운 진단 방안 마련

기구조개혁 평가 개선 기본 방향 :고등교육 정책에 맞추어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개선

< 고등교육 정책 추진 방향 >

- ◆ 앞으로 정부는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하여,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와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대학다운 대학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 국립대·강소대학 육성, 공영형 사립대 도입, 사학비리 근절을 추진하여 대학의 체질 개선
 - 연구 강화, 대학 교육 혁신, 산학협력 활성화 및 전문대 질 제고를 통해 대학의 여건에 따른 전략적 특성화 추진을 지원
 - 대입 단순화·공정성 제고,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취·창업 지원을 강화로 대학 교육에 있어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
-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개편 함과 동시에, 학사·재정 분야 제도를 적극 개선



III.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 방향

< 2018년 진단 추진 방향 >

- ◈ 기본역량 진단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
 -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원가능 범위를 달리 적용하여 고등교육 **재정 투자**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확보**
 - 대학은 체질 개선 및 전략적 특성화의 기초자료로 진단결과 활용
- ◈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권고와, 정보 제공을 통한 학생의 선택을 병행하여 학령인구 감소 대응

일반재정 지원으로 자율발전 지원

- 자율개선대학에 **일반재정 지원**
- 대학별진단 결과 제공

공공성·책무성 강화

-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 권역별 균형 고려
- 법인 책무성, 구성원 참여·소통 진단
- 부정·비리대학 제재 강화

정원 감축 권고와 학생 선택 병행

-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권고
- 학생의 **선택 지원**

법률 마련

대학 혁신을 위한 대학 진단 및 지원에 대한 법률

1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 지원

- (일반재정 지원) 세세한 등급 구분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개선대학에 대하여는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 지원
 - * **일반재정**(국정과제, '19년 도입) : ('18년) 진단→('19년) **지원**(집행의 자율성 보장)
- (진단결과 제공) 개별 대학에 대학별 진단 결과 분석 자료 제공 및 역량강화ㆍ재정지원제한대학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

A B C C D+ C C

'15년 구조개혁 평가의 문제점

- 전국 단위 6등급 구분으로 서열화, 평가 부담
- A등급(16%)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여 **양적 조정에 치중**
- 평가와 연계한 **지원 부재**로 **평가**가 **대학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함**



2018년 진단에 따른 지원·육성 방향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육성하여 자율 지방·수도권 **상생**의 **선순환 체계** 조성 개선 자율개선대학 * **일반재정**지원 → **질 높은 지역대학** 육성 → 대학 (일반재정지원) 지역인재 육성→지역인재 정착→균형 발전 역량강화대학 역량 **적정 규모화** 유도 및 **특수 목적** 사업 참여로 강화 재정지원 특화 발전 지원 대학 ▲ 제한 /← 재정 I | 운영 효율화 추진 및 기본 역량 제고 지원 П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제한

2 대학의 공공성 및 책무성 강화

- (대학 교육의 공공성 제고)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질 높은 지역대학 육성
- (대학 운영의 책무성 확보) 학교 법인의 책무성(모든 일반대 대상) 및 구성원의 참여·소통 지표(모든 일반대·전문대 대상)를 진단
- (부정·비리 대학 제재 강화) 부정·비리에 따른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부정·비리 유형에 따른 감점 기준도 강화

'15년 구조개혁 평가

- **전국** 단위 **6등급 구분**
- 법인 책무성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평가 미흡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자율개선대학 권역별 균형 고려 선정
- 모든 일반대 및 전문대 대상 **구성원** 참여·소통 계획 진단
- 모든 일반대 대상 **법인 책무성** 진단 * 전문대는 2단계에서 진단
 - **부정·비리** 대학 **제재 강화**

3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의 선택을 병행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 (객관적 기준에 따른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진단 결과, 역량 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에 감축 권고 및 권역별 정원감축 비중 하한 설정

'15년 구조개혁 평가

- 정부 주도 감축
- 평가에 따른 **감축 권고**(B~E 등급) + **재정사업 연계** 감축
- ⇒ 목표(4만) 이상인 **4.5만 감축**
- * 기타 감축 1.1 만명 별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진단**에 따른 **권고**(2만 이내)
- 권역별 정원 감축 비중 하한 설정 및 소규모 대학* 정원 감축 미권고 * 편제정원 1,000명 미만

○ (학생의 선택 지원) 대학에 대한 정보 제공(기본역량 진단 결과, 사립대학재정회계지표, 정보공시 등) 확대

<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향 검토 >

- ◇ 지방의 우수 대학이 미충원으로 여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지역 인재 유출 및 지역 발전 지체가 가속화 되지 않도록 방지 필요
- ◇ 수도권은 정원 외 학생 모집 확대로 학생 수가 증가되어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정원 감축 노력이 무력화 되는 문제 고려
- ⇒ 지역 대학에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충실히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 * 권역별 자율개선대학 육성, 국정과제(국립대·지역 강소대학 육성 및 전문대학 육성방안 수립 등) 추진
- ⇒ 수도권 대학은 교육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 (예시) 정원 외 학생 등으로 **학생 충원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일반재정** 지원 사업비 규모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 등 검토

4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 (대학 진단·지원 기제로서 법률 제·개정 추진) 새로운 진단방향에 부합하는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방안 마련

'15년 구조개혁 평가

- 구조개혁법 제정 추진(계류중)
 - **평가**를 통한 **조치**(정원감축, 기능전환, 폐교 및 퇴출경로 확보) **근거** 마련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대학 진단·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
- 정책연구를 통해 대학 폐교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고등교육법」 등 개정 검토

Ⅳ.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세부 추진 계획

1 진단 대상

- □ 기본 원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 2, 4호(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 * 분교/본교 구분 진단
- □ 예외 사유
 - o 아래 **사유**가 인정되는 대학은 진단 제외

| 구분 | 사유 |
|------------------|--|
| | 재학생 정원 100%가 종교지도자 양성 목적인 대학 |
| 종교계 | 종교계 학과 위주(재학생 50% 이상이 종교계 학과이거나,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를 받은 대학)의 대학 |
| 예·체능 계열 | 재학생 50% 이상이 예체능 계열인 대학 |
|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 신설·전환·통폐합 등으로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18.3월 기준)한 대학 |
| 기타 | 기타 특별한 사유(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가 인정되는 대학 |

- * 학과 목적, 계열 구분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의 7대 분류를 따름(17.4.1 기준)
- 정원 감축(역량강화대학에 권고하는 감축 비율과 동일한 수준) 권고 및 정부 재정사업 참여 제한* 실시
 - * 일반 재정 지원 및 특수 목적 지원 사업 참여 제한, 국가장학금(1,2유형) 및 학자금 대출은 허용(단, 정원 감축 미이행 시, 일부 제한 검토)
- 진단 제외 사유가 있는 대학이 2018년 진단에 참여(선택사항)할 경우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결과 조치 시행

- **통·폐합 신청 대학**은 진단 제외
 - ※ 통·폐합을 신청하더라도 **진단제외**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각 대학**은 **진단 준비를 해야 함**
 - 진단 대상인 본교 간 통·폐합(사이버대학, 대학원대학 등 제외)
 - '15년 평가(1주기 평가) 결과, E등급을 제외한 대학 간 통·폐합
 - * E등급을 포함하여 신청 시 통·폐합된 대학의 질 보장을 위해 **진단대상**에 포함
 - 추후 통·폐합이 추진되지 않은 경우 등 진단제외 사유 소멸 시 추가 진단
 - * 추가 진단 전에는 전국 평균 수준 정원 감축 권고 및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불허용 검토, 추가 진단 후에는 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
 - 통·폐합 신청 대학의 의무사항
 - ·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이행, 기본 여건(교원·교사·수익용 재산 등) 유지·개선 필요
 - * 통·폐합 시 정원 감축 기준: 現「대학 설립·운영 규정」등 관련 법령 적용

 ※ 양 캠퍼스가 각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수
 - · '20학년도 신입생이 통·폐합된 대학에 입학하도록 관련 조치 완료
 - 통·폐합 신청으로 진단에서 제외될 경우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 특수목적 지원사업 참여 가능, 보건·의료 계열 정원 및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 배정 등 행·재정 지원
 - 통·폐합 신청 대학에는 필요시 **컨설팅** 제공 등 지속적인 **질** 관리 및 지원을 할 예정이며,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 허용 추진(「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2 진단 방식

- □ 단계별(1·2단계) 진단 실시
 - (1단계) 대학(학부교육)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종합적으로 진단(서면 및 대면 평가)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60% 내외)을 '자율개선 대학'으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정
 - 타 재정지원사업의 권역 구분 등을 고려하여 일반대·전문대 별도로 5대 권역으로 구분

| 구분 | 권역 |
|-----|--|
| 전문대 | 수도권 / 강원·충청권 / 대구·경북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 |
| 일반대 | 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 |

- * 캠퍼스 분리 대학 중 캠퍼스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진단 대상 기간 동안 ① 수도권 재학생 비중이 50%를 초과하거나, ② 대학 본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
- '자율개선대학' 권역별 균형 선정 시, 권역별 상생 발전의 목적을 살리면서, 절대점수가 높은 대학이 많은 권역이 불리하지 않도록 50% 내외는 권역별로 선정 후, 10% 내외는 절대 점수로 선정
 - * 법인 책무성 평가(1단계, 시립대 대상)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선정 방안(일반대)

①법인책무성 지표 제외, 권역별 50% 내외 - 국·공립대 및 국립대 법인 명단(A) - 사립대 개수(B) 산출 ②법인책무성 지표 포함 후 - 권역 내 사립대 순위 (B순위까지) 산출 법인 : A - 사립대 : ②에서 B순위 내 대학

- ⇒ 권역별 선정 후, 10% 내외를 절대 점수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되. 범위를 전국으로 적용
- '자율개선대학'의 경우 1단계에서 진단을 종료하고, 정원 감축 권고 미실시 및 일반재정 지원

- (2단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정밀 진단
 - * 1단계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진단 대상에서 제외
 - 추가 지표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하고, 1·2단계 점수를 합산하여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II)으로 구분*
 - * 국·공립대는 1·2단계별 점수를 환산하여 합산
 - (1단계 점수 환산) 법인 책무성을 제외하고 1단계 정량지표에서 획득한 점수(39점 만점)를 법인 책무성 지표를 포함한 정량지표 만점 (41점) 기준으로 환산(일반대)
 - (2단계 점수 환산) 재정·회계의 안정성 지표를 제외하고 획득한 점수를 25점 만점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일반대·전문대)
 - ※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권역 구분 없이 절대 점수로 선정
 - 2단계 진단 후 일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상향 조정 검토

□ 지표별 진단팀 구성

'15년 구조개혁 평가

- 1개 팀(7~9명)이 10개 내외 대학의 모든 지표를 평가(대학별 평가팀)
- ⇒ 1개 대학 평정위원: 7~9명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1개 지표팀(10명 내외)이 진단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 (지표별 진단팀)
- ⇒ 1개 대학 평정위원 : 40명 내외
- **일정** 및 진단위원의 **적정 평가량, 평가부담** 등을 고려, **진단 그룹** 구성
- 진단팀은 **진단 그룹 내 모든 대학**의 **담당 지표만 진단**하도록 하여 **진단위원**의 전문성 및 **진단**의 **공정성 제고**
- ※ 대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표를 진단**하도록 운영 모색
 - 유사한 지표를 묶어서 지표군으로 진단
 - 대학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 후 해당 지표를 진단하고, 담당 지표 이외의 다른 지표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진단 운영

3 진단 지표 및 점수 산출

□ 진단 지표 개요

- 대학의 **준비도**·예측성을 고려하여, '15년 평가 지표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현장 의견과 국정과제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지표 개선**
 - * 대학(학부 교육)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진단
 - **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지표 중심의 대학 운영의 부작용 및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반영하여 개선
- 지표별 특성에 따라 설립, 지역, 또는 계열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정성지표의 경우 규모*를 고려
 - * 정성지표에 대해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진단할 수 있도록 진단 위원에 대학별 개황 자료를 제공하며, 특히 **조직** 및 **인력** 구성,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규모 대학**(재학생 1,000명 미만) **고려**
- 일반대와 전문대의 특성을 고려한 지표 구성
- 진단 자료는 '15년 평가 이후 3개년 자료 활용 원칙
 - * 정량적 정성 지표는 '15-'17학년도 자료, 정량지표는 최근 3년 간 공시자료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지표는 특성에 따라 자료 기준 시점 변경
- 캠퍼스 분리 대학은 특정 캠퍼스가 **편중ㆍ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 지표 개선사항

- (대학 운영의 민주성책무성 강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구성원의 참여·
 소통을 진단하고, 모든 일반대를 대상으로 학교 법인의 책무성 진단
 - 1단계에서는 대학이 법령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 등*을 법령상 요건(대표성 등)에 맞게 구성·운영하려는 계획 등을 진단
 - * 재정/재경위원회(국·공립/국립대법인), 등록금심의위원회(국·공·사립), 대학평의원회(사립), 개방이사(사립)
 - 2단계에서는 구성원 참여·소통을 보장하는 제도·절차 및 실적 등을 진단
 - 법인의 법정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부담 **노력 유도**를 위해 **'17년 실적** 및 '18년 계획을 진단

- (교원 지표 개선으로 교육 여건 강화) 교원의 일자리 수준이 악화되지 않고, 교원 운영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지표 개선
 - 전임교원 보수수준 **하한값* 설정** 및 시간강사 보수수준 상향
 - * 일반대 3,099만원, 전문대 2,470만원
 - 일반대의 경우, 대학의 **준비도**를 고려, 보수수준 **하한값을 '15-'16년**은 '17.3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2,470만원**을 적용하고 **'17년**은 **3,099만원** 적용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지표 삭제
 - 일반대의 강의규모 적절성 기준 조정*
 - * ('15년 평가) 20, 50, 100, 200, 201명 → (2018년 진단) 50, 100, 200, 201명
- (전임교원 운영 실태 진단) 대학의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 추진
 - 실태조사 결과는 2018년 진단결과에는 반영하지 않고, 차기 진단 방안 마련 시 검토
- (학생의 선택 존중) 학생 충원율 배점 상향
 - *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평가하고 '15년 평가 시 수도권/비수도권 만점 기준 유지

□ 점수산출

- 정량지표는 절대평가로 만점에서 감점, 만점 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대학의 소모적인 경쟁을 방지하고 대학의 부담을 완화
 -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 교원 관련 지표*의 만점기준은 상향하고, 그 외 지표는 '15년 평가 시 만점 기준을 유지하되 신규 지표 등 일부 지표는 예외
 - * 시간강사 보수 수준
 - (일반대) 공·사립 : 47,466원('15년 평가) → 51,250원('18년 진단) 국립대 법인 : 47,472원('15년 평가) → 51,232원('18년 진단)
 - (전문대) 공·사립 : 27,899원('15년 평가) → 28,817원('18년 진단)
 - * 전임교원 확보율(일반대)
 - 사립 : 68.586%('15년 평가) → 71.257%('18년 진단)
 - 국립대 법인 : 68.509%('15년 평가) → 71.210%('18년 진단)
- **정성지표**는 진단척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진단을 통해 등급을 부여하여 점수 산출

【[일반대] 진단 지표 및 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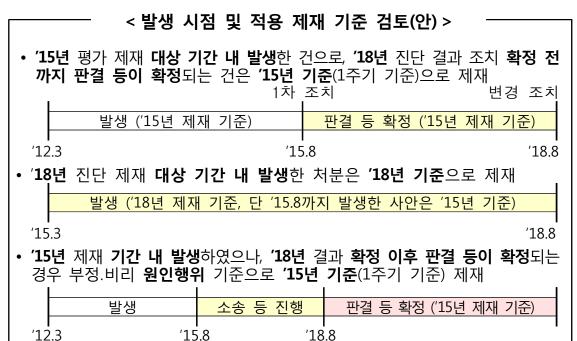
| 7 H | 지다. 승니다 | ullts | 7151 71 7 | шэ | ′15년과 | 비교 |
|------------|-------------------|-------|--|----------------------------|-------|----|
| 구분 | 진단 항목 | 배점 | 진단 지표 | 비고 | 단계 | 배점 |
| | 발전 계획 및 성과 ② | 2 | < 정량적 정성>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성과 | 규모 고려 | 2→1단계 | 15 |
| | | 10 | < <mark>정량</mark> /정량적 정성> 전임교원 확보율 |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 | 8 |
| | | -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현황 | 실태조사 | | |
| | | 3 | < 정량 > 교사 확보율 | | | 5 |
| |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 5 | <정량> 교육비 환원율 |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 | 5 |
| | 건전성 (21) | 2 | < <mark>정량/정량적 정성</mark> > 법인 책무성 - (정량) 법인 책무성 실적(1) - (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1) | 사립 계획·실적 진단 | 신규 | - |
| | | 1 | <정량적 정성 > 구성원 참여·소통(법령상 의무사항) |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계획 진단 | 신규 | - |
| 1 | 수업 및 | 10 | < 정량적 정성> 교육과정·강의 개선 - (정량적 정성) 교양 교육과정(3) - (정량적 정성) 전공 교육과정(4) - (정량적 정성) 강의개선(3) | 규모 고려 | 2→1단계 | 10 |
| 단 계 | 교육괴정 운영(20) | 10 | < 정량/정량적 정성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 (정량) 강의 규모의 적절성(1) - (정량) 시간강사 보수수준(1) - (정량적 정성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4) - (정통적 정성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4) |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규모 고려 | | 12 |
| | 학생 지원 (16) | 5 | < 정량적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 규모 고려 | | 5 |
| | | 3 | < 정량적 정성> 진로·심리 상담 지원 | 규모 고려 | | 3 |
| | | 5 | < 정량 > 장학금 지원 | | | 5 |
| | | 3 | <정량적 정성> 취·창업 지원 | 규모 고려 | | 2 |
| | 교육 성과 (16) | 10 | < 정량 > 학생 충원율 - 신입생 충원율(4) - 재학생 충원율(6) |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 | 8 |
| | | 4 | < <mark>정량</mark> >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2) - 유지취업률(2) | 계열/성별 /권역 구분 | | 5 |
| | | 2 | <정량적 정성>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 규모 고려 | | 2 |
| | 소계 | 75 | | | | |
| | 전공 및 교양 | 5 | <정량적 정성> 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제고) | 규모 고려 | | 5 |
| | 교육과정(11) | 6 | < 정량적 정성 >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 | 규모 고려 | | 5 |
| 2 | 지역사회 협력·기여(5) | 5 | <정량적 정성> 지역 사회 협력·기여 | 규모 고려 | 신규 | - |
| 단 | | 5 | < 정량적 정성 > 구성원 참여·소통(제도·절차, 실적 등) | | 신규 | |
| 계 | 대학 운영의 건전성 (9) | 4 | < 정량적 정성/정량 > 재정·회계의 안정성 - (정량) 재원의 적정성(1) - (정량) 재정의 건전성(2) - (정량적 정성)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1) | 사립 | 신규 | - |
| | 소계 | 25 | | | | |
| | 총계 | 100 | | | | |

【[전문대] 진단 지표 및 배점】

| | | | | 지표별 | '15년과 비교 | |
|-------------|---------------------------------|-----|---|----------------------------|----------|----|
| 구분 | 진단 항목 | 배점 | 진단 지표 | 고려사항 | 비고 | 배점 |
| | 발전 계획 및 | 4 | <정동적 정성>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성과 | 규모 고려 | | 5 |
| | 성과 (6) | 2 | <정량적 정성> 정원 운영의 연계성 | 규모 고려 | 신규 | |
| |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15) | 7 | < 정량/정량 적 정성 > 교원 확보율 |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 | 8 |
| | | -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현황 | 실태조사 | | |
| | | 3 | <정량> 교사 확보율 | | | 6 |
| | | 4 | < 정량 > 교육비 환원율 |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 | 6 |
| 1 단 계 | | 1 | < 정량적 정성 > 구성원 참여·소통(법령상 의무사항) |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계획 진단 | 신규 | |
| | 학사 운영 (10) | 10 | < 정량/정량적 정성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 (정량) 강의 규모의 적절성(2) - (정량) 시간강사 보수수준(1) - (정량적 정성) 수업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3) - (정량적 정성) 학생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성과(4) | 국·공립/사립/ 국립대법인 규모 고려 | | 13 |
| 771 | | 3 | < 정량적 정성 > 현장실습 교육 | 규모 고려 | | 5 |
| | 산학 협력 (8) | 5 | < 정량적 정성 > 산학협력 활동 | 규모 고려 | 신규 | |
| | | 5 | <정량적 정성 > 학생 학습역량 지원 | 규모 고려 | | 5 |
| | ±1.01 =101 | 5 | <정량적 정성 > 진로·심리 상담 지원 | 규모 고려 | | 5 |
| | 학생 지원 (17) | 2 | < <mark>정량</mark> > 장학금 지원 | | | 5 |
| | | 5 | <정량적 정성 > 취·창업 지원 | 규모 고려 | | 7 |
| | 교육 성과(19) | 8 | < 정량 > 학생 충원율 - 신입생 충원율(3.2) - 재학생 충원율(4.8) |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 | 8 |
| | | 9 | < <mark>정량</mark> > 졸업생 취업률 - 졸업생 취업률(7.2) - 유지취업률(1.8) | 계열/성별 /권역 구분 | | 10 |
| | | 2 | <정량적 정성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 규모 고려 | | 2 |
| | 소계 | 75 | | | | |
| | 전공 및 교양 | 4 | <정량적 정성 > 직업기초 및 교양 교육과정 | 규모 고려 | | 5 |
| | 교육과정(12) | 8 | <정량적 정성> 현장중심의 전공 교육과정 | 규모 고려 | | 10 |
| | 지역시회 협력·기여 (3) | 3 | <정량적 정성> 지역 사회 협력·기여 | 규모 고려 | 신규 | |
| 2 다 | | 5 | < 정량적 정성 > 구성원 참여·소통(제도·절차, 실적 등) | | 신규 | |
| 다 계 | 대학 운영의 건전성 (10) | 5 | < 정량적 정성/정량 > 재정·회계의 인정성 법인책무성 - (정량) 재원의 적정성(1) - (정량) 재정의 건전성(1.5) - (정량적 정성)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1) - (정량) 법인 책무성 실적(0.75) - (정량적 정성)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0.75) | 사립 | 신규 | |
| | 소계 | 25 | | | | |
| | 총계 | 100 | | | | |
| | | | | | | |

감점 사항

- □ 부정·비리 대학에 감점·등급하향 등 강력한 제재(구조위 심의)
- **(검토 대상) 진단 대상** 기간('15.3~'18.2) 및 **결과 도출**('18.8) 시까지의 행ㆍ재정 제재 및 감사 처분
- (추가 조사) 대학이 보고서 제출 시 부정·비리로 기소된 현황을 자진 신고하여, 검찰에서 자체 수사 및 기소하였으나 교육부에 공식 통보되지 않은 사안도 제재 대상 포함(167, 감원감사결과조차요규 추진
 - *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지진 신고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페널티 부여 예정(페널티 예시 : 누락된 건이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 유형을 1단계 상향 등)
- (제재 기준) 재정지원사업과 2018년 진단 제재기준 유형 통일
 - * 2018년 진단과 연계한 부정·비리 제재 수준은 감점 또는 등급 하향으로 한정.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시업 수혜 제재 수준은 개정 예정인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로 일원화 추진
- **(적용 원칙)**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제재 기준 적용 검토
 - * 진단 결과 발표 이후라도 해당 사유 적발 시 감점 등급 하향 및 별도 제재



- (향후 일정) '18년 전단 부정 비리 제재 방안은 별도 계획 수립 후 방안 결정
 - * 의견수렴('17.12) →계획확정('18.1) →자료검토('18.2~8) →이의신청('18.8월중) →조치확정('18.8월말)

'18.8

'12.3

□ 허위·과장 실적에 대한 제재 강화

- 허위·과장 점검이 보다 용이하도록 대학의 지표별 증빙자료를 진단시스템에 탑재*, 필요시 추가 소명자료 등 검토** 후 진단
 - * 진단시스템에서 **보고서 검토와 동시에 증빙자료 검토**가 가능하도록 보고서 PDF 파일에 주석형태로 증빙자료 첨부
 - ※ '15년 평가(1주기)는 증빙자료를 문서 형식으로 제출
 - ** 진단위원은 진단과정 중 허위·과장을 발견하는 경우, 허위·과장 수준을 고려하여 감점 가능
- 광범위하게 허위 작성한 경우, **진단 시행 후** 허위·과장이 발견된 경우 등에는 구조위 등 심의를 통해 **감점** 및 **등급** 하향 등 시행
 - ※ 진단 시행 후 발견된 허위·괴장에 대해서는 정도에 따라 감점 또는 등급하향 (구조위 심의)

□ '15년 평가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감점

- '15년 평가(1주기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비율('18학년도 기준)에 따라 최대 3점까지 차등 감점
 - * 산식(예시) = 페널티 배점(3점) × {(감축권고량-이행실적)/감축 권고량}
 - * 해당 대학이 정원 감축 계획('19학년도) 제출 시, 이행 정도에 따라 최대 2점 범위 내 차등 감점

5 진단 결과 활용

【진단 결과 활용(요약)】

'15년 구조개혁 평가 정원 감축 등급 재정지원 재정사업 평가결과 → 권고 연계 Α 제외 목적형 사업 C В 신청 가능 재정사업 C 정원 감축 연계 감축 권고 D+ / D-재정지원**제한** Ε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재정지원 정원 일반재정 특수목적 감축 지원 지원 자율 일반재정 자율개선대학 개선 지원 제외 특수목적 (일반재정지원) 대학 (신규) 지원사업 신청 가능 역량강화대학 정원 역량강화 재정지원 → 제한 /← 감축 Ι 재정지원 권고 **모든 대학**에 **진단 정보** 제공 재정지원제한 П 제한

□ 자율개선대학 대상 일반 재정 지원

- 2018년 진단 결과에 따라 **3년간**('19~'21년) 지원
- o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성과관리로 지원 규모 조정 등

□ 진단 정보 제공

- (대학 대상) 여건 및 성과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추진 시 활용하도록 개별 대학에 대학별 진단 분석 자료 제공
- (학생 대상) 학생들이 대학 선택 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공개
 - * 「고등교육법」제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의11,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5에 근거

□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희망대학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
-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단**이 **진단결과** 및 **대학 여건** 등을 분석하여 **대학 유형**에 적합한 **개선 방향** 제시

□ 정부 재정지원 제한

-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유형 I**·Ⅱ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 유형 I 대학의 경우, 대학의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성격, 대학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일부 제한
 - 유형Ⅱ(최하위)의 경우, 재정지원이 대학의 연명 수단이 되지 않도록 정부 재정지원 시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재정지원 전면 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범위(안)】

| 등급 | 정부 재정지원 사업 | 국가장학금 | | 학자금 대출 | |
|-------------------|--------------------------------|------------------|---------------|----------------|---------|
| <u> </u> | (특수 목적 사업) | I 유형 | Ⅱ유형 | 일반 | 취업 후 상환 |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 (기존) 지원 지속*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 | 신·편입생 지원제한 | 신·편입생 50%제한 | - |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Ⅱ |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100% 제한 | | 신·편입생 | 100% 제한 |

- * 재정지원제한 대학 유형 I 대학이 기 수행중 인 사업은 지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계획에 따라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대한 연차별 점검 실시 여부 및 그 결과 활용 등은 추후 구조위에서 논의

- □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 정원 감축 권고
 - 역량강화대학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 유형 I·Ⅱ에 정원 감축 권고 ※ '15년 평가주) 감축 권고 비율을 초과한 대학의 실적은 2018년 전단 감축 실적으로 인정
 - 진단 결과와 연계한 정원 감축량은 합리적 수준으로 권고
 - 정원 감축 권고 시 일반대와 전문대 간 형평성 유지

【양적 조정 방안】

| 구분 | 정원 감축 방향 | |
|-------------------------|--|--|
| 역당화재정위제한 | ▶ 진단 결과에 따라 차등적 정원 감축 권고 | |
| 정원 외 학생 선발을 정원 내로 유도 | ▶ 정원 외 학생을 일반재정지원 배분 기준 등에 반영하여, 학생 충원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사업비 조정 검토 | |
| 수요자의 선택 존중 | ▶ 대학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로, 정부의 감축 권고와 학생의 선택을 병행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우수 지역대학 육성 | |
| 자율개선 대학 | ▶ 대학원 정원 이동, 발전 전략에 따른 조정 등 자율정원 감축 | |
| 대학 간 통·폐합 촉진 | ▶ 통·폐합 촉진·유도(진단 제외·특수 목적 지원 사업 참여 등) | |
| 한계대학에 대한 강력한 구조개혁 | ▶ 대학별 컨설팅을 제공(의무화)하여 정상화 모색 후,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적용 검토 | |
| | ▶ 성인학습자 등 학령인구 외 정원으로 전환 시 일부 인정 | |

-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비율에 따라 자체 정원 감축 계획을 수립하되, 발전계획 등 질적 변화 전략과 연계하여 수립
 - 캠퍼스가 분리된 대학은 캠퍼스별 정원 비중에 따라 감축 이행
 - ※ 수도권 캠퍼스의 정원 감축 미이행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완화
- 보완평가('20년) 및 차기진단('21년) 시 정원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
 - **주간/야간** 모두 감축 실적으로 **동일하게 인정**(15년 평가: 야간 1/2인정)
 - ※ 전문대학이 학제개편(2년제↔3·4년제) 후 편제정원을 유지하면서 입학 정원은 줄어드는 경우 감축 실적으로 미인정하고,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경우도 증원으로 미인정('19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실적부터 적용)

*보완평가 :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20년에 시행,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해제 또는 추가 재정지원 노력

< 진단결과에 따른 조치의 예외 >

- (권역별 균형 감축) 특정 지역의 입학정원이 지나치게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권역별 입학정원 비중에 대한 하한선 설정
 - * 하한선 설정 방식·범위 등은 정원 감축 권고 비율 등 검토 시, 구조위 심의를 통해 결정
- (소규모 대학 예외) 편제정원 1,000명* 미만 대학은 최소 운영규모 보장을
 위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 유형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원 감축에서 제외
 - *「대학설립·운영규정」제4조 교사(校舍) 기준에서 최소 편제정원 1,00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 이를 고려
 - **동일·유관 계열 특성화** 등 **별도의 이행과제**를 부여하고, 해당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로 판정될 경우에는 **정원감축 이행**
- (특수 분야 정원 감축 예외) 해사계열 등 국가인력 수급 차원에서 타 부처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심의 통해 결정
 - 무형문화재, 보호 학문 분야 등 보호되어야 할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전공/학과/계열 등을 제외하고 정원 감축 실시
 - * 대학의 신청, 관련 부처/부서 검토, 구조개혁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 적용
- (학령인구 외 정원) 정원을 성인학습자 등 학령인구 외 정원으로 전환할 경우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일부 인정
 - * (예시) 정원 2명을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정원감축 1명으로 인정 - 최종 인정 비율 등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추후 결정
- (종교지도자 양성대학 등) 종교지도자 양성 100%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를 받거나, 대학 종교계열 50% 이상으로 진단 제외 대상이 되는 대학의 종교 계열 학과는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
-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대학)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사유로 진단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편제 완성 후 2년 도래 시 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
- (대학 특수성 고려) 그 밖의 대학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구조개혁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과 적용 유예 가능

□ 한계대학 선정 및 조치

- 2018년 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대학 중,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계대학으로 선정
 - '15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 대교협/전대협에서 시행하는 기관평가 인증에서 불인증 받은 대학
 - 부정·비리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
 - 학생 충원율(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이 현저하게 낮은 대학
- 한계대학 **조치 방안**
 - 대학별 **컨설팅**을 제공(의무화)하여 **정상화** 모색 후, 정상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62조(학교 등의 폐쇄) 적용 검토

V. 향후 추진 일정(안)

-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행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세부 시행계획 수립('17.12월, 한국교육개발원 대학평가본부)
 - 진단 편람 설명회('17.12.20~21)
 - 진단 위원 공모('17.12월 중)
 - 진단 제외 수요조사 및 신청(~'17.12.18)
 - 진단 대상 확정('18.1월 초, 구조위 심의)
 - 1단계 진단 대학별 보고서 제출(~'18.3월 말)
 - *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기관평가인증 대상 대학에 대하여 일정 기간 인증 평가 유예 검토(대교협, 전대협)
 - 1단계 결과(자율개선대학) 통보('18.6월 중)
 - 2단계 진단 대학별 보고서 제출(~'18.7월 중)
 - 2단계 진단 시행('18.7월~) 및 결과 발표('18.8월)
 - 일반 재정 지원 등('19년~)
- □ 역량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 대상 보완평가 추진('20년)
- □ 차기 진단 방안 마련
 - **진단 전반**에 대한 **재논의**(정책연구, 현장의견수렴 등)
 - 차기 진단 **시안 발표**('18년) 및 확정('19년)
 - 차기 진단 **시행**(′21년)

참고

15년 구조개혁 평가 대비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비교

| | '15년 구조개혁 평가 |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안) | |
|------------------|--|----------|---|--|
| 명칭 | • 대학 구조개혁 평가 | → |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
| 평 | • 양적 감축 에 초점 | | • 진단 및 지원 | |
| 가 목 적 | • 전국 단위 6등급 구분 | | • 일정수준 이상 자율개선대학 으로 선정 - 선정 시, 권역별 균형 고려 | |
| 및 | • 평가와 연계한 지원 부재 | → | • 자율개선대학에 일반 재정 지원 | |
| 결 과 활 용 | • A등급(16%) 외 모든 대학에 정원 감축 권고 + 재정 사업 연계 감축 | | • (자율개선대학) 정원 감축 권고 미실시 (역랑강화.재정지원제한대학) 합리적 수준 감축 권고 * 감축 권고(2만 이내)와 학생의 선택 조화 | |
| | • 법인의 책무성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평가 미흡 | | • 모든 대학 대상 '구성원의 참여·소통' 계획 진단으로 민주적 운영 유도 | |
| | | | • 모든 일반대 대상 '법인책무성' 진단 | |
| 평 가 지 표 | 교원 고용여건 악화 (지표중심 대학운영 부작용) 비정년 저보수 전임교원 양산 시간강사 고용여건 열악 (저보수, 해고 위기) | • | • 교원의 일자리 수준 개선 유도 - 전임교원 보수수준 하한값 설정 - 정년/비정년 전임교원 운영 실태 진단 - 시간강사 보수수준 상향 -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삭제 | |
| | • 규모 고려 미흡 | | • 소규모 대학(편제 1,000명 미간) 특성 고려 | |
| | • 만점기준 미제공 | | • 정량지표 만점기준 사전 제공 | |
| 평 가 운 8 | 제한된 현장평가(일반대 하위 20% 내외)대학별 평가위원 7~9명 | → | • 진단의 공정성 강화 - 현장평가 확대 (일반대·전문대 하위 40% 내외) - 지표별 진단팀 운영으로 대학별 진단 | |
| 영 | | | 위원 수 증원 (40명 내외) | |

□.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편람

1. 진단 편람 주요 수정·보완 사항

※ 아래의 대조표는 2017년 12월 1일 공청회 자료집 대비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의 주요 수정·보완 사항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용어 정의, 작성 양식, 작성 지침 관련 세부 수정·보완 사항은 편람 본문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러두기 및 대학 개황

| | 8. 정성지표의 경우 자체진단보고서 통 권 인쇄본 2부를 제출하고, 별도의 | ▶ 자체진단보고서 통권 인쇄본의 제출 부수를 |
|---------------|--|--|
| | 안내에 따라 자체진단보고서 통권과 지표별 분권, 증빙자료 파일이 담긴 USB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2부'에서 '3부'로 변경함 ▶ 'USB'를 '이동식 저장매체'로 변경함 |
| I. 일러 두기 | 9. 자체진단보고서의 편집 양식(글자 크기, 글자체, 줄 간격, 장평, 자간, 용지 여백 등)과 지표별 작성 지침에 기재된 기술 분량을 준수한 경우에만 접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지막 부분에 ' <u>(단, 〈표〉, 증빙자료, 미주</u> 는 별도의 분량 제한 없음) ['] 문구를 추가함 |
| | 12. 정량 및 정성지표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530-9565 이메일: uce@kedi.re.kr 홈페이지: http://uce.kedi.re.kr | ▼ 문의처와 문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전 화: 1899-2560 • Q&A 게시판: 대학평가본부 홈페이지 (http://uce.kedi.re.kr)에 접속하여 'Q&A 문의하기' 배너 선택 후 문의 내용 작성 |
| III. 대학 개황 | 1. 대학 현황의 〈표〉내용 총장 설립자(사립) 단과대학·학과 수 중 '학과(부)' | ▶ 〈표〉 내용을 다음과 변경함 - '총장 성명'으로 변경함 - '설립자 성명(사립)'으로 변경함 - '학과(부)' 기재 방식을 다음과 같이 추가함 7 해당 학년도 신입생이 있는 모든 학과(부) |

○ 1단계 진단

| 항목 | 지표 | 수정 전 | 수정 후 |
|---------------------------|---|---|---|
| <u> 8年</u> | 시표 | <u> </u> | TÖ T |
| | 1.1. 특성화 또는 경의 발전 계획의 수립· 성과 | ○ 작성 양식 ■ (기술 1)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 | ▶ (기술 1-1-1)의 (증빙자료) (1)번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
| 1. 발전 계획 및 성과 | | (증빙자료) (1) 2015-2017학년도에 수립 또는 추진 된 발전 계획 관련 자료(예산 포함) ■ 〔기술 2〕발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 (증빙자료) (1) 2015-2017학년도에 추진 또는 적용 된 발전 계획 관련 자료(예산 포함) ▶ (기술 1-1-2)의 [증빙자료) (1)번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
| 경파 | | (증빙자료) (1) 2015-2017학년도에 <u>적용</u> 된 발전 계획 관련 결과 보고 관련 자료(예산 포함) | (증빙자료) (1) 2015-2017학년도에 <u>추진</u> 된 발전 계 획 결과 보고 관련 자료(예산 포함) |
| | | (증빙자료 목록) | ▶ 〈표 1-1-1〉의 경우 [기술 1-1-1]의 필수 증빙자료로 포함되므로, (증빙자료 목록)에 서 〈표 1-1-1〉을 삭제함 |
| 2 . 육건 및 학영 의 전 성 | 2.1. 전임 교원 확보율 | 산출식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의 적절성 점수 산출 방법 〉 ▶ 2016-2017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의 적절성 점수 반기 전체 전체 |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적절성 점수 산출방법의 연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의 적절성 점수 산출 방법 》 ▶ 2015-2016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의 적절성 점수 ※ 2015-2016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하한값: 국립대 교원 연봉 하한액에 해당하는 2,470만원 ※ 2015-2016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최저기준: 하한값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1,729만원 ▶ 2017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의 적절성 점수 ※ 2017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하한값: 일반대(국립)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후 다른 가산 경력 없이 임용되는 조교수의호봉 산정에 따른 봉급 기준(「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산정한 3,099만원 ※ 2017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최저기준: 하한값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2,169만원 ▶ 최종 점수: 2015-2016년 점수× 2/3 + 2017년 점수 × 1/3 |

| 항목 | 지표 | 수정 전 | 수정 후 |
|-----------------------------|-------------------------|--|--|
| |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1〉전임교원 확보율(국·공립대)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2〉전임교원 확보율(시립대/국립대법인) 재화생 교지인 계약학 원격학 중복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인원 (B) 파 학생 방법 ○ 작성 방법 ○ 작성 방법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3〉전임교원 보수수준 내역(사립대 /국립대법인) | ▶ 〈표 2-1-1a〉의 각주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 ※ 총장은 전임교원 배정정원 및 전임교원 현황에서 제외 ▶ 〈표 2-1-1b〉의 항목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재학생 대화 특별 과 과 대화생 대화 등별 면입생 수 재화생 재화생 인원 인원 (B) ▶ 〈표 2-1-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
| 2. 교육건 및 학 영 의 건 성 | 2.1. 전임 교원 확보율 | 면 지 보여 생 생 임용 임육 | 현 지성 생년 임용 임용 임용 분위 보기 나 12 학생 환화 함께 보고 2-1-2〉의 각주 1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함 1 전임교원 보수수준은 실적을 진단하는 취지로 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대학의 모든 전임교원에게 지급된 보수수준 실적임 ※ 교육부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대학 설립운영규정 별표1)에 따라 구분되는 5 대 계열 중 의학 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등) 전임교원은 제외 |
| |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3〉전임교원 보수수준 내역(사립대 /국립대법인) 2 직급별 총 인원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분위부터 차례로 배정함(예: 87명의 경우 7명을 제외한 80명을 10분위로구분한 후 제외된 7명을 1분위부터 1명씩 배정함. 1-7분위: 9명, 8-10분위: 8명) | ▼ 〈표 2-1-2〉의 각주 2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² 직급은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함 ※ 진단기간 중에 재임용 또는 승진한 교원 의 경우,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직급에 해당하는 임용시작일, 임용종료일, 월별 급여, 보수총액 등을 작성함(예: 2017년 8월 1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교원의 경우, 부교수로 구분되어 임용시작일은 20170801, 임용종료일은 20171231로 입력하며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작성하고, 조교수 재직기간은 반영하지 않음) |

| 항목 | 지표 | 수정 전 | 수정 후 |
|--------------------------|------------------|---|---|
| |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3〉전임교원 보 수수준 내역(사립대 /국립대법인) | ▶ 〈표 2-1-2〉의 각주 4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함 |
| 2. 교육 및 | 2.1. 전임 교원 | 4 생년월일, 임용시작일 및 임용종료일은 연월일(YYYYMMDD) 순으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함 | 4 생년월일, 임용시작일 및 임용종료일은 연월 일(YYYYMMDD) 순으로 띄어쓰기 없이 입 력함. 임용시작일은 교원의 각 연도 임용시 작일로, 최초 임용시작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임용종료일도 사직이나 퇴직일을 의미하지 않음(예: 전임교원으로 2000년 3월 1일에 최초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해당 대학의 전임 교원으로 소속되어있는 교원의 경우, 2015 년의 임용시작일은 20150101, 2016년의 임용시작일은 20160101, 2017년의 임용 시작일은 20170101로 입력함. 임용종료일 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5년의 임용종료 일은 20151231, 2016년의 임용종료일은 20161231, 2017년의 임용종료일은 20171231일로 입력함) |
| 대학 운영 의 건전 성 | 확보율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3〉전임교원 보 수수준 내역(사립대 /국립대법인) | ▶ 〈표 2-1-2〉의 각주 5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함 |
| | | ⁵ 임용개월수는 임용시작일로부터 임용종료 일까지의 기간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된 임용개월수와 동일함 | ⁵ 임용 관련 특이사항은 해당 전임교원의 보수 수준 산정 시 고려해야할 인사 상 특이사항 (<u>각 연도 내 재임용</u> , 승진, 휴직, 파견, 연구 년 등)을 기술함 |
| |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3〉전임교원 보 수수준 내역(사립대 /국립대법인) | ▶ 〈표 2-1-2〉의 각주 6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함 |
| | | 6 임용개월수(환산)는 임용시작일로부터 임 용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한 달 미만 임 용된 기간은 제외하여 입력함(예: 임용 시작일과 종료일이 각각 20150315, 20151231인 경우, 임용개월수는(10개 월'로 입력하고 임용개월수(환산)는(9개 월'로 입력함) | 6 월별 급여 작성 시 건보 신고(과세) 월별 금 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정산이 완료된 월별 지급액을 입력하며, 건보 신고 제외(비과세) 월별 금액은 조교수 하위 1, 2분위의 경우만 작성하며 대학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을 입력함 ※ 건보 신고(과세) 및 건보 신고 제외(비과세) 월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의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등 증빙자료를 대학이 직접 교원의 동의를받아 동의서와 함께 제출함 |

| 항목 | 지표 | 수정 전 | 수정 후 |
|------------------|-------------------------|---|--|
| | | □ 작성 방법 | 1 3 1 |
| | | ○ 작성 양식 | |
| | | ■ 〈표 3〉전임교원 보수수준 내역(사립대 | ▶ 〈표 2-1-2〉의 각주 7번을 다음과 같이 수 |
| | | /국립대법인) | 정함 |
| | | ⁷ 보수총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정산이 완료 된 해당 연도의 총 보수 지급액을 입력 함 | 7 보수총액은 조교수 하위 1, 2분위의 경우, 건보 신고(과세) 또는 건보 신고 제외(비과 세) 월별 금액의 연도별 합이며, <u>부교수 및</u> 교수의 경우 건보 신고(과세) 월별 금액의 연도별 합임. 건보 신고(과세) 월별 금액의 합은 건강보험공단에 정산이 완료된 보수총 액과 일치해야 함 |
| | | □ 작성 방법 | |
| | | ○ 작성 양식 ■ 〈표 3〉전임교원 보수수준 내역(사립대 /국립대법인) | ▶ 〈표 2-1-2〉의 각주 8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함 |
| 2. 육건 및학영의 건성 | 2.1. 전임 교원 확보율 | 8 제외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정산이 완료 된 해당 연도의 총 보수 지급액 중 한 달 미만 임용기간 동안 지급 | 8 보수총액(환산)-건보 신고(과세)는 임용시작일 및 임용종료일을 기준으로 만근에 해당하는 월에 지급된 보수만 고려하여 진단주관기관에서 12개월 동안 지급된 연보수총액으로 산출함. 보수총액(환산)-건보 신고 제외(비과세)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의 경우 12개월 동안 지급된 보수로 환산되어 연보수총액에 합산되며, 이외 금액은 환산하지 않은 값이 연보수총액에 합산됨. ※ 보수총액(환산) 산출 시 제외되는 경우 ① 1달 미만 근무에 따른 급여, ②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휴직, 파견, 연구년 등으로 정규근로에 따른 보수보다 낮은 급여, ③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받은 급여, ④ 승진 전직급 동안 지급된 보수 등 |
| | | ○ 작성 양식 /표 ○ 지의국의 HAAA 및 USI/(JIEI) | > /5 0 1 0 0 7 5 0 11 0 17 5 7 |
| | | ■ 〈표 3〉전임교원 보수수준 내역(사립대 /국립대법인) | ▶ 〈표 2-1-2〉의 각주 9-11번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각주 9번을 추기함 |
| | | 9 보수총액(환산): (보수총액 - 제외 금액) / 임용개월수(환산) × 12개월 10 연간 보수총액(환산)의 조교수 하위 1, 2분위 평균값이 하한값 미만이라고 판단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에서 제외되어있는 비과세 지급 보수연간 총액을 입력할 수 있음. 단, 이경우 증빙자료로 '대학의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대학이 직접 교원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와 함께 제출함 11 급여총액: 보수총액(환산) + 건보 신고제외 급여총액 | 9 분위는 진단주관기관이 직급별 총 인원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분위부터 차례로 배 정함(예: 87명의 경우 7명을 제외한 80명을 10분위로 구분한 후 제외된 7명을 1분 위부터 1명씩 배정함. 1-7분위: 9명, 8-10 분위: 8명) |

| 항목 | 지표 | 수정 전 | 수정 후 |
|---------------|-----------------|--|---|
| 07 | ~112 | | 10 T |
| | | ○ 작성 양식 | |
| | | ■ 〈표 3〉전임교원 보수수준 내역(사립대 | ▼ 〈표 2-1-2〉의 (증빙자료)(2)를 다음과 같 |
| | | /국립대법인) | 이 수정함 |
| | | (2) 건보 신고 제외 급여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성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식별정보가 삭제된 형태로 제출) 등 | (2) 하위 1, 2분위에 해당하는 조교수의 건보 신고 제외 급여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의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성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식별정보가 삭제된 형태로 제출) 등 (교원의 동의서와 함께 제출) |
| | | □ 작성 방법 | |
| | | ○ 작성 양식 | |
| 2. 교육 | | ■ 〈표 3〉전임교원 보수수준 내역(사립대 /국립대법인) | ▼ (표 2-1-2)의 (증빙자료)(3),(4)를 다음 과 같이 추가함 (3) 교원의 급여 지급 관련 규정 및 하위 1, 2분위에 해당하는 조교수의 휴직 및 파견을 증빙할 수 있는 인시발령 공문 등 (4) 정기적으로 지급되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규정, 지침(예: 급식비 및 교통비 관련 지급 규정) 등 |
| 굑 여건 | | □ 작성 방법 | |
| 및 | 2.1. | · · · · ○ 작성 양식 | |
| 대학 운영 의 | 전임 교원 확보율 | 〈표 4〉전임교원 보수수준 분포(사립대 /국립대법인) | ▶ 〈표 2-1-3〉의 각주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 ㄱ 건전 성 | | ※ 〈표 4〉는 〈표 3〉의 <u>작성 양식 내용을</u> 활용하여 작성함 | ※〈표 2-1-3〉는〈표 2-1-2〉의 '보수총액(환산)-건보 신고(과세)' 작성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함 ※ 2015-2017년 연도별 현황을 각각 작성하되, 2017년 연도별 현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정정신고(제출 기한: 2018.3. |
| | | │ │ ○ 작성 지침 | 10.) 결과가 반영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
| | | ○ 작성 시점 | ▶ 상기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지침 (4)번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 | | • (4) 〈표 4〉(사립대)는 〈표 3〉의 작성 양식과 일치하는 대상 및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 (4) 〈표 2-1-3〉(사립대)는 〈표 2-1-2〉의 보수총액(환산)-건보 신고(과세)) 작성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 |
| | | ' " | ● 작성 지침 (4)의 다음 문구를 작성 지침 (3)번으로 이동하여 추가함 |
| | | | ※ 보훈대상자, A-3비자로 취업한 외국인 교원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 경우, 동일 호봉 또는 동일 수준 연봉계약 교원의 월보수액에 준하여 자료를 작성함 |
| | | | |

| 항목 | 지표 | 수정 전 | 수정 후 |
|-------------------|-------------|---|---|
| | | □ 산출식 (b)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 ▶ 법입(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산출식의 분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
| | | 경상비전임급+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 | 경상비전임급+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 <u>기본금중법인</u> |
| |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2〉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 ▶ 〈표 2-4-2〉의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
| | | 전입금 ²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³ | 전입금 ²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
| 2. 육건 및 학 영 의 전 성 | 2.4. 법인 책무성 | 경상 비 전입 전입 전입 금 (A) (B) (C) (D) (E) 수익 ************************************ | 경상 법정 기본 1 변인 배당 대학 교비 보인 대학 교회 의 인분계산 의계 교회 의계 의계 교회 의계 |
| |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2〉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 ▶ 〈표 2-4-2〉의 각주 3번을 다음과 같이 추 가함 |
| | | □ 작성 방법 | 3 기본금 중 법인: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별표 1 자금계산서계정과목 명세표)의 수입항목 중 관)기본금(3100)→항)출연기본금(3110)→목)법인(3112)계정과목에 계상된 금액 |
| | | ○ 작성 양식 ■ 〈표 2〉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 ▶ 〈표 2-4-2〉의 각주 4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함 |
| | | 3 법인 일반회계 재정규모: 법인 일반회계 자금계산서 내 전입 및 기부 수입, 교육 외 수입의 합 | 4 법인 일반회계 재정규모: 법인 일반회계 자금계산서 내 전입 및 기부 수입(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교육 외 수입의 합 |
| |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2〉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 ▶ 〈표 2-4-2〉의 각주 5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함 |
| | | 4 해당 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익: 해당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내 등록금 및 수 강료수입, 전입 및 기부 수입, 교육부대 | 5 해당 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익: 해당대학 교 비회계 자금계산서 내 등록금 및 수강료수 입, 전입 및 기부 수입(법인전입금, 기타전 |

| 항목 | 지표 | 수정 전 | 수정 후 | | | |
|-------------------------|------------------------------|--|--|--|--|--|
| | | 수입, 교육 외 수입의 합 | 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산학협력단 및 <u>학교기업전입금의 합)</u> , 교육부대 수입, 교 육 외 수입의 합 | | | |
| | 2.4. 법인 책무성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2〉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5 학교법인 내 설치대학 교비회계 운영수 익 총계: 학교법인에서 설치 · 운영하는 학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합 | ▼ 〈표 2-4-2〉의 각주 6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6 학교법인 내 설치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계: 학교법인에서 설치 · 운영하는 학교 중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대학원대학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의 교비회계 운영수익의 합 | | | |
| 2. 교육 | | □ 진단 방향■ 용어를 정의하는 점선 상자 안의 내용 | ▶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 | | |
| 여건 및 학 영 의 건 성 | 2.5. 구성원 참여· 소통 | * '법적 요건'은 ① 재정위원회 등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u>서울대</u> <u>학교 설치법</u> 제18조, <u>인천대학교</u> 설치법 제17조)… | * '법적 요건'은 ① 재정위원회 등(국립 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 한 법률 제8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제17조)… | | | |
| | | □ 작성 방법 | ▶ (기술 2-5-1)과 (기술 2-5-2)의 작성 내용 표를 다음과 같이 설립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함 | | | |
| | | 분류 (기술 1) (기술 2) | 분류 (기술 2-5-1) (기술 2-5-2) | | | |
| | | 자정위원회(재경위원 회), 대학평의원회, 다학평의원회, 다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 기방이사추천위원회, 기방이사 | 재정위원회 또는 재무 경영위원회(국·공립대, 국립대 법인), 대학평 의원회 또는 평의원회 (국립대법인, 사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국·공립 대), 다롱하(국·공립 의위원회(국·공립 대, 국립대법인, 사 립대), 개방이사추천 위원회(개방이사) | | | |
| | | | (사립대) | | | |
| 4. 학생 지원 | 4.1. 학생 학습 역량 지원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1〉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표 4-1-1〉의 '재학생 수' 설명 문구에 소수점 처리 방법을 명시함 | | | |
| | | ²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 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 | ²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소수점 둘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 | | |

| 항목 | 지표 | 수정 전 | 수정 후 |
|----------|-------------------------------|--|--|
| | | □ 작성 방법○ 작성 양식- 진단 요소 2: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 ▶ 진단요소 '2'를 진단요소 '3'으로 수정함 |
| | 4.2. 진로· 심리 상담 지원 | 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표 1》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표 4-2-1〉의 '재학생 수' 설명 문구에 소수점 처리 방법을 명시함 |
| | | ²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 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 | ²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
| 4. 학생 | 4.4. 취· 창업 지원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1〉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 〈표 4-4-1〉의 '재학생 수' 설명 문구에 소수점 처리 방법을 명시함 |
| 지원 | | ²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 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 | ²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소수점 둘째자리 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
| | | ■ 〈표 2〉창업 정규교과목 운영 현황 | ▶ 〈표 4-4-2〉의 '재학생 수' 설명 문구에 소수점 처리 방법을 명시함 |
| | | 1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 | 1 재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
| | 5.1. | □ 진단 자료 | ▶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을 '수도권/비수도 권'으로 변경함 |
| | 학생 충원율 | ○ 권역별(수도권/비수도권)로 구분하여 진단 | ○ <u>수도권/비수도권으</u> 로 구분하여 진단 |
| | | □ 산출식□ 작성 방법 | ▶ '권역별'을 '수도권/비수도권별'로 변경함 |
| 5. 교육 | 5.2. 졸업생 취업률 | □ 역성 영립○ 작성 양식■ 〈표 1〉졸업생 취업률 | ▶ 〈표 5-2-1〉의 각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
| 성과 | | 3 교내취업자의 경우 취업대상자의 최대 3%까지만 인정하며 3% 초과 인원은 <u>분모, 분자</u> 에서 제외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3 교내취업자의 경우 취업대상자의 최대 3% 까지만 인정하며 3% 초과 인원은 <u>취업대</u> 상자와 취업자에서 제외 |
| | | ■ 〈표 1〉 졸업생 취업률 | ▶ 〈표 5-2-1〉의 각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
| | | ※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자는 입학당시 취업자를 분모, 분자에서 제외한 자료 | ※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자는 입학 당시 취업자를 제외한 자료 |

| 항목 | 지표 | 수정 전 | 수정 후 |
|----------|--------------------------------|--|--|
| | | □ 작성 방법 ○ 작성 양식 ■ 〈표 2〉 2차 유지취업률 ※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자는 입학당 | ▶ 〈표 5-2-2〉의 각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자는 입학 |
| 5. | | 시 취업자를 <u>분모, 분자에서</u> 제외한 자료 □ 진단 요소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추진 주체' 를 정의하는 점선 상자 안의 내용 | 당시 취업자를 제외한 자료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추진 주체' 제외 대상에 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함 |
| 교육 성과 | 5.3.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학이 제공하는… - 추진 주체: 대학 본부 및 단과 대학·계열 차원에서 주기적으 로 실시되는 수요자 만족도 조 사에 한함(부속기관, 학과에서 실시한 조사 제외) |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학이 제공하는… - 추진 주체: 대학 본부 및 단과대 학·계열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실 시되는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한 함(부속부설기관과 학과에서 실 시한 조사는 제외하되, 대학 본 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부속부설기 관 실시 조사는 포함 가능함) |

○ 2단계 진단

| 항목 | 지표 | 수정 전 | 수정 후 |
|-----|------|---|---|
| 7. | 7.1. | □ 작성 방법 | |
| 지역 | 지역 | ○ 작성 양식 | ▶ 〈표 7-1-1〉의 각주 1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 |
| 사회 | 사회 | ■ 〈표 1〉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 실적 | |
| 협력· | 협력· | ¹ 진단 방향에 제시된 협력·기여 <u>중 하나</u> | ¹ 진단 방향에 제시된 협력·기여 유형 <u>을 참</u> |
| 기여 | 기여 | 를 기재함 | <u>고하여</u> 기재함 |

○ 기타 공통 사항

| 구분 | 수정 전 | | 수정 전 | | 수정 후 | | |
|--------------------|---|------------|---|--|---|--|--|
| (표〉, (기술) 번호 | • 〈표〉와 (기술) 번호가 지표 구분 없이 제시됨 (예) '2.2 교사 확보율의〈표 1〉 교사 확보율 | | (예) '2.2 교사확보율의〈표 1〉 교사확보율 | | ➤ 지표 번호를 반양하여〈표와 (기술) 번호를 변경함 (예) '2.2 교사확보율의 <u>〈표 2-2-1</u> 〉교사확보율 | | |
| (증빙자료 목록) 제시 순서 | ■ 편람에 기술된 순서대 (예) '5.3 교육 수요' (증빙자료 목록) 구분 정자료 변화 (기술 1) 〈표 1〉 | 자 만족도 관리'의 | 당성 방식과 동일 경하여 제시함 요자 민족도 관리의 공당자료 번호 | | | | |

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 〈별첨〉참조)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 일반대학 -

2017. 12. 21.





| I. 일러두기 ···································· |
|---|
| Ⅱ. 진단 지표3 |
| Ⅲ. 대학 개황 ··································· |
| < 1단계 진단 > |
| 1. 발전 계획 및 성과 |
| -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 13 |
|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
| - 전임교원 확보율 |
| - 교사 확보율 |
| - 교육비 환원율 |
| - 법인 책무성41 |
| - 구성원 참여·소통 ··································· |
| 3.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
| - 교육과정·강의 개선 ······ 50 |
|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53 |
| 4. 학생 지원 |
| - 학생 학습역량 지원 |
| - 진로·심리 상담 지원 ······ 69 |
| - 장학금 지원 74 |
| - 취·창업 지원 ··································· |
| 5. 교육 성과 |
| - 학생 충원율 82 |
| - 졸업생 취업률 87 |
|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93 |

| 〈 2단계 진단 〉 97 |
|--|
| 6.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
| - 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제고) 99 |
| -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 |
| 7. 지역사회 협력ㆍ기여 |
| - 지역사회 협력·기여 ··································· |
| 8. 대학 운영의 건전성 |
| - 구성원 참여·소통 ··································· |
| - 재정·회계의 안정성 ··································· |

I. 일 러 두 기

- 1. 일반대 간의 통합, 본/분교 통합,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 등에 해당하는 통합 및 전환 대학의 경우 하나의 대학으로 간주하여 통합 및 전환 전 (前) 대학의 자료도 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 2. 일반대와 전문대 간의 통합, 전문대에서 일반대로 전환 등에 해당하는 통합 및 전환 대학의 경우 일반대 자료만을 대상으로 진단합니다.
- 3. 캠퍼스는 본교와 통합하여 하나의 대학으로 간주하여 진단합니다. 단, 캠퍼스 분리 대학 중 캠퍼스가 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은 진단 대상 기간 동안 ① 수도권 재학생 비중이 50%를 초과하거나, ② 대학본부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합니다.
- 4. 본/분교 분리 진단 대상 대학의 경우 분교의 권역은 분교의 소재지 기준입니다.
- 5.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의 공시 자료를 활용하는 정량지표의 경우 각 연도의 자료 작성 지침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연계·활용하며, 조사 지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연도 자료와 분리하여 진단합니다.
- 6. 전체 대학, 설립유형별, 권역별 평균은 상·하위 극단값(각 해당 집단 전체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난 값)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 7. 정량지표 작성 양식에서 음영() 처리된 부분은 관계기관 연계자료 및 산식 적용 부분이며, 음영 처리되지 않은 부분은 대학에서 직접 작성하고 지표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온라인 시스템에 탑재해야 합니다. 단, 표 안 대각선() 처리된 부분은 적용이나 작성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 8. 정성지표의 경우 자체진단보고서 통권 인쇄본 3부를 제출하고, 별도의 안내에 따라 자체진단보고서 통권과 지표별 분권, 증빙자료 파일이 담긴 이동식 저장매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9. 자체진단보고서의 편집 양식(글자 크기, 글자체, 줄 간격, 장평, 자간, 용지 여백 등)과 지표별 작성 지침에 기재된 기술 분량을 준수한 경우에만 접수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표>, 증빙자료, 미주는 별도의 분량 제한 없음).

- 10. 지표별 최종 점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자리까지 산정합니다.
- 11. 제출한 자료의 오류 또는 허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대학의 소명과 대학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페널티가 부여되고, 필요 시 감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2. 정량 및 정성지표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1899-2560
 - Q&A 게시판: 대학평가본부 홈페이지(http://uce.kedi.re.kr)에 접속하여 'Q&A 문의하기' 배너 선택 후 문의 내용 작성

Ⅱ. 진단 지표

○ 1단계 진단: 5개 항목, 15개 지표, 총점 75점

| 항목 | 진단 지표 | 진단 요소 |
|----------------------------|--|---|
| 발전 계획 및 성과 (2) |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2) |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 발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발전 계획의 개선 및 조정 발전 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운영 간 연계성 |
| | 전임교원 확보율 (10) | 전임교원 확보율(10):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 교원 보수수준 |
| 교육 | 교사 확보율 (3) | ㅇ 교사 확보율(3) |
| 여건 및 | 교육비 환원율 (5) | ㅇ 교육비 환원율(5) |
| 대학 운영의 건전성 (21) | 법인 책무성 (2) | 법인 책무성 실적(1)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1) |
| | 구성원 참여·소통 (1) |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위원의 대표성, 위원회 구성 절차 등)에 부합하는 위원회 구성 계획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계획 |
| 수업 및 교육 과정 | 교육과정·강의 개선 (10) | 교양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3) 전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4) 교양·전공 교과목 강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3) |
| 운영 (20)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10) | 강의 규모의 적절성(1) 시간강사 보수수준(1)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4)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4) |

| 항목 | 진단 지표 | 진단 요소 |
|------------------|-------------------------|--|
| | 학생 학습역량 지원 (5) |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습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운영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실적 |
| 학생 지원 (16) | 진로·심리 상담 지원 (3)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운영 진로·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운영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선 실적 |
| | 장학금 지원 (5) | ○ 장학금 지급률(5) |
| | 취·창업 지원 (3)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취·창업 지원 체계 구축·운영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실적 |
| | 학생 충원율 (10) | 신입생 충원율(4)재학생 충원율(6) |
| 교육 성과 | 졸업생 취업률 (4) | 졸업생 취업률(2)유지취업률(2) |
| (16)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2)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체계 운영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실적 |

○ 2단계 진단: 3개 항목, 5개 지표, 총점 25점

| 항목 | 진단 지표 | 진단 요소 |
|------------------------------|-----------------------------|---|
| 전공 및 교양 | 교양 교육과정 (핵심역량 제고) (5)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의 구체적 설정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
| 교육 과정 (11) | 전공 교육과정 (전공능력 배양) (6)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공능력의 구체적 설정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
| 지역 사회 협력· 기여 (5) | 지역사회 협력·기여 (5)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수요 분석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대학의 지원 및 실적 환류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의 개선· 보완 |
| 대학 운영의 건전성 | 구성원 참여·소통 (5) | 구성원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규정, 지침 등) 마련 주요 의사 결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준수 주요 의사 결정에 학생의 참여가 구현된 실적 및 노력 구성원간의 합의·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및 개선 사례 |
| (9) | 재정·회계의 안정성 (4) | 재원의 적정성(1): 등록금 의존율 재정의 건전성(2): 학생 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1) |

ㅇ 정량지표 만점기준

| 항목 | 진단 지표 | 진단 요소 | 구분 | 만점 기준 |
|---------------------------------------|------------------|--|-------|---------------------|
| | 2.02 | | 국·공립 | |
| |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확보율 | 사립 | 71.257 |
| | 7-2-6 | | 국립대법인 | 71.210 |
| | 교사 확보율 | 교사 확보율 | 전체 | 100.000 |
|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 | | 국·공립 | 316.037 |
| 건전성 | 교육비 환원율 | 교육비 환원율 | 국립대법인 | 312.962 |
| | | | 사립 | 156.305 |
| | | 법정 부담금 부담률 | 사립 | 100.000 |
| | 법인 책무성 | 법인(일반회계) 재정 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 사립 | 57.209 [*] |
| | | 강의 규모의 적절성 | 전체 | 0.470 |
|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 시간강사 보수수준 | 국립 | |
| | | | 공·사립 | 51.250 |
| | | | 국립대법인 | 51.232 |
| 학생 지원 | 장학금 지원 | 장학금 지급률 | 전체 | 18.991 |
| | |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 99.517 |
| | 학생 충원율 | 신답생 중전포 | 비수도권 | 98.774 |
| 교육 성과 | প্স তেবল | 재학생 충원율 | 수도권 | 104.702 |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 /개혁/경 중천필 | 비수도권 | 97.656 |
| | 조심계 취심된 | 졸업생 취업률 | 6대 권역 | |
| | 宣 伯/8 刊伯哲 | 졸업생 취업률 졸업생 취업률 6 유지 취업률 6 | | |
| | | 재원의 적정성 (등록금 의존율) | 사립 | |
| 대학 운영의 건전성 | 재정·회계의 안정성 | 재정의 건전성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 사립 | |
| | | 재정의 건전성 (재학생 1인당 교육비) | 사립 | |

^{* 2016}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한국사학진흥재단) 기준

Ⅲ. 대학 개황

1. 대학 현황

- 대학 현황을 대학정보공시를 위해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제출하는 자료와 일 치되도록 작성함
- 캠퍼스가 있는 대학의 경우, 본교/캠퍼스로 구분하여 각기 현황을 작성함

| 총장 성명 | | | 전화번호 | 2 | | |
|-----------------------------|------------------|------------------|----------|----------------|------------------|--------|
| 설립자 성명(사립) | | | 설립연도 | | | |
| 종 류 ¹ | | | 본교/캠퍼 | 스 ² | | |
| 소재지 ³ | | | 설립유형 | 3 ⁴ | | |
| <u></u> 학 | ·생수 ⁵ | | | 교직 | 원수 | |
| 편제정원 | 재호 | | 전임교원 | 비져이 |]교원 ⁶ | 직원 |
| 건/개 6 년 | 정원 내 | 정원 외 | 인입파전 미신인 | 1 JUL (2 | 76 | |
| 명 | 명 | 명 | 명 | | 명 | 명 |
| 단과대학·학과 수 | 단과대학 | | | | | 개 |
| 인과대학 역과 구 | 학과 | (부) ⁷ | | | | 개 |
| | '16ર્ષ | <u></u> 결산 | | | | 천원 |
| 재정 현황 | '17년 결산 | | 천원 | | | 천원 |
| | '18년 예산 | | | | | 천원 |
| 주소 | | | | _ | | |
| 홈페이지 | | | | | | |

¹ 종류: 대학, 전문대학

² 본교/캠퍼스: 본교, 캠퍼스

³ 소재지: 17개 광역시·도 기준으로 작성

⁴ 설립유형: 국립, 공립, 국립대 법인, 사립

⁵ 학생 수는 학부 기준

⁶ 겸임, 초빙, 시간강사, 기타 비전임 교원의 수

 $^{^{7}}$ 해당 학년도 신입생이 있는 모든 학과(부)로, 모집단위를 기준으로 기재함

[※] 대학 현황은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함

2. 대학 연혁

○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A4 1쪽 이내에서 개조식으로 기술함

| 시기 |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대학 기구표의 | 경우 그림 또는 도표 | 로 제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정부재정지원사업 실적

ㅇ 진단 기간(2016-2018년) 내 정부재정지원사업 실적을 기재함

(단위: 천원)

| 변호 | 선정연도 | 사업기간 | 지원사업명 1 | 사업비 | 출연처² |
|----|-----------|-------------------|-------------------------|-----|------|
| | odl) 2017 | 20170301-20180228 | 2017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9 | | | | | |
| 7 | | | | | |

5. 단과대학 개황

| 번호 | 단과대학명 | 학과 수 | 학생 수 |
|----|-------|------|------|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6. 자체진단 추진 현황

1) 주요 연락처

| 소속 및 직위 | 이름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
| 총장 | | | | |
| 자체진단위원장 | | | | |
| 진단담당관 | | | | |
| 대학주소 | | | | |

2) 자체진단위원회 명단

| 소속 및 직위 | 이름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e-mai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자체진단 추진 개요

○ 자체진단 계획 수립에서 결과 보고까지 일련의 추진 과정을 개조식으로 A4 2쪽 이내로 기술함

1단계 진단

항목: 1. 발전 계획 및 성과

지표: 1.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

획의 수립·추진·성과

배점: 2

□ 진단 방향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에 따른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는지를 진단

□ 진단 요소

-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 (정성)
- 발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정성)
- 발전 계획의 개선 및 조정 (정성)
- 발전 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운영 간 연계성 (정성)
 - * '학부(과)'는 학칙에서 정한 입학전형 모집단위를 의미함
 - ** '정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의미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 해당 대학에서 2015-2018학년도에 추진한 학부(과) 및 정원 운영 사항을 중심으로 진단(정원 감축 량 등 정량적 요소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
 - ※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원 운영의 연계성을 기술함

□ 진단의 주안점

-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 학내·외 여건 분석과 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결과 반영의 체계성, 발전 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추진 체계 및 절차의 적절성, 발전 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예산 등) 확보 및 집행의 우수성
- 발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대학 운영 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 발전 계획의 개선 및 조정: 환류의 체계성, 환류 체계를 통한 발전 계획 개선 실적의 우수성
- 발전 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운영 간 연계성: 정원 운영의 절차·방법의체계성과 구체성, 다양한 집단(대학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 지역사회 등)의 참여 및 의견 수렴 정도, 발전 계획의 내용·방향과 정원 운영의 논리적연계성

□ 진단 자료

| 구분 | 자료 | 해당(공시)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 | 2015년 | | 2015년 4월 1일 |
| | 이하자이 키큐 | 2016년 | 미치벼 게츠 키크 | 2016년 4월 1일 |
| | 입학정원 자료 | 2017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4월 1일 |
| 전체 | | 2018년 | | 2018년 4월 1일 |
| | 발전 계획의 | 2015년 | | 2015- 1 0 01 141 |
| | 수립・추진・성과,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정원 운영 관련 자료 | 2017년 | | |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Α | В | С | D | Е |
|----|----|------|------|------|------|
| 점수 | 2점 | 1.6점 | 1.2점 | 0.8점 | 0.4점 |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

[기술 1-1-1]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

| □ 발전 계획의 내용 |
|-------------------------------------|
| - 발전 계획에 대한 개요 |
| - 발전 계획의 목표와 성과지표 및 연도별 세부 실행 계획 내용 |
| □ 발전 계획 수립 과정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 |

- 학내·외 여건과 대학 구성원 의견의 분석 및 반영 내용
 - 발전 계획 추진 관련 체계 및 절차
 - 발전 계획 추진을 위한 자원(예산 등) 확보, 집행 실적

[중빙자료]

- (1) 2015-2017학년도에 추진 또는 적용된 발전 계획 관련 자료(예산 포함)
- (2)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진단 요소 2: 발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기술 1-1-2] 발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 발전 계획과 대학 운영과의 연계

- 발전 계획과 대학 운영(교육과정, 학생 지원, 교육 성과 등) 간의 정합성 ※ 발전 계획 추진 목표나 성과지표의 계획 대비 성과 향상 등을 포함해 기술

[증빙자료]

- (1) 2015-2017학년도에 추진된 발전 계획 결과 보고 관련 자료(예산 포함)
- (2)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 진단 요소 3: 발전 계획의 개선 및 조정

[기술 1-1-3] 발전 계획의 개선 및 조정

- □ 환류 체계를 통한 발전 계획의 개선·조정 실적
 - 환류 체계(성과지표 평가, 자체 평가, 만족도 조사 등)의 절차 및 내용
 - 환류 체계를 통한 발전 계획의 개선·보완 실적

[증빙자료]

- (1) 2015-2017학년도에 추진된 발전 계획 관련 환류 체계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
- (2)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 진단 요소 4: 발전 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운영 간 연계성

〈표 1-1-1〉입학정원 운영표

| 연도 | 단과대학 | 학과 (모집단위) ¹ | 구분 ² | 학과특성 ³ | 입학정원(명) ⁴ |
|------|------|---------------------------|-----------------|-------------------|----------------------|
| 2015 | | | | | |
| 2016 | | | | | |
| 2017 | | | | | |
| 2018 | | | | | |

- ¹ 학과(모집단위)는 해당 학년도 신입생이 있는 모든 학과로, 학과는 모집단위를 의미함 (예: '국제학부'가 모집단위일 경우, 학과(모집단위)란에 '국제학부'로 입력함)
- 2 구분은 주간, 야간, 계절제, 원격 중 택1하여 기재함
- ³ 학과특성은 일반과정, 산업체위탁, 특별과정, 계약학과, 학사학위전공심화, 학사학위전공심화(경력 있음), 학사학위전공심화(경력 없음), 학석사통합과정, 산학협력취업약정제 중 택1하여 기재함
- 4 입학정원은 학칙에서 정한 해당 학년도 신입생의 입학정원을 의미함
- ※ 〈표 1-1-1〉은 보고서 본문에 포함하지 않고 [기술 1-1-4]의 증빙자료(1)로 제출함

〈표 1-1-2〉입학정원 운영 요약표

| 단과대학 | 학과 | | 입학정 | 원(명) ² | |
|------|---------------------|---------|---------|-------------------|---------|
| 근শ대의 | (모집단위) ¹ | 2015학년도 | 2016학년도 | 2017학년도 | 2018학년도 |
| | | | | | |
| | | | | | |
| | | | | | |
| 7 | 4 | | | | |

※ 〈표 1-1-2〉는 〈표 1-1-1〉의 작성 양식 내용을 활용하여 작성함

[기술 1-1-4] 발전 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운영 간 연계성

| □ 의견 수렴, 여건 분석 등을 통한 정원 운영의 합리성 - 정원 운영의 절차와 방법 ※ 정원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을 설명하고, 각 과정별 주요 참여 집단 및 참여 내용, 대내·외 의견 수렴 및 여건 분석 결과가 정원 운영에 반영된 내용을 상술 |
|---|
| □ 발전 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운영 간 연계성 - 2015-2018학년도 학부(과) 및 정원 운영과 발전 계획 간 연계성 ※ 정원 감축의 정량적 실적은 2018년 진단의 취지와 무관한 것으로 진단 대상에서 제외함 |
| [증빙자료] (1) <표 1-1-1> 2015-2018학년도 입학정원 운영표 (2) 연도별 정원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규정, 기타 근거자료 |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1-1-1] | | |
| [기술 1-1-2] | | |
| [기술 1-1-3] | | |
| [기술 1-1-4] | | <표 1-1-1> 2015-2018학년도 입학정원 운영표 |
| <班 1-1-2> | | |

ㅇ 작성 지침

- (1) [기술 1-1-1]은 2015-2017학년도에 적용되는 발전 계획을 기준으로 기술하고, 기간 중 발전 계획을 새롭게 수립한 경우에는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발전 계획을 A4 2쪽 이내로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 ※ 자료 기준일 이전에 발전 계획이 수립된 경우 간략 기재 가능
- (2) [기술 1-1-2]-[기술 1-1-4]의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각 A4 2쪽 이내로 작성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 (3) 〈표 1-1-1〉의 2015, 2016, 2017년 자료는 대학정보공시자료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와 일치하도록, 2018년 자료는 대학정보공시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와 일치하도록 대학이 작성함. 입학정원을 공시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도 2015-2018학년도 자료를 대학이 작성함
- (4) <표 1-1-1>은 보고서 본문 내에 기술하지 않고 반드시 [기술 1-1-4]의 첫 번째 증빙자료로 별도 제출함
- (5) 〈표 1-1-2〉는 〈표 1-1-1〉을 바탕으로 대학이 작성함

항목: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지표: 2.1.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 10

□ 진단 방향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 정도 및 확보 노력을 진단

□ 진단 요소

- o 전임교원 확보율 (10점, 정량)
 - *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사립대/국립대법인)
- 전임교원 보수수준 (-1.5점, 페널티, 정량 및 정성, 사립대/국립대법인)

□ 진단 자료

- 설립유형별(국·공립대/사립대/국립대법인)로 구분하여 진단
- 전임교원 보수수준(페널티, 사립대/국립대법인)

| 구분 | 자료 | 공시(해당) 연도 | 출처 | 자료기준일 |
|---------------|------------------------------|-----------|------------------|--------------------------|
| | -101-01 | 2016년 | | 2016년 4월 1일 |
| | 전임교원 배정정원 | 2017년 | 교육부 및 관계기관 자료 | 2017년 4월 1일 |
| 국립대/ | 11000 | 2018년 | 1 1 2 2 | 2018년 4월 1일 |
| 공립대 | | 2016년 | | 2016년 4월 1일 |
| | 전임교원 현원 | 2017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4월 1일 |
| | | 2018년 | | 2018년 4월 1일 |
| | -1 vl -1 -1 41 - A | 2016년 | | 2016년 4월 1일 |
| | 학생 및 전임교원 현황 | 2017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4월 1일 |
| | | 2018년 | | 2018년 4월 1일 |
| 사립대/ 국립대법인 | | 2015년 | | 2015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전임교원 보 수수 준 자료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6년 1월 1일 ~ 12월 31일 |
| | | 2017년 | | 2017년 1월 1일 ~ 12월 31일 |

□ 산출식

<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점수 산출 방법 >

(국·공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점수 = ① 전임교원 확보율 점수

(사립대/국립대법인)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점수 = ① 전임교원 확보율 점수

+ ② 전임교원 보수수준 점수(페널티)

+ ③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정도 점수

※ 각 정량 진단 요소별 점수와 가산점을 합한 점수는 각 정량 진단 요소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전임교원 확보율 점수

< 전임교원 확보율 점수 산출 방법 >

(국·공립대)

- ▶ 연도별 점수
- 전임교원 확보율 연도별 국·공립대 만점 기준 이상 대학: 10점
- 전임교원 확보율 연도별 국·공립대 만점 기준 미만 대학:

10점 × 해당대학값 연도별국·공립대만점기준

▶ 최종 점수: 2016년점수+2017년점수+2018년점수

(사립대)

- ▶ 전임교원 확보율 사립대 만점 기준 이상 대학: 10점
- ▶ 전임교원 확보율 사립대 만점 기준 미만 대학: 10점 × 해당대학3년평균 사립대만점기준

(국립대법인)

- ▶ 전임교원 확보율 국립대법인 만점 기준 이상 대학: 10점
- ▶ 전임교원 확보율 국립대법인 만점 기준 미만 대학: 10점 × ____해당대학3년평균 국립대법인만점기준

< 연도별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 방법 >

(국·공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 $\frac{전임교원수(명)}{전임교원배정정원(명)} \times 100$

(사립대/국립대법인)

전임교원 확보율(%) = $\frac{$ 전임교원수(명)}{교원법정정원(명)} \times 100

② 전임교원 보수수준(페널티, 사립대/국립대법인)

- 전임교원 보수수준에 대한 정량·정성적 고려

< 전임교원 보수수준 진단 목적 >

개별 대학의 전임교원 보수 분포를 고려하여 지나치게 낮은 보수를 받는 전임교원을 확인하고, 보수 책정 원칙 및 시유 등을 검토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보수를 받는 전임교원을 채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해 진단

- 진단 하위요소
 - a)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의 적절성 (-0.5점, 정량)
 - b) 전임교원 보수 책정 규정 근거의 체계성 (-0.5점, 정성)
 - c)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 책정 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성 (-0.5점, 정성)

-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적절성

<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의 적절성 점수 산출 방법 >

- ▶ 2015-2016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의 적절성 점수
 - 하위 1, 2 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하한값 이상 대학: 0점
 - 하위 1, 2 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하한값 미만 대학

$$(-0.25점) + \left(1 - \frac{$$
해당대학 2 년 평균 $-$ 최저기준} $\right) \times (-0.25점)$ 하한값 $-$ 최저기준

- 하위 1, 2 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최저기준 미만 대학: 0.5점
- ※ 2015-2016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하한값 국립대 교원 연봉 하한액에 해당하는 2,470만원
- ※ 2015-2016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최저기준: 하한값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1,729만원
- ▶ 2017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의 적절성 점수
 - 하위 1, 2 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하한값 이상 대학: 0점
 - 하위 1, 2 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하한값 미만 대학

$$(-0.25점) + \left(1 - \frac{$$
해당대학값 $-$ 최저기준} $\right) \times (-0.25점)$ 하한값 $-$ 최저기준

- 하위 1, 2 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최저기준 미만 대학: 0.5점
- ※ 2017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하한값: 일반대(국립)에서 석·박사 학위 취득 후 다른 가산 경력 없이 임용되는 조교수의 호봉 산정에 따른 봉급 기준(「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산정한 3,099만원
- ※ 2017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최저기준 하한값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2,169만원
- \blacktriangleright 최종 점수: 2015-2016년 점수 $imes rac{2}{3}$ + 2017년 점수 $imes rac{1}{3}$

< 연도별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 산출 방법 >

- ▶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수준(원) =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 총합(원) 하위 1, 2분위 조교수 수(명)
- 전임교원 보수 책정 규정 근거의 체계성

전임교원 보수 책정 원칙, 근거 및 사유를 확인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보수의 전임교원을 채용하였는지 여부를 정성적으로 진단

- 하위 1, 2분위 조교수 보수 책정 근거의 구체성 및 합리성

하위 1, 2분위 조교수에 대한 보수 책정 원칙, 근거 및 사유를 확인하여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보수의 전임교원을 채용하였는지 여부를 정성 적으로 진단

③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정도 점수(사립대/국립대법인)

-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정도(최근 3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 전임교원 확보율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시립대)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시립대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시립대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점수(전임교원 보수수준 페널티 반영)× 0.01

(국립대법인)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신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사립대 및 국립대법인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시립대 및 국립대법인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점수(전임교원 보수수준 페널티 반영) × 0.01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전임교원 확보율

〈표 2-1-1a〉전임교원¹ 확보율(국·공립대)

(단위: 명, %)

| | 전임교원 | | 전임교 | 원 현황 | | 전임교원 |
|------|-------------|----|-----|------|----------|-------------------------|
| 학년도 | #정정원 (A)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계 (B) | 확보율 (C) C=B/A×100 |
| 2016 | | | | | | |
| 2017 | | | | | | |
| 2018 | | | | | | |

 $^{^{1}}$ 학부 및 대학원 소속 전임교원 중 배정정원에 해당하는 전임교원

[증빙자료]

(1) 2016-2018학년도 전임교원 인사발령 사항

[※] 총장은 전임교원 배정정원 및 전임교원 현황에서 제외

〈표 2-1-1b〉 전임교원 확보율(사립대/국립대법인)

(단위: 명, %, %p)

| | | | | | | | 학생현황 | ±500 | | | | | | 전임교원 현 | (改 (映 | 교원 법정 | 법정정원 | 전임교원 | 출 보 율 | į | |
|-------------|---------|-------|-------------|---------------------------|--------------------|--|------------------------|----------------|-----------------|---|----------------------------|--------------------------|----------------------|--|---|--------------------------|------------------|--------------------------------------|--------------------|---|---------------------------|
| | | | | | 401 | 亦 | | | | * E | 913 | 7 | | | \vdash | | _ | | | (4) 전 제 표 | 전년 |
| | | | | | | 자학생 | | | | 전 전 전 |) जा। | ₹ | | | | | | | 자 학생 | 한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 | 품 |
| 호 라 머 | 8년 판 | 数 数 条 | 요 요 - | (교학(폐지) 대학 특별 편입생 수 | (2) 게약하고 자학생 | 원 영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교 | ⊝ kh 의 ⊚ 과 왜 | (사 의 (호 파 원 | 교학 인정 (B) | 후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생 | 재학생 (환산 인원) (D) E | 호생 정원 (E) E=A+C | 재 학생 (F) F=B+D | . 영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 교학생 기준 ⁵ (G ³) | 3. 청 수 (E) 3. 월 传 (E) | 재학생 기준 (남) | 80 년 (5) # 8 유 (5) # 8 전 (7) # | 기취 (i') x100 | # # (크) # # (크) # # # (크) # # # (크) | 에 후 티 아 보 함 아 가 대 용 |
| | 인문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자연과학 | | | | | | | | | | | | | | | | | / | | | |
| | 市 | | | | | | | | | | | | | | | | | | | \setminus | |
| 2016 | 예체능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0///15 | 11/15 | | HALL | | | 18/ | |
| | 하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인문사회 | | | | | | | | | | | | | | | | | | | \setminus | |
| | 자연과학 | | | | | | | | | | | | | | | | | | | | |
| | 하하 | | | | | | | | | | | | | | | | | | | | |
| 2017 | 예체능 | | | | | | | | | | | | | | | | | | | | |
| | 산게 | | | | | | | | | | | | | 25 | 62 | 42 | ,ZH | 2 | 12 | 32 | 32-31 |
| | 일학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setminus | |
| | 인문사회 | | | | | | | | | | | | | | | | | | | | |
| | 찬선되장 | | | | | | | | | | | | | | | | | | | | |
| | 하하 | | | | | | | | | | | | | | | | | | | \setminus | |
| 2018 | 예체능 | | | | | | | | | | | | | | | | | | | | |
| | 산 | | | | | | | | | | | | | 8 | 83 | 3 | H3, | 13 | 13, | 83 | J3-J2 |
| | 일학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¹ 재학생 현원: 정규 학위과정에 있는 정원 내·외 재학생 수
- ² 재학생 인정인원 = 재학생 현원 ① ② ③ + (①,② 중복인원) + (①,③ 중복인원)
- ³ 대학원 학생정원 및 재학생 수는 환산인원으로, 소수점 이하는 버림하여 산출됨
- 4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타 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a)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b) 2018. 4. 1.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c)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전임교원 수준의 보수·수 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d)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인문한국사업: HK, 중점연구소사업 등)의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 ※ 소속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
 - HK교수: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창업·취업 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고등교육법」 제15조제2항)으로 교육부 산학협력중점교수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전임교원으로 포함
 - 휴직상태의 교원 중 교원 확보율에 포함되는 경우(아래의 사유 외에 기타 청원에 의한 휴직은 교원 확보율에서 제외됨)
 - a)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의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b) 학교의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의하여 휴직하는 경우
 - c) 고용휴직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교에 휴직하고 산업체에서 급여를 받음. 교육공무원법 제 19조의2 참고)
 - 인정 제외대상 교원
 - a)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 b) 재임용심사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교원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 c)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총장은 전임교원에 포함되지 않음
 - 소속학과가 없는 교원은 전임교원 수에서 제외됨
- ⁵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학생정원 기준 전임교원에서 안식년/연구년제 교원 중 전임교원 조건 미충 족자를 제외한 교원 수
- 6 교원 법정정원: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1항 별표5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누어 진단주관기관 이 산출(학생정원, 재학생별)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산출(예: 환산인원이 5.2명일 경우 6명) -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인문사회 25, 자연과학 20, 공학 20, 예체능 20, 의학 8임
- ※ 학생 및 전임교원 현황은 각 학년도 4월 1일자 기준임
- ※ 사립대 및 국립대법인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율 산출 시, 교육부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대학 설립운영규정 별표1에 근거)를 기준으로 하며, 5대 계열 중 의학 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등)은 제외
- % 산업대의 경우,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times 61/50'로 보정하여 일반대로 진단

- 진단 요소 2. 전임교원 보수수준

(표 2-1-2) 전임교원 보수수준 내역(사립대/국립대법인)

(단위: 원)

| 6 10 |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S 4 | ю Н | | | | | | | | | | | | | | | | | | | | | | | | |
| _ | _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수총액 | (한 (한 (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디스초애7 | Г 0 | | | | | | | | | | | | | | | | | | | | | | | | |
| ו 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œ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별 급역 ⁶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咖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可亡 | - | 건보 신고(과세) | . 신고 제외(비과세)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 제외(비과세)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 제외(비과세)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과세) | . 신고 제외(비과세) | 건보 신고(과세) | . 신고 제외(비과세) | 건보 신고(과세) | . 신고 제외(비과세) | 건보 신고(과세) |
| 임용 관련 | 특이사항 | 2015.09.01.일자 | 휴직 발령 건보 | | | | <u> </u> | | | | | | | 2016.09.01.일자 | 휴직 발령 건보 | | 건 | | 건 | | | | | | |
| 이용조른이 | | | 10210102 | | | | | | | | | | | | 16210102 | | | | | | | | | | |
| 지금2 서명3 새녀왔어4 이용시장이4 이용조른이4 | N F . 0 | 20150101 | 10100102 | | | | | | | | | | | 1000000 | 70100107 | | | | | | | | | | |
| 사녀원이4 | 0. 17 10 10 | 10700101 | | | | | | | | | | | | 10700404 | 10100761 | | | | | | | | | | |
| 4 표 3 | 0 | | 8 | | | 5 | 3 | | | | | | | | | | | | | | | | | | |
| N ⊒2 | II F | | K 마 면 다 나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 | | , | - | \ | —— - - - | <u> </u> | | | 누면하 | I | | 나 | | | | | | | | | |
| В П | | | 2002 KH III 14 | | | | | | | 8 8 H 마 나 | | | | | | | | | | | | | | | |

| | | | 111 | | /// | 111 | 11 | | | | /// | 111 | |
|------------------|----------------|---------------|---------------|-----------|---------------|-----------|---------------|-----------|-----------|-----------|-----------|-----------|-----------|
| 6 | T | | | | | | | | | | | | |
| I | H | | | | | | | | | | | | |
| | | | 111 | | | 111 | | | | | 111 | | |
| 2 | 5E 5E | | | | | | | | | | | | |
| 3 | 언보ㅜ쫑떽 | | | | | | | | | | | | |
| 7 | ያ ያ | | | | | | | | | | | | |
| | | | | | | 111 | | | | | | | |
| 쑝 | 산) | | | | | | | | | | | | |
| 보수총액 | * | | | | | | | | | | | | |
| 日人参配7 | エT중곡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9 | 8 | | | | | | | | | | | | |
| 료여 | 7 | | | | | | | | | | | | |
| 뒒 | 9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ח | 工工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 제외(비과세)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 제외(비과세) | 건보 신고(과세) | 건보 신고 제외(비과세) | 건보 신고(과세) |
| 임용 관련 | 특이사항 | 2017.09.01.일자 | 휴직 발명 | | | | | | | | | | |
| 9 S ™ 10 I4 | 검증으표를 | 20171001 | | | | | | | | | | | |
| 사대왕 배크의이션 이유시조[4 | <u> 김</u> 중시격물 | 20170101 | 1010/102 | | | | | | | | | | |
| All I S SI OI 4 | 경디플럴 | 10200101 | 10100/61 | | | | | | | | | | |
| AH 1143 | 0 (0 | | | | | | | | | | | | |
| 2L IK | II T | 사 (남 (남 | | | | | | | 바 | | | 나 | |
| U | H H | 2017 - | | | | | | | | | | | |

※ 교육부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1)에 따라 구분되는 5대 계열 중 의학 계열(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 등) 전임교원은 제외 전임교원 보수수준은 실적을 진단하는 취지로 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대학의 모든 전임교원에게 지급된 보수수준 실적임 직급은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함

2017년 8월 1일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교원의 경우, 부교수로 구분되어 임용시작일은 20170801, 임용종료일은 20171231로 입력하며 해당 기간 동안 ※ 진단기간 중에 재임용 또는 승진한 교원의 경우, 각 연도 12월 31일 기준 직급에 해당하는 임용시작일, 임용종료일, 월별 급여, 보수총액 등을 작성함(예 의 급여를 작성하고, 조교수 재직기간은 반영하지 않음)

3 성명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전임교원을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나누어 성만 입력함

4 생년월일, 임용시작일 및 임용종료일은 연월일(YYYYMMDD) 순으로 띄어쓰기 없이 입력함. 임용시작일은 교원의 각 연도 임용시작일로, 최초 임용시작일을 의미하지 않으며 임용종료일도 사직이나 퇴직일을 의미하지 않음 (예: 전임교원으로 2000년 3월 1일에 최초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해당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소속되어있는 교원의 경우, 2015년의 임용시작일은 20150101, 2016년의 임용시작일은 20160101, 2017년의 임용시작일은 20170101로 입력함. 임용종료일의 경 우도 마찬가지로 2015년의 임용종료일은 20151231, 2016년의 임용종료일은 20161231, 2017년의 임용종료일은 20171231일로 입력함》)

6 월별 급여 작성 시 건보 신고(과세) 월별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 정산이 완료된 월별 지급액을 입력하며, 건보 신고 제외(비과세) 월별 금액은 하위 1, 2분위 5 임용 관련 특이사항은 해당 전임교원의 보수수준 산정 시 고려해야할 인사 상 특이사항(각 연도 내 제임용, 승진, 휴직, 파견, 연구년 등)을 기술함

조교수의 경우만 작성하며 대학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을 입력함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 건보 신고(과세) 및 건보 신고 제외(비과세) 월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의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학이 직접 교원의 동의를 받아 동의서와 함께 제출함

古

- 및 교수의 경우 건보 신고(과세) 보수총액은 하위 1, 2 분위 조교수의 경우, 건보 신고(과세) 또는 건보 신고 제외(비과세) 월별 금액의 연도별 합이며, 부교수 월별 금액의 연도별 합임. 건보 신고(과세) 월별 금액의 합산값은 건강보험공단에 정산이 완료된 보수총액과 일치해야 함
- ⁸ 보수총액(환산)-건보 신고(과세)는 임용시작일 및 임용종료일을 기준으로 만근에 해당하는 월에 지급된 보수만 고려하여 진단주관기관에서 12개월 동안 지급 된 연보수총액을 산출함. 보수총액(환산)-건보 신고 제외(비과세)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의 경우 12개월 동안 지급된 보수로 환산되어 연보수총액에 합산되며, 이외 금액은 환산하지 않은 값이 연보수총액에 합산됨.
 - ※ 보수총액(환산) 산출 시 제외되는 경우 ① 1달 미만 근무에 따른 급여, ②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휴직, 파견, 연구년 등으로 정규근로에 따른 보수보다 은 급여, ③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받은 급여, ④ 승진 전 직급 동안 지급된 보수 등
- ⁹ 분위는 진단주관기관이 직급별 총 인원수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분위부터 차례로 배정함(예: 87명의 경우 7명을 제외한 80명을 10분위로 구분한 후 제외 된 7명을 1분위부터 1명씩 배정함. 1-7분위: 9명, 8-10분위: 8명)

[증빙자료]

- ※ 증빙자료는 대학이 1차 자료 제출 기간에 제출한 (표 2-1-2) 자료를 바탕으로 조교수 하위 1, 2분위를 산정하고, 2차 자료 제출 기간에 이에 해당하는 교원 의 증빙자료만을 제출함
- (1) 하위 1, 2분위에 해당하는 조교수의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신고서 EDI 출력본(성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식별정보가 삭제된 형태로 제출) (2) 하위 1, 2분위에 해당하는 조교수의 건보 신고 제외 급여총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성과 생년월일을 제외한 개인 식별정보가 삭제된 형태로 제출) 등(교원의 동의서와 함께 제출)
 - 교원의 급여 지급 관련 규정 및 하위 1, 2분위에 해당하는 조교수의 휴직 및 파견을 증빙할 수 있는 인사발령 공문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나 건강보험공단에 신고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규정, 지침(예: 급식비 및 교통비 관련 지급 $\mathfrak{S} \stackrel{4}{\oplus}$
- 7岁)

ၜ

〈표 2-1-3〉 전임교원 보수수준 분포(사립대/국립대법인)

(단위: 원, 명)

| 직급 | 보수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 | 최댓값 | | | | | | | | | | |
| 조교수 | 최솟값 | | | | | | | | | | |
| 立 単 丁 | 평균값 | | | | | | | | | | |
| | 인원수 | | | | | | | | | | |
| | 최댓값 | | | | | | | | | | |
| ㅂㄱ스 | 최솟값 | | | | | | | | | | |
| 부교수 | 평균값 | | | | | | | | | | |
| | 인원수 | | | | | | | | | | |
| | 최댓값 | | | | | | | | | | |
| 교수 | 최솟값 | | | | | | | | | | |
| 业十 | 평균값 | | | | | | | | | | |
| | 인원수 | | | | | | | | | | |
| 총계 | 인원수 | | | | | | | | | | |

- ※ 〈표 2-1-3〉은 〈표 2-1-2〉의 '보수총액(환산)-건보 신고(과세)' 작성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함
- ※ 2015-2017년 연도별 현황을 각각 작성하되, 2017년 연도별 현황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 정정신고(제출 기한: 2018.3.10.) 결과가 반영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기술 2-1-1] 전임교원 보수수준 책정의 원칙 및 내용(사립대/국립대법인)

- □ 전임교원 보수수준 책정의 원칙 및 내용
 - 전임교원 보수수준 책정 관련 규정 및 지침의 내용
 - 보수수준이 하위 1, 2분위에 해당하는 조교수의 보수수준 책정에 대한 근거 및 사유
 - ※ 단,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학의 경우, 3분위 이상의 경우에도 보수수준 책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 청할 수 있음

[증빙자료]

- (1) 전임교원 보수수준 책정 관련 규정 및 지침
- (2) 기타 전임교원의 보수수준 책정과 관련된 공문, 기타 근거자료

[중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2-1-1] | | |
| <班 2-1-3> | | |

ㅇ 작성 지침

- (1) 〈표 2-1-1a〉(국·공립대)의 전임교원 배정정원은 교육부 및 관계기관 자료 를 이용하여 진단주관기관이 작성하며, 전임교원 현황은 대학이 작성함
- (2) 〈표 2-1-1b〉(사립대/국립대법인)의 2016-2018학년도 재학생 인정인원 및 교원 법정정원을 제외한 자료는 대학이 모두 작성함. 학생정원 및 재학생 현황 자료는 4월 1일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에 제출하는 자료와 일치되도록 작성함
- (3) 〈표 2-1-2〉(사립대/국립대법인)은 각 해당연도의 모든 전임교원을 대상 으로 대학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요청하여 연계 받은 자료를 활용하 여 작성함
 - ※ 보훈대상자, A-3비자로 취업한 외국인 교원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 상자의 경우, 동일 호봉 또는 동일 수준 연봉계약 교원의 월보수액에 준하 여 자료를 작성함
- (4) 〈표 2-1-3〉(사립대/국립대법인)은 〈표 2-1-2〉의 보수총액(환산)-건보 신고(과세) 작성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하며, 전체 전임교원을 직급별(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최저 보수부터 최고 보수까지 배열하고 이를 인원수 기준으로 10%씩 구분하여 1분위(하위 10%)에서 10분위(상위 10%)까지의 해당 값(각 분위별 최댓값, 최솟값, 평균값, 인원수)을 작성함
 - ※ 2015-2017년 연도별 현황을 각각 작성하되, 2017년 연도별 현황의 경우 건강보험 공단 보수총액 정정신고(제출 기한: 2018.3.10.) 결과가 반영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 성함
- (5) [기술 2-1-1](사립대/국립대법인)은 2015-2017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A4 2쪽 이내로 기술함

항목: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지표: 2.2. 교사 확보율

배점: 3

□ 진단 방향

○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대학의 교사(校舍) 시설 확보 정도 및 확보 노력 을 진단

□ 진단 요소

○ 교사 확보율 (3점, 정량)

□ 진단 자료

○ 모든 대학 구분 없이 진단

| 구분 | 자료 | 공시(해당) 연도 | 출처 | 자료기준일 |
|----|--------|-----------|-----------|-------------|
| 전체 | 교사 확보율 | 2018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8년 4월 1일 |

□ 산출식

< 교사 확보율 지표 점수 산출 방법 >

- ▶ 교사 확보율 100% 이상 대학 3점
- lackbox 교사 확보율 100% 미만 대학 3점 imes $\dfrac{$ 해당대학값}{100\%}

< 교사 확보율 산출 방법 >

교사 확보율(%) = $\frac{$ 기본시설 (m^2) +지원시설 (m^2) +연구시설 (m^2) $\times 100$ 기준면적 (m^2)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교사 확보율

〈표 2-2-1〉 교사 확보율

(단위: m², %)

| | 기준면적 ¹ | | | 보유면적 ² | | | 교사 확보율 |
|------|--------------------------------|-------------|-------------|-------------------|------|------|------------------------|
| 연도 | 입학정원 기준 ³ (A) | 기본시설 (B) | 지원시설 (C) | 연구시설 (D) | 부속시설 | 기타시설 | (E) E=(B+C+D)/A×100 |
| 2018 | | | | | | | |

- ¹ 기준면적: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기준면적
 -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은 인문사회 12㎡, 자연과학 17㎡, 공학 20㎡, 예체능 19㎡, 의학 20㎡
 - 계열기준은 교육부 교육편제단위 표준분류체계(「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근거)를 적용함
- 2 보유면적: 학교가 소유하고 있는 교지
 -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2 교사시설 구분

| 1919 2 | 교사사전 그보 | | | | | | | | | | | |
|-------------------|--|---|---|--|--|--|--|--|--|--|--|--|
| 교사시설 | 구분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생회관·체육관(체육관으로 병용되는 형태의 강당을 | | | | | | | | | | | |
| 교육기본 시설 | 포함한다) · 대학본 1. 열람실 · 정기건 | 실·교수연구실·행정실·도서관·학 부부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도서관에 한행물실·참고도서열람실·서고 및 사 생정원의 20퍼센트 이상을 수용할 수 | 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무실 | | | | | | | | | |
| 지원시설 | 강당・전자계산소・실습공장・학생기숙사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 | | | | | | | | | |
| 연구시설 | 연구용 실험실·대학원 연구실·대학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로 한다. | | | | | | | | | | | |
| | 공통 | 박물관, 교수·직원·대학원생·연구 시설과 그 부대시설, 학교기업의 시설 | 원의 주택 또는 아파트, 공관, 연수원, 산학협력단의 결과 그 부대시설 및 부속학교 | | | | | | | | | |
| | | 농학에 관한 학과 | 농장·농장건물 및 농장가공장 | | | | | | | | | |
| | 농학계열 | 축산학에 관한 학과 | 사육장 또는 목장과 그 부속건물 | | | | | | | | | |
| | | 임학에 관한 학과 | 학술림 • 임산가공장 | | | | | | | | | |
| | 고장네선 | 공학에 관한 학과 | 공장 | | | | | | | | | |
| | 공학계열 | 항공학에 관한 학과 | 항공기·격납고 | | | | | | | | | |
| 부 속 시설 | | 어로학 · 항해학에 관한 학과 | 실습선 | | | | | | | | | |
| | 수산ㆍ해양계열 | 수산제조학에 관한 학과 | 수산가공장 | | | | | | | | | |
| | 구산·애왕세월 | 증식학에 관한 학과 | 양식장 또는 어장 및 그 부속건물 | | | | | | | | | |
| | | 기관학에 관한 학과 | 기관공장 | | | | | | | | | |
| | 약학계열 | 약학에 관한 학과 | 약초원 • 실습약국 | | | | | | | | | |
| | 국목/세월 | 제약학에 관한 학과 | 제약실습공장 | | | | | | | | | |
| | 의학계열 | 의학·한의학·치의학에 관한 학과 | 부속병원 | | | | | | | | | |
| | 커릭/게 턴 | 수의학과 | 동물병원 | | | | | | | | | |

비고 대학 또는 학부(과)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세부 부속시설의 종류는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따로 정할수 있다.

³ 입학정원기준: 정원 내 학부(계열별 학과 주·야별 입학정원 중 최댓값×수업연한(2년, 3년, 4년, 5년 이상)) + 정원 내 대학원(주간 입학정원×수업연한)

[※] 대학원을 계열별로 구분할 수 없을 경우 당해 연도 하반기에 입학한 4월 1일 기준 대학원 정원 내 재학생 비율로 안분

참고

- 2005. 10. 25. 이전 설립 대학 중 본·분교 및 캠퍼스 상관없이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 2005. 10. 25. 이후 설립 대학 중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1,0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1,000 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단, 대학의 일부를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는 경우,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그 정원을 400명으로 환산하여 입력
- ※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도 임시사용승인필증 첨부 등 대학정보공시 기준에 따라 실적으로 포함 가능

ㅇ 작성 지침

(1) 〈표 2-2-1〉의 기준면적 및 보유면적은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대학 정보공시 '14-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와 일치되도록 대학이 직접 작성함 항목: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지표: 2.3. 교육비 환원율

배점: 5

□ 진단 방향

학생의 비용 부담 대비, 보다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학의 교육비 투자 노력을 진단

□ 진단 요소

- 교육비 환원율 (5점, 정량)
 - * 교육비 환원율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 진단 자료

○ 설립유형별(국·공립대/국립대법인/사립대)로 구분하여 진단

| 구분 | 자료 | 공시(해당) 연도 | 출처 | 자료기준일 |
|-------|--------------|-----------|--------------|---------------|
| | | 2016년 | | 2015년 회계연도 결산 |
| 전체 | 등록금 수입 총액 | 2017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6년 회계연도 결산 |
| | 0 1 | 2018년 | | 2017년 회계연도 결산 |
| 국립대/ | | 2016년 | 미하다보고 사이나 1 | 2015년 회계연도 결산 |
| 공립대/ | 총 교육비 | 2017년 | 대학정보공시 9-나-1 | 2016년 회계연도 결산 |
| 국립대법인 | | 2018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회계연도 결산 |
| | | 2016년 |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 2015년 회계연도 결산 |
| 사립대 | 총 교육비 | 2017년 | 대학정보공시 9-나-2 | 2016년 회계연도 결산 |
| | | 2018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회계연도 결산 |

□ 산출식

< 교육비 환원율 지표 점수 산출 방법 >

교육비 환원율 지표 점수 = ① 교육비 환원율 점수 + ② 교육비 환원율 개선 정도 점수 ※ 각 정량 진단 요소별 점수와 가산점을 합한 점수는 각 정량 진단 요소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교육비 환원율 점수

< 교육비 환원율 점수 산출 방법 >

(국·공립대)

- ▶ 교육비 환원율 국·공립대 만점 기준 이상 대학: 5점
- ▶ 교육비 환원율 국·공립대 만점 기준 미만 대학: 5점 × 해당대학3년평균 국·공립대 만점기준

(국립대법인)

- ▶ 교육비 환원율 국립대법인 만점 기준 이상 대학: 5점
- ▶ 교육비 환원율 국립대법인 만점 기준 미만 대학: 5점 × 해당대학3년평균 국립대법인 만점기준

(사립대)

- ▶ 교육비 환원율 사립대 만점 기준 이상 대학 5점
- ▶ 교육비 환원율 사립대 만점 기준 미만 대학 5점 × 해당대학3년평균 사립대만점기준

< 연도별 교육비 환원율 산출 방법 >

② 교육비 환원율 개선 정도 점수

- 교육비 환원율 개선 정도(최근 3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교육비 환원율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국·공립대)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신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국 공립대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국 공립대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 점수 × 0.01

(국립대법인)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국·공립대 및 국립대법인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국·공립대 및 국립대법인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 점수 × 0.01

(사립대)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신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시립대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시립대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교육비 환원율 점수 × 0.01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교육비 환원율

〈표 2-3-1〉 등록금 수입 총액

(단위: 천원¹)

| | | 학부 | | | 대학원 | | | | |
|----------|------------|--------------------|--------------------|------------|-----|--|-----------------------|-----------------------------------|--|
| 회계 연도 | 입학금 (A) | 정규학기 수업료 (B) | 계절학기 수업료 (C) | 입학금 (D) | | | 단기 수강료 등 ² | 등록금 수입 총액 (G) G=A+B+C+D+E+F | |
| 2015 | | | | | | | | | |
| 2016 | | | | | | | | | |
| 2017 | | | | | | | | | |

¹ 원 단위의 모든 계산 과정 완료 후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입력함

[증빙자료]

(1) 입학금, 정규학기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단기 수강료 등의 항목이 구분된 등록금 수입 내역 관련 증빙자료(2015-2017년 회계연도 결산)

〈표 2-3-2a〉 교육비 환원율(국·공립대/국립대법인)

(단위: 천원¹, %, %p)

| | | | | 총 | · 교육비 ² | | | | | 교육비 | |
|----------|------------------------------|------------------------------|--------------------------------|-------------------------------------|-------------------------------|--------------------------|--|--------------------------|-------------------------------|----------------------|-------------------|
| | | | 교육비 | | | | 기계기구 | 소계 | 등록금 | - 한원율 | 전년대비 |
| 회계 연도 | 일반 회계 ³ (A) | 대학 회계 ⁴ (B) | 발전기금 회계 ⁵ (C) | 산학 협력단 회계 ⁶ (D) | 도서 구입비 ⁷ (E) | 기계기구 매입비 ⁸ | 매입비 최근 3년 평균 ⁹ (F) | (G) G=A+B+ C+D+E+F | 수입 총액 ¹⁰ (H) | (I) I=G/H ×100 | 교육비 환원율 증감분 |
| 2015 | | | | | | | | | | 1111 | |
| 2016 | | | | | | | | | | 12// | 12-11 |
| 2017 | | | | | | | | | | 13/// | 13-12 |
| | 3년 평균 교육비 환원율 | | | | | | | | | | |

¹ 원 단위의 모든 계산 과정 완료 후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입력함

² 단기 수강료 등: 특별강좌 및 특별교육강좌 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평생교육기관 등의 수업료 각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포함되나 입학금, 정규학기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로 구분되지 않는 항 목 등

² 총 교육비: 대학회계(일반회계 포함) + 발전기금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 입비(최근 3년 평균)

³ 일반회계: 인건비(100번대) + 물건비(200번대) + 세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비감면액 - 인건비(100번대), 물건비(200번대) 중 수입대체성 경비(입시 관련 비용, 국립대학 국유재산활용화비용*)

^{*} 공립대학의 경우 301-02(장학금 및 학자금), 303-02(성과상여금), 304-02(국민건강보험금) 및 시·도에서 지급되는 대학 소속의 교직원 인건비도 포함하여 입력

⁴ 대학회계: 인적경비 +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 운영비 + 세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비감면

액 - 운영비 중 지급이자 - 인적경비, 교육·연구·학생지도 및 장학비, 운영비 중 수입대체경비(최고 경영자과정, 각종 연수과정, 교양·문화과정, 어학과정, 지역사회과정 등의 평생교육과정 관련 비용, 입시 관련 비용, 국립대학 국유재산활용화비용)

※ 2016년 기성회회계 결산이 남아 있는 경우 대학회계 교육비에 포함하여 입력

- 5 발전기금회계: 경상비 + 목적사업비 중 장학사업비 및 연구지원비 + 기금교수인건비
- 6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의 산학협력비 + 지원금사업비 + 일반관리비 + 간접비사업비
 - ※ 국·공립대학의 경우, 2016년 산학협력단 회계기준일자 변경(교육부고시 제2016-88호, 시행: 2016년 1월 29일)으로 인하여 2015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 2016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 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에 해당하는 자료임
- 7 도서구입비: 일반회계, 대학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중 도서구입비
- 8 기계기구매입비: 일반회계,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중 기계기구매입(취득)비 ※ 기계기구매입비는 연구 및 교육용만 포함하고, 행정용은 제외함
- 9 기계기구매입비 최근 3년 평균: 2015-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의 3년 평균을 진단주관기관이 산출 하여 매해 동일하게 적용함
- 10 등록금 수입 총액(학부 및 대학원)은 단기 수강료 등을 제외한 수입으로, 대학이 〈표 2-3-1〉에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함

[증빙자료]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일반회계, 대학회계, 발전기금회계, 산학협력단회계)

(표 2-3-2b) 교육비 환원율(사립대)

(d%

(단위: 천원¹, %,

원 단위의 모든 계산 과정 완료 후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입력함

2 총 교육비: 교비회계 + 산학협력단회계 + 도서구입비 + 기계기구매입비(최근 5년 평균) + 건축비(최근 5년 평균의 2.5%)

³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의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 연구학생경비 중 입시관리비 4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호름표의 산학협력비 + 지원금사업비 + 일반관리비 + 간접비사업비

5 도서구입비: 교비회계 중 도서구입비

기계기구매입비: 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중 기계기구매입(취득)비로 최근 5년 평균은 진단주관기관이 각 결산연도 기준 최근 5년 자료의 평균값을 산출함 (예: 2015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기계기구매입비 최근 5년 평균값은 2011-2015년 회계연도 결산 기계기구매입비(소계)의 평균)

7 건축비: 교비회계 중 건축비(건설가계정+건물매입비)

8 건축비 2.5%: 각 회계연도 결산 기준 최근 5년 자료 평균값의 2.5%로 진단주관기관이 산출함(예: 2015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건축비 2.5%는 2011-2015년 자료 평균값의 2.5%)

등록금 수입 총액(학부 및 대학원): 단기 수강료 등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으로, 대학이 (표 2-3-1)에 직접 작성한 자료를 활용함

[증빙자료]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ㅇ 작성 지침

- (1) 〈표 2-3-1〉의 2015-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대학이 모두 작성함
- (2) 〈표 2-3-2a〉(국·공립대/국립대법인)에서 등록금 수입 총액을 제외한 2015-2016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대학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진단주 관기관에서 작성하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대학정보공시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와 일치되도록 작성함. 교육비 환원율을 공시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2015-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대학이 모두 작성함
- (3) 〈표 2-3-2b〉(사립대)의 2011-2016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대학정보공 시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이용하여 진단주관기관에서 작성하 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사학진흥재단 에 제출하는 자료와 일치되도록 작성함. 교육비 환원율을 공시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2011-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대학이 모두 작 성함

항목: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지표: 2.4. 법인 책무성

배점: 2

□ 진단 방향

○ 사립대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법인 책무성 실적,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을 진단

□ 진단 요소

- 법인 책무성 실적 (1점, 정량)
-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1점, 정성)

□ 진단 자료

ㅇ 모든 진단 요소는 사립대만 해당

| 구분 | 자료 | 공시(해당) 연도 | 출 처 | 자료기준일 | | |
|-----|-------------------------------------|-----------|-----------|---------------|--|--|
| | 법정부담금 부담률 | 2018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회계연도 결산 | | |
| 사립대 |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 2018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회계연도 결산 | | |
| | 법인 책무성 | 2018년 | | 2018년 3월 1일 ~ | | |
| | 집단 색구'8 확보 계획 | 2019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0년 3월 1월 2 | | |
| | 학교 계탁 | 2020년 | | 2021년 2월 20년 | | |

□ 산출식

< 법인 책무성 지표 점수 산출 방법 >

법인 책무성 지표 점수 = ① 법인 책무성 실적 점수

+ ②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점수

① 법인 책무성 실적

- 진단 하위요소
 - (a) 법정부담금 부담률(1점, 정량)
 - (b)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1점, 정량)
- 점수 산출 방법
- < 법인 책무성 실적 점수 산출 방법 >
- ▶ 최종 점수: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중에서 높은 점수를 최종 점수로 산출함
 - (a) 법정부담금 부담률
- < 법정부담금 부담률 점수 산출 방법 >
 -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 이상 대학: 1점
 - 법정부담금 부담률 100% 미만 대학: 1점 imes $\dfrac{$ 해당 대학값(2017년 회계연도 $)}{100\%}$
- < 법정부담금 부담률 산출 방법 >

법정부담금 부담률(%) = 법정부담금 부담액(천원) 법정부담금 기준액(천원) ×100

- (b)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 <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점수 산출식 >
- ▶ 시립대 중위수 이상 대학: 1점
- ▶ 시립대 중위수 미만 대학: 1점 × 해당대학값(2017년회계연도) 사립대학중위수값(2016년회계연도)
- <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산출 방법 >

법인 전입금 비율(%)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 기본금중법인 법인 일반회계재정규모 × 해당대학교비회계운영수익 총계

②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 ※ '법정부담금 부담률' 또는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중 택1하여 확보 계획을 기술함
- 진단의 주안점
 - a)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법인 책무성 실적의 만점 기준 달성 및 유지*를 위한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및 합리성
 - * '법인 책무성 실적' 진단 요소에서 만점을 획득한 대학의 경우 해당 실적을 유지하는 계획을 작성하며, 해당 진단 요소 점수가 만점 미만인 대학은 2020년 회계연도까지 만점 기준 달성을 위한 연도별 목표를 제시함
 - b) 산출근거의 구체성: 법인 책무성 실적의 만점 기준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실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 예시: 수익사업전입금, 기부금수입, 이자수입, 임대료 등 수익재산 수입, 보유 재산의 전환 등 각 학교법인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법인 책무성 실적 만점 기준 달성 계획
- 점수 산정: 진단 하위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Α | В | С | D | E |
|----|----|------|------|------|------|
| 점수 | 1점 | 0.8점 | 0.6점 | 0.4점 | 0.2점 |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법인 책무성 실적

〈표 2-4-1〉 법정부담금 부담률

(단위: 천원¹, %)

| 법정부담금 기준액 | | | 법정부담· | 법정 부담금 부담률 | |
|-----------|------------------------|------------------------|------------------------|------------------------|--------------------------|
| 회계연도 | 교원 법정부담금 기준액 (A) | 직원 법정부담금 기준액 (B) | 교원 법정부담금 부담액 (C) | 직원 법정부담금 부담액 (D) | (E) E=(C+D)/(A+B)×100 |
| 2017 | | | | | |

¹ 원 단위의 모든 계산 과정 완료 후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입력함

² 교원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학 교비회계 교원법정부담금 중 교원사학연금부담금, 교원퇴직수당 부담금, 교원건강보험부담금의 합

³ 직원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학 교비회계 직원법정부담금 중 직원사학연금부담금, 직원퇴직수당 부담금, 직원건강보험부담금의 합

⁴ 교원 법정부담금 부담액: 대학 교비회계 교원법정전입금 중 교원사학연금전입금, 교원퇴직수당 전입금, 교원건강보험전입금의 합

⁵ 직원 법정부담금 부담액: 대학 교비회계 직원법정전입금 중 직원사학연금전입금, 직원퇴직수당 전입금, 직원건강보험전입금의 합

[증빙자료]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교비회계)

〈표 2-4-2〉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단위: 천원¹, %)

| | | 전입금 ² | | |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 | | | 법인(일반회계) |
|----------|-------------------|------------------------|------------------|------------------------------------|--|---|--|--|---|
| 회계 연도 | 경상비 전입금 (A) | 법정부 담 전입금 (B) | 자산 전입금 (C) | 기본금 중 법인 ³ (D) | 법인 (일반회계) 재정규모 ⁴ (E) | 해당 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익 ⁵ (F) | 학교법인 내 설치 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계 ⁶ (G) | 법인 재정규모 안분계산 (H) H=E×(F/G) | 대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I) I=(A+B+C+D)/H ×100 |
| 2017 | | | | | | | | | |

 $^{^{1}}$ 원 단위의 모든 계산 과정 완료 후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입력함

[증빙자료]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학교법인 일반회계, 학교법인 내 설치대학별 교비회계)

² 전입금: 해당 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내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

³ 기본금 중 법인: '사학기관의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별표 1 자금계산서 계정과 목 명세표]의 수입항목 중 관)기본금(3100)→항)출연기본금(3110)→목)법인(3112) 계정과목에 계 상된 금액

⁴ 법인 일반회계 재정규모: 법인 일반회계 자금계산서 내 전입 및 기부 수입(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교육 외 수입의 합

⁵ 해당 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익: 해당대학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내 등록금및수강료수입, 전입및기부수입(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 산학협력단및학교기업전입금), 교육부대수입, 교육외수입의 합

⁶ 학교법인 내 설치대학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계: 학교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학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대학원대학 포함),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의 교비회계 운영수익의 합

- 진단 요소 2: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표 2-4-3〉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단위: 천원¹, %)

| | 법정부담금 부담률 개선 계획 ² | | |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개선 계획 ² | | | |
|----------|----------------------------------|----------------------------------|--|--|-------------------------------------|---|--|
| 회계 연도 | 법정부담금 기준액 ³ (A) | 법정부담금 부담액 ⁴ (B) | 법정부담금 부담률 개선 목표 (C) C=B/A×100 | 전입금 ⁵ (D) | 법인 재정규모 안분계산 ⁶ (E) |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개선 목표 (F) F=D/E×100 | |
| 2018 | | | C1 | | | F1 | |
| 2019 | | | C2 | | | F2 | |
| 2020 | | | C3 | | | F3 | |

- 1 원 단위의 모든 계산 과정 완료 후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입력함
- ² '법정부담금 부담률 개선 계획' 또는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 개선 계획' 중 택1 하여 개선계획을 기재함
- 3 법정부담금 기준액 예상 금액을 기재함(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는 [기술 2-4-1]에서 별도 제시)
- 4 법정부담금 부담액의 연도별 목표 금액을 기재함(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는 [기술 2-4-1]에서 별도 제시)
- 5 법인 전입금의 연도별 목표 금액을 기재함(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는 [기술 2-4-1]에서 별도 제시)
- 6 법인 재정규모 안분계산 금액의 연도별 예상 금액을 기재하며, 동일 법인 내 2개 이상 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각 설치 대학의 운영수익 추계액에 따라 안분 계산(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는 [기술 2-4-1]에서 별도 제시)

[기술 2-4-1]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 산출의 근거 및 적절성

- □ 법인 책무성 확보 계획의 내용
 - ※ '법정부담금 부담률' 또는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 전입금 비율'중 택 1하여 확보 계획의 내용을 기술함
 - 개선 계획에 대한 개요
 - 법인 책무성 확보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
 - 법인 책무성 확보 목표 산출 근거의 구체성

[증빙자료]

- (1) 2018년 회계연도 이후 법정부담금 부담액 목표, 법정부담금 기준액 변화를 산출한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 재무 추정 자료 등 산출 근거 관련 자료
- (2) 2018년 회계연도 이후 법인 전입금 목표, 법인 일반회계 재정규모, 설치학교별 운영수입 규모를 산출 한 중장기 재정운영 계획, 재무 추정 자료 등 산출 근거 관련 자료
- (3)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재정여건 개선 계획 등 기타 근거자료

[중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2-4-1] | | |
| <班 2-4-3> | | |

ㅇ 작성 지침

- (1) 〈표 2-4-1〉, 〈표 2-4-2〉의 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제출하는 자료와 일치되도록 대학이 작성하며, 해당 결산자료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함
- (2) 〈표 2-4-3〉의 2018-2020년 회계연도 지표 목표는 모두 대학이 작성하며, '법정부담금 부담률 개선 계획' 또는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법인 전입금 비율 개선 계획' 중 택1 하여 개선계획을 기재함
- (3) [기술 2-4-1]의 기술 내용은 2018학년도 이후의 추진 계획을 대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A4 2쪽 이내로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항목: 2.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지표: 2.5. 구성원 참여·소통

배점: 1

□ 진단 방향

- 대학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법령상 의무적으로 운영 해야하는 위원회 등을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구성하고, 위원회 등이 회 의를 운영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향후 계획**을 진단
 - * '법적 요건'은 ① 재정위원회 등(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대학평의원회(사립학교법 제26조의2), 등록금심의위원회(고등교 육법 제11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사립학교법 제14조)의 대학 내 위원회 구성·운영, ② 개 방이사(사립학교법 제14조)의 선임 절차, ③ 이사회(사립학교법 제18조의 2)의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법적 의무사항을 의미함
 - ** 법적 요건에 근거한 법령상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현황 및 계획을 제시함 (단, 2018년 진단에서는 계획 중심으로 진단하되, 현황은 향후 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함)

□ 진단 요소

-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위원의 대표성, 위원회 구성 절차 등)에 부합하는 위원회 구성 계획 (정성)
-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계획 (정성)

□ 진단의 주안점

-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위원의 대표성, 위원회 구성 절차 등)에 부합하는 위원회 구성 계획: 법령상 위원회 등의 구성 관련 학칙, 규정 및 지침등의 체계성과 구체성, 법령상 위원회 등의 위원 자격 요건 및 선임 기준의 타당성, 법령상 위원회 등의 설치 및 위원 구성 절차의 적절성
-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계획: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이사회 포함) 개최 및 운영의 체계성,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 개최·운영·결과에 대한 공개의 투명성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Α | В | С | D | E |
|----|----|------|------|------|------|
| 점수 | 1점 | 0.8점 | 0.6점 | 0.4점 | 0.2점 |

□ 진단 자료

○ 구성원 참여·소통은 설립유형(국·공립대/국립대법인/사립대)에 따라 구분 하여 진단

| 구분 | 자료 | 해당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 법령상 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관련 자료 | 2017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전체 | 법령상 위원회 | 2018년 | | |
| | 구성·운영 계획 관련 자료 | 2019년 | | 2018년 3월 1일 ~ 2021년 2월 28일 |
| | | 2020년 | | 2021년 2월 20년 |

□ 작성 방법

| 분류 | [기술 2-5-1] | [기술 2-5-2] |
|----------|--|---|
| 작성 내용 | 재정위원회 또는 재무경영위원회(국· 공립대, 국립대 법인), 대학평의원회 또는 평의원회(국립대법인, 사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국·공립대, 국립대 법인, 사립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개방이사)(사립대) | 재정위원회(국·공립대), 대학평의원회 (사립대), 등록금심의위원회(국·공립대, 국립대법인, 사립대), 이사회(사립대)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위원의 대표성, 위원회 구성 절차 등)에 부합하는 위원회 구성 계획

[기술 2-5-1]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위원의 대표성, 위원회 구성 절차 등)에 부합하는 위원회 구성 계획

- □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위원의 대표성, 위원회 구성 절차 등)에 부합 하는 위원회 구성 계획
 - 법령상 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관련 학칙, 규정 또는 지침 현황 및 제·개 정 계획(위원의 자격 요건 및 선임 기준, 구성 절차 포함)
 - 법령상 위원회의 설치·구성 현황 및 향후 계획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개방이사 선임 절차 준수 계획
 - ※ 해당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함
 - ※ 계획을 제시할 경우 추진 담당 부서, 추진 내용과 시기(개최 횟수),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함

[증빙자료]

- (1) 법령상 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관련 근거가 되는 학칙, 규정 또는 지침,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2) 법령상 위원회의 위원 선임 현황,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공문, 기타 근거자료
- (3) 법령상 위원회 설치 및 위원 구성 절차에 관한 현황 및 계획 관련 학내 의사결정 회의록,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진단 요소 2: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계획

[기술 2-5-2]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계획

- □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된 투명성 확보 계획
 - 법령상 위원회 등 회의 개최·운영·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 또는 지침 현황 및 제·개정 계획
 - 법령상 위원회 등 회의 개최 사전 공개에 관한 현황 및 계획
 - 법령상 위원회 등 회의록 공개 현황 및 계획
 - ※ 해당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내용을 기술함
 - ※ 계획을 제시할 경우 추진 담당 부서, 추진 내용과 시기(개최 횟수), 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함

[증빙자료]

- (1)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이사회 포함) 개최·운영·결과 등의 공개에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관련 공 문, 기타 근거자료
- (2)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이사회 포함) 및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자료
- (3)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이사회 포함) 공개 현황 및 계획 관련 학내 의사결정 회의록,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2-5-1] | | |
| [기술 2-5-2] | | |

ㅇ 작성 지침

- (1) [기술 2-5-1], [기술 2-5-2]에서 현황 관련 기술 내용은 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계획 관련 기술 내용은 2018-2020학년도 자료 를 대상으로 함
- (2) [기술 2-5-1], [기술 2-5-2]의 내용은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각 각 A4 2쪽 이내로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항목: 3.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 3.1. 교육과정·강의 개선

배점: 10

□ 진단 방향

○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교양·전공 교육과정 및 강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진단

※ 학내·외 교육환경 변화 대응, 교육수요 분석·반영, 교육의 질 관리 및 제고 등을 위해 교육과정 및 강의를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제도적 노력

□ 진단 요소

- 교양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 (3점, 정성)
- 전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 (4점, 정성)
- 교양·전공 교과목 강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 (3점, 정성)

□ 진단의 주안점

- 교양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
 교양 교육과정 개선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체계성과 구체성, 교양 교육과 정 개선 절차의 체계성, 환류를 통한 교양 교육과정 개선 노력
- 전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
 전공 교육과정 개선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체계성과 구체성, 전공 교육과 정 개선 절차의 체계성, 환류를 통한 전공 교육과정 개선 노력
- 교양·전공 교과목 강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 강의 개선 관련 규정 또
 는 지침의 체계성과 구체성, 강의 개선 절차의 체계성, 환류를 통한 강의 개선 노력

□ 진단 자료

| 구분 | 자료 | 해당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 | 2015년 | | |
| 전체 | 전체 교육과정·강의 개선 관련 자료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 2017년 | | |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별 평정

| 기준 | Α | В | С | D | Е |
|----|----|------|------|------|------|
| | 3점 | 2.4점 | 1.8점 | 1.2점 | 0.6점 |
| 점수 | 4점 | 3.2점 | 2.4점 | 1.6점 | 0.8점 |
| | 3점 | 2.4점 | 1.8점 | 1.2점 | 0.6점 |

□ 작성 방법

ㅇ 작성 양식

[기술 3-1-1] 교양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

- □ 교양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체계적 노력
 - 교양 교육과정 개선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 규정의 내용
 - 교양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내용
 - 교양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개선 방안 마련 및 시행, 결과에 대한 주기적 환류·보완 등의 구체적 내용

[중빙자료]

- (1) 교양 교육과정 개선 관련 규정 및 지침
- (2)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기술 3-1-2] 전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 체계적 노력

- □ 전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체계적 노력
 - 전공 교육과정 개선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 규정의 내용
 - 전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내용
 - 전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결과에 대한 주기적 환류·보완 등의 구체적 내용

[중빙자료]

- (1) 전공 교육과정 개선 관련 규정 및 지침
- (2)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기술 3-1-3] 교양·전공 교과목 강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

- □ 강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
 - 강의 개선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제정 또는 개정 여부
 - 강의 개선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내용
 - 강의 개선을 위한 제도의 내용
 - 강의 개선을 위한 분석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결과 환류 및 보완 등의 구체적 내용

[중빙자료]

- (1) 강의평가, 교수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강의의 질 관리 및 개선과 관련된 규정 및 지침
- (2)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3-1-1] | | |
| [12 0 1 1] | | |
| [기술 3-1-2] | | |
| [7]2 0 1 2] | | |
| [기술 3-1-3] | | |
| [7] 2 3 1 3] | | |

ㅇ 작성 지침

(1) [기술 3-1-1]-[기술 3-1-3]의 기술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 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각각 A4 2쪽 이내로 기술하 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항목: 3.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 3.2.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배점: 10

□ 진단 방향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수업 관리와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생 평가를 위한 관리가 적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진단

□ 진단 요소

- 강의 규모의 적절성 (1점, 정량)
 - * 강의 규모의 적절성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 시간강사 보수수준 (1점, 정량)
 - * 시간강사 보수수준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공·사립대/국립대법인)
-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4점, 정성)
-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4점, 정성)

□ 진단 자료

- 시간강사 보수수준은 설립유형별(국립대/공·사립대/국립대법인)로 구분하 여 진단
- 강의 규모의 적절성,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학생 평가의 적 정성 및 운영 성과는 설립유형에 따른 구분 없이 진단

| 구분 | 자료 | 공시(해당) 연도 | 출처 | 자료기준일 | | |
|-----------------|--------------|-----------|------------------|-------------------------------|--|--|
| | 강의 | 2015년 | 미창다다 그 기 | 2015학년도 1학기(4월), 2학기(10월) | | |
| | 규모의 | 2016년 | 대학정보공시 12-나-1 | 2016학년도 1학기(4월), 2학기(10월) | | |
| | 적절성 | 2017년 | 12-9-1 | 2017학년도 1학기(4월), 2학기(10월) | | |
| | 스러 | 2015년 | | 201514 201 101 | | |
| 전체 | 수업 관리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 | | 2017년 | | | | |
| | 학생 평가 | 2015년 |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 |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 | |
| | | 2017년 | | 2010년 2월 20월 | | |
| | 17771 | 2016년 | | 2016년 4월 | | |
| 국립대 | 시간강사 보수수준 | 2017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4월 | | |
| | | 2018년 | | 2018년 4월 | | |
| 공·사립대/ 국립대법인 | 11-1-1 1 | 2016년 | 대학정보공시 | 2016년 4월 | | |
| | 시간강사 | 2017년 | 14-차 | 2017년 4월 | | |
| | 보수수준 | 2018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8년 4월 | | |

□ 산출식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지표 점수 산출 방법 >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지표 점수

- = (①_1_1 2015-2016년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점수 + ①_2 2015-2016년 강의 규모의 적 절성 개선 정도 점수) \times $\frac{2}{3}$ + ①_1_2 2017년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점수 \times $\frac{1}{3}$
- + ② 1 시간당사 보수수준 점수 + ② 2 시간당사 보수수준 개선 정도 점수(공사립대 및 국립대법인)
- + ③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점수
- + ④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점수
- ※ 각 정량 진단 요소별 점수와 기산점을 합한 점수는 각 정량 진단 요소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1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점수

- <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점수 산출 방법 >
- ▶ 2015-2016년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점수
 -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수 만점 기준 이상 대학: 1점
-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수 만점 기준 미만 대학: 1점 × 해당대학2년평균 만점기준
- ▶ 2017년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점수
 -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수 2017년 전체 대학 평균 이상 대학 1점
- ※ 2017년 대학정보공시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수'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 2017년 강의 규모 의 적절성은 2015-2016년과 분리하여 진단함
- ※ 2017년 대학정보공시 '12-나-1. 학생 규모별 강좌수'에서는 온라인/오프라인 강의를 함께 공시 하나, 진단에서는 오프라인 강의만을 대상으로 함

< 연도별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수 산출 방법 >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수 = 0.5 × (50명 이하 규모 강의 비율)

+ 0.3 × (51-100명 규모 강의 비율)

+ 0.2 × (101-200명 규모 강의 비율)

+ 0.0 × (201명 이상 규모 강의 비율)

① 2 강의 규모의 적절성 개선 정도 점수

- 강의 규모의 적절성 개선 정도(2015-2016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강의 규모의 적절성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2015-2016년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점수 × 0.01
- ※ 2017년 대학정보공시 작성지침 변경으로 인하여 2차년(2016년) 대비 3차년(2017년) 증감분 산출이 불가함
- ※ 2015-2016년 강의 규모의 적절성 점수와 가산점을 합한 점수는 각 정량 진단 요소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② 1 시간강사 보수수준 점수

< 시간강사 보수수준 점수 산출 방법 >

(국립대)

- ▶ 최종 점수 = $\frac{2016년 점수 + 2017년 점수 + 2018년 점수}{3}$
- ▶ 연도별 점수

$$=1-\sum_{i=1}^{\infty}\left\{\left(1-\frac{\text{지급단가}}{\text{연도별기준단가}}\right)\times(\text{해당 지급단가가 적용되는 강의시간 비율})\right\}$$

- ※ 연도별 기준단가
- 2016년: 전업 82.8천원 / 비전업 31.0천원
- 2017년: 전업 85.7천원 / 비전업 32.0천원
- 2018년: 미정
- ※ 지급단가: 해당 대학이 등급별로 설정한 지급단가
- ※ 지급단가가 연도별 기준단가보다 큰 경우, 여도병 기준단가 를 1로 간주

(공·사립대)

- ▶ 시간강사 보수수준 공·사립대 만점 기준 이상 대학: 1점
- ▶ 시간강사 보수수준 공·사립대 만점 기준 미만 대학: 1점 × 해당대학 3년 평균 공·사립대 만점 기준

(국립대법인)

- ▶ 시간강사 보수수준 국립대법인 만점 기준 이상 대학: 1점
- ▶ 시간강사 보수수준 국립대법인 만점 기준 미만 대학: 1점 × 해당 대학 3년 평균 국립대법인 만점 기준

< 연도별 공·사립대 및 국립대법인 시간강사 보수수준 산출 방법 >

시간강사 보수수준(천원) = $\frac{\sum (\text{지급단가} \times \text{단가별 강의시간수})}{\text{총 강의시간수}}$

② 2 시간강사 보수수준 개선 정도 점수(공·사립대 및 국립대법인)

- 시간강사 보수수준 개선 정도(최근 3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시간강사 보수수준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공·시립대)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공 사립대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공 사립대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시간강사 보수수준 점수 × 0.01

(국립대법인)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공·사립대·국립대법인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공·사립대·국립대법인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시간강사 보수수준 점수 × 0.01

③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점수

- *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학점당 일정 시간 이상의 수업기간을 준수¹하고, 학생의 출결 관리를 규정에 따라 준수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휴강² 및 보강³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학생에게 수준 높은 수업 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정도 및 운영 성과
- ¹ 학점당 수업기간 준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함), 제14조(학점당 이수시간을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함)에 의거하여 해당 학교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의 이행을 말함
- ² 강의담당 교원의 사정에 의해 수업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국경공휴일 및 학사력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 ³ 학교 관련 부서에 휴강 및 보강계를 제출하고 실시한 공식적인 보강

- 진단 하위요소
 - a) 학점당 수업 기간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b) 학생 출결관리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c) 휴강 및 보강 관리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진단의 주안점(각 진단 하위요소 공통)
 - i)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체계성
 - ii) 관련 제도의 구체성과 다양성
 - iii) 관련 제도 실행 및 후속 조치의 적절성
- 점수 산정: 진단 하위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А | В | С | D | Е |
|----|----|------|------|------|------|
| 점수 | 4점 | 3.2점 | 2.4점 | 1.6점 | 0.8점 |

④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점수

*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학생의 학업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평정하기 위한 기준, 규정과 지침에 의한 재수강¹과 학 사경고의 기준 등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정도 및 운영 성과

1 이미 학점을 취득한 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것을 의미함(계절학기 포함)

- 진단 하위요소
 - a) 합리적인 성적부여 기준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b) 합리적인 재수강 기준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c) 학사경고 부여 기준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진단의 주안점(각 진단 하위요소 공통)
 - i)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체계성
 - ii) 관련 제도의 구체성과 다양성
 - iii) 관련 제도 실행 및 후속 조치의 적절성
- 점수 산정: 진단 하위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Α | В | С | D | E |
|----|----|------|------|------|------|
| 점수 | 4점 | 3.2점 | 2.4점 | 1.6점 | 0.8점 |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강의 규모의 적절성

〈표 3-2-1〉 강의 규모의 적절성

| | 구분 | 학생 규모별 강의 수 | | | | | 힉 | 학생 규모별 강의 비율 | | | | 전년대비 |
|-------------|------|----------------------------|------------------------------|-------------------------------|-----------------------------|---------------------|-----------------------|-------------------------------|--------------------------------|------------------------------|--|-------------------------------|
| 학 년 도 | 강의유형 | 50명 이하 규모 강의 수 | 51 -100명 규모 강의 수 | 101 -200명 규모 강의 수 | 201명 이상 규모 강의 수 | 전체 개설 강의 수 | 50명 이하 강의 비율 | 51 -100명 규모 강의 비율 | 101 -200명 규모 강의 비율 | 201명 이상 규모 강의 비율 |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수 |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수 증감분 |
| 2015 | | (a1) | (61) | (c1) | (d1) | (e1) | A1= a1/e1 | B1= b1/e1 | C1= c1/ 0 1 | D1= d1/e1 | F1= (0,5×A1) +(0,3×B1) +(0,2×C1) +(0,0×D1) | |
| 2016 | | (a2) | (b2) | (c2) | (d2) | (e2) | A2= a2/e2 | B2= b2/e2 | C2= c2/e2 | D2= d2/e2 | F2= (0.5×A2) +(0.3×B2) +(0.2×C2) +(0.0×D2) | F2-F1 |
| 2017 | 온라인 | | | | | | | | | | F3= (0.5×A3) +(0.3×B3) | |
| 2017 | 오프라인 | (a3) | (b3) | (03) | (d3) | (e3) | A3= a3/e3 | B3= b3/e3 | C3= c3/e3 | D3= d3/e3 | +(0.3×B3) +(0.2×C3) +(0.0×D3) | |

[※] 각 학년도의 학생 규모별 강의 수는 대학정보공시의 각 학년도별 1-4학기 강의 수 합계를 활용함

^{※ 3}학기 혹은 4학기 개설 강의가 있는 경우 3학기 혹은 4학기 개설 강의를 포함함

^{※ 2017}학년도의 경우,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로 구분되어있는 대학정보공시자료 중 오프라인 강의 자료만 활용함

- 진단 요소 2: 시간강사 보수수준

〈표 3-2-2a〉시간강사¹ 보수수준(국립대)

(단위: 천원²)

| 학년도 | 전업 여부 | 시간당 기준단가 (A) | 시간당 지급단가 (B) | 단가별 강의시간 수 (C) | 시간강사 총 강의시간 수 ³ (D) | 단가별 강의시간 비율 (E) E=C/D | (F) F=MIN(A,B) /A | (G) G=(1-F) ×E | 시간강사 보수수준 (I) I=1-H |
|------|----------|--------------------|--------------------|-------------------------|---|-----------------------------------|-------------------------|----------------------|------------------------------------|
| | 전업 | 82.8 | | | | | | | 11 > 1-H1 |
| 2016 | 비전업 | 31.0 | | | | | | | |
| | 합계 | | | | | | | H | |
| 2017 | 전업 | 85.7 | | | | | | | 12=1-H2 |
| | 비전업 | 32.0 | | | | | | | |
| | 합계 | | | | | | | H2// | |
| 2018 | 전업 | 미정 | | | | | | | 13 5 1- 1 13 |
| | 비전업 | 미정 | | | | | | | |
| | 합계 | | | | | | | H3// | |

¹ 해당 학년도 4월 기준(4월에 강의하지 않은 시간강사는 제외) 대학(학부, 대학원) 소속으로 학부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로 외부(기업 등)에서 강의료가 지급되는 시간강사 및 겸임, 초빙, 명예, 대우, 석좌교수 등은 포함하지 않음

[증빙자료]

(1) 2016-2018학년도 시간강사 강의료 산출 근거 관련 증빙자료(강의료 품의, 확정 내부 기안 등)

² 천원 단위로 입력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백원 단위)까지 입력 함(작성 예: '87,654원'은 '87.7천원'으로 입력함)

³ 시간강사 총 강의시간 수: 각 단가별 시간강사가 1학기 중 담당하는 총 강의시간으로, 해당 학년도 단가별 강의시간 수의 합

^{※ 2018}학년도 시간당 지급단가 및 단가별 강의시간 수는 대학정보공시의 '14-차. 강사 강의료' 의 기입내용과 동일해야함

〈표 3-2-2b〉시간강사¹ 보수수준(공·사립대/국립대법인)

(단위: 천원², %, %p)

| 학년도 | 시간당 지급단가 (A) | 단가별 강의시간 수 (B) | 단가별 지급총액 (C) C=A×B | 시간강사 총 강의시간 수 ³ (D) D=ΣB | 시간당 강의료 (E) E=ΣC/D | 전년대비 시간당 강의료 비율 (F) | 전년대비 증감분 |
|------|--------------------|-------------------------|-----------------------------|---|--------------------------|------------------------------|-------------|
| 2016 | | | | | E1 | F1=E1/E1×100 | |
| 2017 | | | | | E2 | F2=E2/E1×100 | F2-F1 |
| 2018 | | | | | E3 | F3=E3/E2×100 | F3-F2 |
| | 3년 | 평균 시간강사 . | | (E1+E2+E3)/3 | | | |

¹ 해당 학년도 4월 기준(4월에 강의하지 않은 시간강사는 제외) 대학(학부, 대학원) 소속으로 학부 강의를 하는 시간강사로 외부(기업 등)에서 강의료가 지급되는 시간강사 및 겸임, 초빙, 명예, 대우, 석좌교수 등은 포함하지 않음

[증빙자료]

(1) 2018학년도 시간강사 강의료 산출 근거 관련 증빙자료(강의료 품의, 확정 내부 기안 등)

- 진단 요소 3: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기술 3-2-1] 학점당 수업 기간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 학점당 수업 기간 준수를 위한 점검 체계의 운영 현황과 성과
 - 수업 기간 준수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수업 기간 준수를 위한 점검 체계의 실행 내용과 절차
 - 수업 기간 준수를 위한 점검 체계의 실행 내용과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 실적 등 운영 성과

[중빙자료]

- (1) 학점당 수업 기간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2) 수업 기간 준수를 위한 점검 체계의 실행 및 후속 조치 실적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² 천원 단위로 입력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십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백원 단위)까지 입력 함(작성 예: '87,654원'은 '87.7천원'으로 입력함)

³ 시간강사 총 강의시간 수: 각 단가별 시간강사가 1학기 중 담당하는 총 강의시간으로, 해당 학년도 단가별 강의시간 수의 합

^{※ 2018}학년도 시간당 지급단가 및 단가별 강의시간 수는 대학정보공시의 '14-차. 강사 강의료' 의 기입내용과 동일해야함

[기술 3-2-2] 학생 출결관리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 학생 출결관리 점검 체계의 운영 현황과 성과
 - 학생 출결관리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생 출결관리 점검 체계의 실행 내용과 절차
 - 학생 출결관리 점검 체계의 실행 내용과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 실적 등 운영 성과

[증빙자료]

- (1) 학생 출석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2) 학생 출결관리 점검 체계의 실행 및 후속 조치 실적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기술 3-2-3] 휴강 및 보강 관리에 관한 규정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 휴강 및 보강 관리 체계의 운영 현황과 성과
 - 휴강 및 보강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휴강 및 보강 관리 체계의 실행 내용과 절차
 - 휴강 및 보강 관리 체계의 실행 내용과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 실적 등 운영 성과

[증빙자료]

- (1) 휴강 및 보강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2) 휴강 및 보강 관리 체계의 실행 및 후속 조치 실적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진단 요소 4: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기술 3-2-4] 합리적인 성적 부여 기준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 성적 부여 점검 체계의 운영 현황과 성과
 - 성적 부여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성적 부여를 위한 절차(예: 평가→학점부여→이의제기 및 정정기간→최종 확정 등)
 - 성적 부여 관련 의사 결정 과정 중 구성원의 이해 및 협조 절차
 - 전공 및 교양 과목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한 성적 부여 기준
 - 성적 부여 점검 체계 관련 실행 및 후속 조치 실적 등 운영 성과

[증빙자료]

- (1) 성적 부여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2) 강의계획서 견본
- (3) 성적 부여 점검 체계의 실행 및 후속 조치 실적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기술 3-2-5] 합리적인 재수강 기준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 재수강 관리 체계의 운영 현황과 성과
 - 재수강 신청 가능 요건에 관한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재수강 관리 및 점검 체계의 실행 내용과 절차
 - 재수강 관리 체계의 실행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 실적 등 운영 성과

[증빙자료]

- (1) 재수강 신청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2) 재수강 관련 실행 및 후속 조치 실적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기술 3-2-6] 학사경고 부여 기준 수립 및 준수 노력과 운영 성과

- □ 학사경고 관리 체계의 운영 현황과 성과
 - 학사경고 기준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학사경고 관리 및 점검 체계의 실행 내용과 절차
 - 학사경고 관리 체계의 실행 절차에 따른 후속 조치 실적 등 운영 성과

[증빙자료]

- (1) 학사경고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2) 학사경고 관련 관리 실행 및 후속 조치 실적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3-2-1] | | |
| [기술 3-2-2] | | |
| [기술 3-2-3] | | |
| [기술 3-2-4] | | |
| [기술 3-2-5] | | |
| [기술 3-2-6] | | |

ㅇ 작성 지침

- (1) 〈표 3-2-1〉은 대학정보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진단주관기관에서 작성하며,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2015-2017년 자료를 대학이 모두 작성함
- (2) 〈표 3-2-2a〉(국립대)의 2016-2018년 자료는 모두 대학이 작성하며, 증빙 자료를 별도로 제출함
- (3) 〈표 3-2-2b〉(공·사립대 및 국립대법인)의 2016-2017년 자료는 대학정보 공시자료를 이용하여 진단주관기관에서 작성하며, 2018년 자료는 2018 년 4월 기준으로 대학정보공시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와 일치되도록 대 학이 작성함.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2016-2018년 자료를 대 학이 모두 작성함
- (4) [기술 3-2-1]-[기술 3-2-6]의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각 A4 2쪽 이내로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항목: 4. 학생 지원

지표: 4.1. 학생 학습역량 지원

배점: 5

□ 진단 방향

○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적절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진단

*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학이 학생의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학습역량 지원(인력 또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 ※ 단과대학 단위의 지원인 경우,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실적에 한하여 포함 가능하며, 최대 2개 단과대학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음
- ※ 단, 단과대학이 없는 대학의 경우,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학부(과) 단위의 프로그램을 최대 2개 학부(과)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음

□ 진단 요소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성)
- 학습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운영 (정성)
 - ※ 특히 소규모 대학(재학생 1,000명 미만)의 경우, 관련 조직과 인력이 학생 학습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정성)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실적 (정성)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언어능력과 수리능력 등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지원 프로그램(예: 학습법 워크숍, 보고서 작성법 특강,학습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등)

- ※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만 인정함
- ※ 대학 내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내용에 의해 정례적·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공식 문서(공문, 실행계획 및 결산, 예산 등)나 전산 시스템 등의 기록으로 관리되어 증빙 가능한 프로그램에 한함
- ※ 단과대학 단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 본부 차원의 정기적·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빙 가능한 프로그램에 한함(이때 해당 단과대학에 대한 개요를 추가하고,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의 유기적 역할 분담에 대해 반드시 기술하여야 함)
- ※ 대학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면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함

** 환류 체계

대학이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또는 성과를 확인·점검·모니터링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

□ 진단의 주안점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조사·분석 및 결과 반영,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의 체계성
- 학습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운영: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체계성, 전담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 인력의 전문성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정량적·정성적 실적의 우수성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실적: 환류 의 체계성, 프로그램 개선 실적의 우수성

□ 진단 자료

| 구분 | 자료 | 해당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 | 컨비 컨스어가 되어 | 2015년 | | 001513 001 101 | |
| 전체 | 학생 학습역량 지원 관련 자료 | - 1 - 1 - 1 - 2016頃 - 1 1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 인인 자료 | 2017년 | | 2010년 2월 20일 | |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Α | В | С | D | Е |
|----|----|----|----|----|----|
| 점수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술 4-1-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분석 내용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 상기 사전 조사 및 분석 결과가 반영된 내용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중빙자료]

-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 사전 조사 및 분석 관련 자료
- (2)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3)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안내 관련 자료(예: 소책자, 웹사이트 게시 자료 등)

- 진단 요소 2: 학습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 운영

[기술 4-1-2] 학습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운영

- □ 학습역량 강화 관련 규정,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구축·운영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내용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조직의 구성 및 업무 분장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의 전문성(예: 관련 경력 및 학위 소지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또는 전담)조직의 운영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2)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또는 전담)조직의 구성 관련 공문, 조직도 및 관련 자료
- (3)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담당 인력의 경력 및 학위, 관련 자격증 등이 포함된 지원 인력의 전문성 입증 자료(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자료 제출)

- 진단 요소 3: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표 4-1-1〉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학년도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명 ¹ | 주요 내용 | 재 학생 수 ² (명) | 참여 학생 수 ³ (명) | 재학생 대비 참여 학생 비율(%) | 프로그램 예산 집행액(천원) ⁴ |
|------|-------------------------------|---------|-------------------------------|--------------------------------|--------------------------|------------------------------------|
| | | | | (B) | | |
| 2015 | | | (A) | (C) | | |
| | | 소 계 | | (B+C) | [(B+C)/A]×100 | |
| | | | | | | |
| 2016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2017 | | | | | | |
| | | 소 계 | | | | |

¹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한하여 기재하되, 대학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면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함

[증빙자료]

- (1) 프로그램 참여자(수료자) 현황이 포함된 공문, 기타 근거자료
- (2) 프로그램 예산 집행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² 재학생 수는 해당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³ 참여 학생 수는 출결증빙이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수료 기준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프로그램 간 중복 계수가 가능함

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실제 집행액을 의미함

[기술 4-1-3]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 실적(<표 4-1-1>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그 외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로 기술할 수 있음)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성공 또는 우수 사례 등 정성적 실적

[증빙자료]

(1) 프로그램 결과 관련 자료(예: 성공 또는 우수 사례집 등)

- 진단 요소 4: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실적

[기술 4-1-4]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실적

-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실적
 - 환류 체계의 내용과 절차(예: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개선 설문조사, 성과 분석 등)
 - 환류 체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증빙자료]

- (1) 프로그램 평가회, 만족도 조사, 성과 분석 실시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2) 프로그램 개선 과정 및 개선 실적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중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4-1-1] | | |
| [기술 4-1-2] | | |
| | | |
| [기술 4-1-3] | | |
| [기술 4-1-4] | | |
| <班 4-1-1> | | |
| | | |

ㅇ 작성 지침

- (1) 〈표 4-1-1〉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기재하지 않음
- (2) 원칙적으로 대학 본부가 주관이 되는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단과 대학 단위의 실적은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이고 체계 적으로 운영되는 최대 2개 단과대학 범위 내에서 제시함. 이때 단과대 학이 없는 대학의 경우,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체계 적으로 운영되는 학부(과) 단위의 프로그램을 최대 2개 학부(과)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음(단,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의 유기 적 역할 분담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함)
- (3) [기술 4-1-1]-[기술 4-1-4]의 기술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 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각 A4 2쪽 이내로 기술하 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항목: 4. 학생 지원

지표: 4.2. 진로·심리 상담 지원

배점: 3

□ 진단 방향

○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원활한 학업을 위한 진로·심리 상담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진단

* 진로·심리 상담 지원

대학이 전문성을 갖춘 진로·심리 상담 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학생상담 및 지도체제와 비교과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 이후까지의 심리적건강과 진로 탐색, 준비, 이동에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

- ※ 단과대학 단위의 지원인 경우,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실적에 한하여 포함 가능하며, 최대 2개 단과대학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음
- ※ 단, 단과대학이 없는 대학의 경우,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학부(과) 단위의 프로그램을 최대 2개 학부(과)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음

□ 진단 요소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성)
- 진로·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운영 (정성)
 - ※ 특히 소규모 대학(재학생 1,000명 미만)의 경우, 관련 조직과 인력이 진로·심리 상담에 대한 지원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정성)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선 실적 (정성)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학생의 심리적 건강과 진로 탐색, 준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생상담, 진로지도 및 상담, 교육 프로그램(예: 적성탐색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대인관계 향상 워크숍, 심리검사 서비스 등)

- ※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만 인정함
- ※ 대학 내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내용에 의해 정례적·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공식 문서(공 문. 실행계획 및 결과. 예산 등)나 전산 시스템 등의 기록으로 관리되어 증빙 가능한 프로그램에 한함
- ※ 단과대학 단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 본부 차원의 정기적·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빙 가능한 프로그램에 한함(이때 해당 단과대학에 대한 개요를 추가하고, 대학 본부와 단과 대학의 유기적 역할 분담에 대해 반드시 기술하여야 함)
- ※ 대학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면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함

** 환류 체계

대학이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또는 성과를 확인·점검·모니터링하여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

□ 진단의 주안점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조사·분석 및 결과 반영,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의 체계성
- 진로·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운영: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련 규정 및 지침 의 체계성, 전담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 인력의 전문성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정량적·정성적 실적의 우수성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선 실적: 환류 의 체계성, 프로그램 개선 실적의 우수성

□ 진단 자료

| 구분 | 자료 | 해당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 | 키크 기키 기타 | 2015년 | | 001514 001 101 | |
| 선제 | 진로·심리 상담 기의 과권 기교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 지원 관련 자료 | 2017년 | | 2010년 2월 20월 | |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Α | В | С | D | E |
|----|----|------|------|------|------|
| 점수 | 3점 | 2.4점 | 1.8점 | 1.2점 | 0.6점 |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술 4-2-1]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진로·심리 상담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분석 내용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 상기 사전 조사 및 분석 결과가 반영된 내용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중빙자료]

- (1) 학생의 진로·심리 상담 관련 사전 조사 및 분석 관련 자료
- (2)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3)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안내 관련 자료(예: 소책자, 웹사이트 게시 자료 등)

- 진단 요소 2: 진로·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운영

[기술 4-2-2] 진로·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운영

- □ 진로·심리 상담 관련 규정,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내용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조직의 구성 및 업무 분장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의 전문성(예: 관련 경력 및학위 소지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 (1)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또는 전담)조직의 운영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2)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지원(또는 전담)조직의 구성 관련 공문, 조직도, 기타 근거자료
- (3)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담당 인력의 경력 및 학위, 관련 자격증 등이 포함된 지원 인력의 전문성 입증 자료(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자료 제출)

- 진단 요소 3: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표 4-2-1〉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학년도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명 ¹ | 주요 내용 | 재 학생 수 ² (명) | 참여 학생 수 ³ (명) | 재학생 대비 참여 학생 비율(%) | 프로그램 예산 집행액(천원) ⁴ |
|------|--------------------------------|---------|-------------------------------|--------------------------------|--------------------------|------------------------------------|
| | | | | (B) | | |
| 2015 | | | (A) | (C) | | |
| | | 소 계 | | (B+C) | [(B+C)/A]×100 | |
| | | | | | | |
| 2016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2017 | | | | | | |
| | | 소 계 | | | | |

¹ 학생 상담실적(대학 내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내용에 의해 정례적·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공식 문 서(공문, 실행계획 및 결과, 예산 등)나 전산 시스템 등의 기록으로 관리되는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함(단, 대학 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면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함)

[증빙자료]

- (1) 프로그램 참여자(수료자) 현황이 포함된 공문, 기타 근거자료
- (2) 프로그램 예산 집행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학생 상담실적의 경우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명' 란에 "학생 상담 실적" 으로 적시하여 기재하고 '참여 학생 수' 란에 학년도별 전체 재학생 상담 건수를 기재함

² 재학생 수는 해당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³ 참여 학생 수는 출결증빙이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수료 기준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프로그램 간 중복 계수가 가능함

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실제 집행 금액을 의미함

[기술 4-2-3]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 실적(<표 4-2-1>을 활용하여 제시하되, 그 외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로 기술할 수 있음)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성공 또는 우수 사례 등 정성적 실적

[중빙자료]

(1) 프로그램 결과 보고 관련 자료(예: 성공 또는 우수 사례집 등)

- 진단 요소 4: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선 실적

[기술 4-2-4]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선 실적

-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선 실적
 - 환류 체계의 내용과 절차(예: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개선 설문조사, 성과 분석 등)
 - 환류 체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증빙자료]

- (1) 프로그램 평가회, 만족도 조사, 성과 분석 실시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2) 프로그램 개선 과정 및 개선 실적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4-2-1] | | |
| [기술 4-2-2] | | |
| [기술 4-2-3] | | |
| [기술 4-2-4] | | |
| <班 4-2-1> | | |

ㅇ 작성 지침

- (1) 〈표 4-2-1〉의 진로·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은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기재하지 않음
- (2) 원칙적으로 대학 본부가 주관이 되는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단과 대학 단위의 실적은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이고 체계 적으로 운영되는 최대 2개 단과대학 범위 내에서 제시함. 이때 단과대 학이 없는 대학의 경우,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체계 적으로 운영되는 학부(과) 단위의 프로그램을 최대 2개 학부(과)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음(단,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의 유 기적 역할 분담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함)
- (3) [기술 4-2-1]-[기술 4-2-4]의 기술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 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각 A4 2쪽 이내로 기술하 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항목: 4. 학생 지원

지표: 4.3. 장학금 지원

배점: 5

□ 진단 방향

○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 는 정도를 진단

□ 진단 요소

- 장학금 지급률 (5점, 정량)
 - * 장학금 지급률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 진단 자료

○ 모든 대학 구분 없이 진단

| 구분 | 자료 | 공시(해당) 연도 | 출처 | 자료기준일 |
|--------|-------|-------------------------|---------------|---------------|
| | 장학금 | 2016년 | 대학정보공시 12-다-1 | 2015년 회계연도 결산 |
| | 수혜 현황 | 2017년 | 한국장학재단 자료 | 2016년 회계연도 결산 |
| 그] 극]] | (학부) | 학부) 2018년 대학별 제출 자료 | | 2017년 회계연도 결산 |
| 전체 | 등록금 | 등록금 2016년 대학정보공시 12-다-1 | 2015년 회계연도 결산 | |
| | 수입 총액 | 2017년 | 한국장학재단 자료 | 2016년 회계연도 결산 |
| | (학부) | 2018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회계연도 결산 |

□ 산출식

< 장학금 지원 지표 점수 산출 방법 >

장학금 지원 지표 점수 = ① 장학금 지급률 점수 + ② 장학금 지급률 개선 정도 점수 ※ 각 정량 진단 요소별 점수와 가산점을 합한 점수는 각 정량 진단 요소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장학금 지급률 점수

< 장학금 지급률 점수 산출 방법 >

- ▶ 장학금 지급률 만점 기준 이상 대학: 5점
- ▶ 장학금 지급률 만점 기준 미만 대학: 5점 × 해당대학3년 평균 만점기준

< 연도별 장학금 지급률 산출 방법 >

장학금 지급률(%) = $\frac{(교내장학금 + 교외장학금)(천원)}{등록금수입총액(천원)} \times 100$

※ 교외장학금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은 제외

② 장학금 지급률 개선 정도 점수

- 장학금 지급률 개선 정도(최근 3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장학금 지급률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장학금 지급률 점수 × 0.01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장학금 지급률

〈표 4-3-1〉 장학금 지급률

(단위: 천원¹, %, %p)

| | | | 장학금 ² 교 | 외 ⁴ | | | | 전년대비 |
|------|------------------------|-----|-------------------------|--------------------------------|----|------------------------------|--------------------------|-------------------|
| 회계연도 | 교내 ³ (A) | 국가⁵ | 지방자치 단체 ⁶ | 사설 및 기타 ⁷ (B) | 소계 | 수입 총액 ⁸ (C) | (D) D=(A+B)/C ×100 | 장학금 지급률 증감분 |
| 2015 | | | | | | | D1 | |
| 2016 | | | | | | | D2 | D2-D1 |
| 2017 | | | | | | | D3 | D3-D2 |
| | 3년 평균 장학금 지급률 | | | | | | (D1+D2 | 2+D3)/3 |

 $^{^{1}}$ 원 단위의 모든 계산 과정 완료 후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입력함

² 장학금: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에 지급된 장학금(대학원 제외)

³ 교내 장학금: 학생에게 지급된 교내 장학금의 수혜 현황을 입력하며, 성적우수장학금, 저소득충장학금, 근로장학금, 교직원장학금, 외국인전형 입학·편입학생의 장학금, 기타 교내장학금 수혜 현황이 포함됨

⁴ 교외 장학금: 외부의 재원으로 학생에게 지급된 장학금으로 재원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사설 및 기타로 구분함

⁵ 교외-국가: 국고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국비장학금 등)과 국가보훈처에서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훈장학금을 입력함

• 보훈장학금 입력 기준

| 설립구분 |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 교외-국가 | 교내-기타 |
|-------|-------------|-------|-------|
| 그. 코리 | 본인 | _ | 100% |
| 국·공립 | 자녀 | _ | 100% |

| 설립구분 | 보훈장학금 지급 대상 | 교외-국가 | 교내-기타 |
|--------|-------------|-------|-------|
| 사립 | 본인 | _ | 100% |
| / 1·14 | 자녀 | 50% | 50% |

⁶ 교외-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및 교육청) 재원으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지만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원으로 조성되어 지급한 장학금은 '사설 및 기타'로 분류
- ※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고로 지급되는 장학금은 '국가'에 입력하나,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조성된 사랑드림장학금 등은 '사설 및 기타'로 입력
- ⁸ 등록금 수입 총액: 계절학기 수업료 및 단기수강료 수입을 제외한 결산기준의 등록금 수입 총액(대학원 제외)

[증빙자료]

-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는 회계별 결산서)
- (2) 입학금, 정규학기 수업료, 계절학기 수업료, 단기수강료 등이 구분된 등록금 수입 내역 관련 증빙자료(2017년 결산)
- (3) 교외 장학금 중 사설 및 기타 장학금 지급 내역 관련 증빙자료(2017년 결산) ※ 장학금 지급 내역 자료는 학부 및 대학원이 구분된 자료로 제출

ㅇ 작성 지침

(1) 〈표 4-3-1〉의 2015-2016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대학정보공시 '12-다-1. 장학금 수혜 현황'의 장학금 현황 수치를 활용하여 진단주관기관이 작성하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8년 대학정보공시를 위해제출하는 자료와 일치되도록 대학이 직접 작성함. 장학금 수혜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2015-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대학이모두 직접 작성함

⁷ 교외-사설 및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 기업체, 민간단체, 기부자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항목: 4. 학생 지원

지표: 4.4. 취·창업 지원

배점: 3

□ 진단 방향

○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취·창업을 위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진단

* 취·창업을 위한 지원

대학이 학생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원(또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학생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비교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 ※ 단, 창업의 경우 정규 교과목도 포함하며, 창업 교과목은 강좌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교 과목으로 창업을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과목을 의미함.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는 기업가 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함
- ※ 단과대학 단위의 지원인 경우,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실적에 한하여 포함 가능하며. 최대 2개 단과대학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음
- ※ 단, 단과대학이 없는 대학의 경우,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 학부 (과) 단위의 프로그램을 최대 2개 학부(과)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음

□ 진단 요소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정성)
- 취·창업 지원 체계 구축·운영 (정성)
 - ※ 특히 소규모 대학(재학생 1,000명 미만)의 경우, 관련 조직과 인력이 취·창업을 위한 지원을 충실하게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정성)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실적 (정성)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학생의 취업과 창업 등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재정적 지원,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예: 자격증 강좌, 취·창업 특강, 인턴십 프로그램, 모의면접 프로그램, 리더십 함양 워크숍, 이력서 교정 서비스, 창업 동아리 재정지원 등)

- ※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만 인정함
- ※ 대학 내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내용에 의해 정례적·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공식 문서(실행계획, 공문 등)나 전산 시스템 등의 기록으로 관리되어 증빙 가능한 프로그램에 한함
- ※ 단과대학 단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 본부 차원의 정기적·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증빙 가능한 프로그램에 한함(이때 해당 단과대학에 대한 개요를 추가하고,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의 유기적 역할 분담에 대해 반드시 기술하여야 함)
- ※ 대학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면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함

** 환류 체계

대학이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 또는 성과를 확인·점검·모니터링하여 향후 프로 그램 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절차

□ 진단의 주안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조사·분석 및 결과 반영,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의 체계성
- 취·창업 지원 체계 구축·운영: 프로그램 운영·지원 관련 규정 및 지침의 체계성, 전담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 인력의 전문성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정량적·정성적 실적의 우수성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환류의 체계성, 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실적의 우수성

□ 진단 자료

| 구분 | 자료 | 해당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전체 | 취·창업 지원 | 2015년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
| C- 11 | 관련 자료 | 2017년 | , , , E , , E , , , , , , , , , , , , , | 2018년 2월 28일 |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А | В | С | D | Е |
|----|----|------|------|------|------|
| 점수 | 3점 | 2.4점 | 1.8점 | 1.2점 | 0.6점 |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술 4-4-1]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전 조사 및 분석 내용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 상기 사전 조사 및 분석 결과가 반영된 내용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와 특징

[중빙자료]

- (1) 산업체 및 학생들의 취업 요구조사 등 사전조사 및 분석 관련 자료
- (2)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3)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안내 관련 자료(예: 소책자, 웹사이트 게시 자료 등)

- 진단 요소 2: 취·창업 지원 체계 구축·운영

[기술 4-4-2] 취·창업 지원 체계 구축·운영

- □ 취·창업 관련 규정, 자원 확보(조직·인력·예산) 등 지원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구축 및 운영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내용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의 구성 및 업무 분담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 인력의 전문성(예: 관련 경력 및 학위 소지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 (1)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또는 전담)조직의 운영 관련 규정 또는 지침
- (2)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또는 전담)조직의 구성 관련 공문, 조직도, 기타 근거자료
- (3)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담당 인력의 경력 및 학위, 관련 자격증 등이 포함된 지원 인력의 전문성 입증 자료(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자료 제출)

- 진단 요소 3: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표 4-4-1〉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비교과에 한하여 작성)

| 학년도 | 취·창업 프로그램명 ¹ | 주요 내용 | 재 학생 수 ² (명) | 참여 학생 수 ³ (명) | 재학생 대비 참여 학생 비율(%) | 프로그램 예산 집행액(천원) ³ |
|------|----------------------------|---------|-------------------------------|--------------------------------|--------------------------|------------------------------------|
| | | | | (B) | | |
| 2015 | | | (A) | (C) | | |
| | | 소 계 | | (B+C) | [(B+C)/A]×100 | |
| | | | | | | |
| 2016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2017 | | | | | | |
| | | 소 계 | | | | |

- 1 대학이 아닌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면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함
- 2 재학생 수는 해당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 ³ 참여 학생 수는 출결증빙이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고, 수료 기준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수료자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프로그램 간 중복 계수가 가능함
- 4 프로그램 운영 예산의 실제 집행 금액을 의미함

[증빙자료]

- (1) 프로그램 참여자(수료자) 현황이 포함된 공문
- (2) 프로그램 예산 집행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표 4-4-2⟩ 창업 정규교과목 운영 현황

| 학년도 | 개설 학과 | 교과목 명 | 학점 | 주요 내용 | 재학생 수 ¹ (명) | 이수자 수 ² (명) | 재학생 대비 이수자 비율(%) |
|------|----------|-------|----------|-------|---------------------------|---------------------------|---------------------|
| | | | | | | (B) | |
| 2015 | | | | | (A) | (C) | |
| | | | 소 계 | | (B+C) | [(B+C)/A]×100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 2017 | | | | | | | |
| | | | 소 계 | | | | |

¹ 재학생 수는 해당학년도 4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와 10월 1일 기준 정원 내·외 재학생 수의 평균(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산정함)

[증빙자료]

- (1) 창업 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편람(표지, 해당 페이지), 교과과정
- (2) 창업 교과목 개설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3) 강의계획서, 출석부 및 기타 근거자료

[기술 4-4-3]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 실적(<표 4-4-1>, <표 4-4-2>를 활용하여 제시하되, 그 외 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로 기술할 수 있음)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공 또는 우수 사례 등 정성적 실적

[중빙자료]

(1) 프로그램 결과 보고 관련 자료(예: 성공 또는 우수 사례집 등)

² 이수자 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최종 성적이 부여된 인원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프로그램 간 중복 계수가 가능함

- 진단 요소 4: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실적

[기술 4-4-4]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실적

-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실적
 - 환류 체계의 내용과 절차(예: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개선 설문조사, 성과 분석 등)
 - 환류 체계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증빙자료]

- (1) 프로그램 평가회, 만족도 조사, 성과 분석 실시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2) 프로그램 개선 과정 및 개선 실적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4-4-1] | | |
| [기술 4-4-2] | | |
| [기술 4-4-3] | | |
| [기술 4-4-4] | | |
| <班 4-4-1> | | |
| <班 4-4-2> | | |

ㅇ 작성 지침

- (1) 〈표 4-4-1〉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진로·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기재하지 않음
- (2) 원칙적으로 대학 본부가 주관이 되는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단과 대학 단위의 실적은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이고 체계 적으로 운영되는 최대 2개 단과대학 범위 내에서 제시함. 이때 단과대 학이 없는 대학의 경우,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체계 적으로 운영되는 학부(과) 단위의 프로그램을 최대 2개 학부(과) 범위 내에서 제시할 수 있음(단, 대학 본부와 단과대학 또는 학부(과)의 유 기적 역할 분담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함)
- (3) [기술 4-4-1]-[기술 4-4-4]의 기술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 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각 A4 2쪽 이내로 기술하 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항목: 5. 교육 성과

지표: 5.1. 학생 충원율

배점: 10

□ 진단 방향

○ 학생들에게 필요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여, 신입생·재학생을 잘 충원 하고 있는지를 진단

□ 진단 요소

- 신입생 충원율 (4점, 정량)
 - * 신입생 충원율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 재학생 충원율 (6점, 정량)
 - * 재학생 충원율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 진단 자료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진단

| 구분 | 자료 | 공시(해당) 연도 | 출처 | 자료기준일 |
|----|--------------|-----------|-------------------|-------------|
| | 신입생 및 | 2016년 | 대학정보공시 4-다, 라 | 2016년 4월 1일 |
| | 재학생 충원율 | 2017년 |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자료 | 2017년 4월 1일 |
| 전체 | | 2018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8년 4월 1일 |
| 겐세 | 출] 기 ㅁ 기 | 2016년 | | 2016년 4월 1일 |
| | 학생모집 정지인원 | 2017년 | 교육부 자료 | 2017년 4월 1일 |
| | 70/11/12 | 2018년 | | 2018년 4월 1일 |

□ 산출식

< 학생 충원율 지표 점수 산출 방법 >

학생 충원율 지표 점수 = ① 신입생 충원율 점수 + ② 신입생 충원율 개선 정도 점수 + ③ 재학생 충원율 점수 + ④ 재학생 충원율 개선 정도 점수

※ 각 정량 진단 요소별 점수와 기산점을 합한 점수는 각 정량 진단 요소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신입생 충원율 점수

- < 신입생 충원율 점수 산출 방법 >
- ▶ 신입생 충원율 수도권/비수도권별 만점 기준 이상 대학 4점
- ▶ 신입생 충원율 수도권비수도권별 만점 기준 미만 대학 4점 × _____해당 대학 3년 평균 _____ 수도권/비수도권별 만점 기준
- < 연도별 신입생 충원율 산출 방법 >

신입생 충원율(%) = 정원내주간입학자(명) 정원내주간모집인원(명)×100

③ 재학생 충원율 점수

- < 재학생 충원율 점수 산출 방법 >
- ▶ 재학생 충원율 수도권/비수도권별 만점 기준 이상 대학 6점
- < 연도별 재학생 충원율 산출 방법 >

재학생 충원율(%) =

정원내주간재학생수 + 정원내계절제과정재학생수 + 정원내원격학과재학생수(명) 정원내주간학생정원 - 학생모집정지인원(명)

②, ④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개선 정도 점수

-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개선 정도(최근 3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수도권/비수도권별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수도권/비수도권별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충원율 점수 × 0.01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신입생 충원율

<표 5-1-1> 신입생 충원율¹

(단위: 명, %, %p)

| | | | 모집인원 | ² | | | 입학자 ⁵ | | | | | 전년대비 |
|------|---------------|-------------------|------|-------------------|----|-----------|-------------------|----|----------------------|---------|------------------|------------|
| 연도 | : | 정원 내 ³ | 3 | | | | 정원 내 ⁶ | 3 | | | 충원율 | 신입생 |
| | 주간 (A) | 야간 | 소계 | 정원 외 ⁴ | 합계 | 주간 (B) | 야간 | 소계 | 정원 외 ⁷ 합계 | | (C) C=B/A×100 | 충원율 증감분 |
| 2016 | | | | | | | | | | | (£1/// | |
| 2017 | | | | | | | | | | | C2 | C2-C1 |
| 2018 | | | | | | | | | | (C3/// | C3-C2 | |
| | 3년 평균 신입생 충원율 | | | | | | | | | (C1+C2+ | -C3)/3 | |

¹ 대학원 제외

² 모집인원: 입학을 위해 공고되는 모집 요강에서 당해 학년도 모집인원 기준(단, 9월 학기 입학자 제외)

³ 정원 내 모집인원: 입학정원 + 이월인원 - 모집정지인원 - 당해연도 2+4 약학대학 입학정원

⁴ 정원 외 모집인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총 입학정원 2% 이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및 전 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농어촌 학생(총 입학정원 4% 이내) + 특성화고교졸업자(총 입학정원의 1.5% 이내))(총 입학정원의 5.5% 이내)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총 입학정원의 11% 이내) + 서해 5도 학생(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 단원고 특별전형(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 총 입학정원의 1% 이내)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전과정 해외이수 재외국민과 외국인 + 산업체위탁학생 + 계약학과 + 장애인 등 대상자 + 기타

⁵ 입학자: 해당 학년도 신입생 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모집정원 미달로 추가 모집한 입학자 포함), 정원 내와 정원 외로 구분

[※] 제외: 재입학 및 편입학, 2+4 약학대학 입학자,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의 본과 진급생 및 교육대학의 계절제 편입생

[※] 입학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자에 한함

 $^{^6}$ 정원 내 입학자: 정원 내에서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입학한 자 수

⁷ 정원 외 입학자: 전형유형에 따라 산업체위탁생, 계약학과, 군위탁생, 농어촌학생, 재외국민과 외국 인, 장애인 등 대상자 등

〈표 5-1-2〉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 선정 대학 신입생 현황¹

(단위: 명)

| 모집인원 | | | | | | | 입학자 | | | | |
|------|----|------|----|------|----|----|------|----|------|----|--|
| 연도 | | 정원 내 | | | | | 정원 내 | | | | |
| 24 | 주간 | 야간 | 소계 | 정원 외 | 합계 | 주간 | 야간 | 소계 | 정원 외 | 합계 | |
| 2017 | | | | | | | | | | | |
| 2018 | | | | | | | | | | | |

 ²⁰¹⁶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 선정 대학의 경우 2017-2018년 평생교육단과대학의 학생정원을 신입생 충원율 산출에서 제외하고, 2017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 선정 대학의 경우 2018년 평생교육단과대학의 학생정원을 신입생 충원율 산출에서 제외함

[증빙자료]

(1) 2016-2017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 선정 공문 및 관련 증빙 서류

- 진단 요소 2: 재학생 충원율

〈표 5-1-3〉 재학생 충원율¹

(단위: 명, %, %p)

| | ē | 학생정원 | 2 | 학생 | 재학생 정원 내 | | | | | | | 재학생 충원율 | 전년대비 |
|------|---------------|------|----|------------------------------------|-------------|------------------|-------------------------|----|----|---------|--------|------------------------------------|-------------------|
| 연도 | 주간 (A) | 야간 | 소계 | 모집 정지 인원 ³ (B) | 주간 (C) | 계절제 과정 (D) | 8년 계 원격 학과 (E) | 야간 | 소계 | 정원 외 합계 | | (F) F=(C+D+E)/ (A-B) ×100 | 재학생 충원율 증감분 |
| 2016 | | | | | | | | | | | | ///5/// | |
| 2017 | | | | | | | | | | | | F2/// | F2-F1 |
| 2018 | | | | | | | | | | | | F3/// | F3-F2 |
| | 3년 평균 재학생 충원율 | | | | | | | | | (F1+F2+ | -F3)/3 | | |

¹ 대학원 제외

〈표 5-1-4〉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 선정 대학 재학생 현황¹

(단위: 명)

| | | 학생정원 | | | 재학생 | | | | | | | |
|------|----|------|----|-----------------------------|-----|-----------|----------|----|----|------|----|--|
| | | 4995 | | 학생 모집 | | | | | | | | |
| 연도 | 주간 | 야간 | 소계 | 포접 정지 인원 ² | 주간 | 계절제 과정 | 원격학 과 | 야간 | 소계 | 정원 외 | 합계 | |
| 2017 | | | | | | | | | | | | |
| 2018 | | | | | | | | | | | | |

² 학생정원: 모집단위별 학년별 입학정원의 합

³ 학생모집정지인원: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ㅇ 작성 지침

- (1) 〈표 5-1-1〉, 〈표 5-1-3〉의 2016-2017년 자료는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진단주관기관이 작성하며, 2018년 자료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를 위해 제출하는 자료와 일치되도록 대학이 작성함.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공시하지 않은 대학의 경우 2016-2018년 자료를 대학이 모두 작성함
- (2) 〈표 5-1-2〉, 〈표 5-1-4〉는 2016년 또는 2017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대학의 경우만 작성하며, 평생교육단과대학으로 운영되 는 대학의 2017-2018년 학생정원 및 재학생 자료를 모두 대학이 직접 작성함

 ²⁰¹⁶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 선정 대학의 경우 2017-2018년 평생교육단과대학의 학생정원을 재학생 충원율 산출에서 제외하고, 2017년 평생교육단과대학 지원 사업 선정 대학의 경우 2018년 평생교육단과대학의 학생정원을 재학생 충원율 산출에서 제외함

² 평생교육단과대학에 해당되는 학생모집정지인원 수만 입력함

항목: 5. 교육 성과

지표: 5.2. 졸업생 취업률

배점: 4

□ 진단 방향

○ 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 나타난 성과 정도를 진단

□ 진단 요소

- 졸업생 취업률 (2점, 정량)
 - * 졸업생 취업률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 유지취업률 (2점, 정량)
 - * 유지취업률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 진단 자료

○ 권역별(수도권/강원권/충청권/대구·경북권/부산·울산·경남권/전라·제주권)로 구분하여 진단

| 구분 | 자료 | 공시(해당) 연도 | 출처 | 자료기준일 |
|----|---------------|-----------|---------------------------------|---------------|
| | 건강보험 및 | 2015년 | 171-1-1-1 | 2014년 12월 31일 |
| | 국세DB연계 | 2016년 | 대학정보공시 5-다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자료 | 2015년 12월 31일 |
| 전체 | 취업률 | 2017년 | C 132 1/11 E E 11 B 0/11 1 1 22 | 2016년 12월 31일 |
| 겐세 | 건강보험가입 | 2015년 | | 2015년 6월 1일 |
| | 취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 2016년 | 대학정보공시 5-다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자료 | 2016년 6월 1일 |
| | | 2017년 | | 2016년 12월 31일 |

□ 산출식

< 졸업생 취업률 지표 점수 산출 방법 >

졸업생 취업률 지표 점수

- = ① 1 졸업생 취업률 점수 + ① 2 졸업생 취업률 개선 정도 점수
- + $(2_1_1 2015-2016년 유지취업률 점수 + <math>2_2 2015-2016년 유지취업률 개선 정도 점쉬 <math>\times \frac{2}{3}$
- + ②_1_2 2017년 유지취업률 점수 $\times \frac{1}{3}$
- ※ 각 정량 진단 요소별 점수와 기산점을 합한 점수는 각 정량 진단 요소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1 졸업생 취업률 점수

- < 졸업생 취업률 점수 산출 방법 >
- ▶ 졸업생 취업률 권역별 3년 평균 이상 대학: 2점
- ▶ 졸업생 취업률 권역별 3년 평균 미만 대학: 2점 × 해당 대학 3년 평균 권역별 3년 평균

< 연도별 졸업생 취업률 산출 방법 >

- ▶ 졸업생 취업률 = ∑(성별, 계열별 졸업생 취업률(t점수) × 성별, 계열별 취업대상자 비율)
- ▶ 성별, 계열별 취업대상자 비율 = 해당 성별 및 계열의 취업대상자(명) 해당 대학의 전체 취업대상자(명)
- ※ t점수의 최저점은 20점, 최고점은 80점으로 설정

① 2 졸업생 취업률 개선 정도 점수

- 졸업생 취업률 개선 정도(최근 3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 졸업생 취업률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기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권역별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권역별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 점수 × 0.01

② 1 유지취업률 점수

- < 유지취업률 점수 산출 방법 >
- ▶ 2015-2016년 유지취업률 점수
 - 유지취업률 권역별 2년 평균 이상 대학: 2점
- 유지취업률 권역별 2년 평균 미만 대학: 2점 × 해당 대학 2년 평균 권역별 2년 평균
- ▶ 2017년 유지취업률 점수
 - 유지취업률 권역별 평균 이상 대학: 2점
- 유지취업률 권역별 평균 미만 대학: 2점 × 해당 대학값 권역별 평균
- ※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조사기준 변경으로 인해, 2017년 유지취업률은 2015-2016년 과 분리하여 진단함

< 연도별 유지취업률 산출 방법 >

- ▶ 유지취업률 = ∑(성별, 계열별 유지취업률(t점수) × 성별, 계열별 취업자 비율)
- ▶ 성별, 계열별 유지취업률(%) = 해당 성별 및 계열의 2차 유지취업자(명) 해당 성별 및 계열의 취업자(명)
- ▶ 성별, 계열별 취업자 비율 = 해당 성별 및 계열의 취업자(명) 해당 대학의 전체 취업자(명)
- ※ t점수의 최저점은 20점, 최고점은 80점으로 설정

②_2 유지취업률 개선 정도 점수

- 유지취업률 개선 정도(2015-2016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유지취업률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가신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권역별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대학의 2015-2016년 유지취업률 점수 × 0.01
- ※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 조사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2차년(2016년) 대비 3차년(2017년) 증감분 산출이 불가함
- ※ 2015-2016년 유지취업률 점수와 가산점을 합한 점수는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작성 방법○ 작성 양식- 진단 요소 1: 졸업생 취업률

<표 5-2-1> 졸업생 취업률

%

(단위: 명,

사 전 전 를 하 ਲ 취업 대상자⁶ 立 ਲ ਧਾਂ ਲ あってを 罗応 취업 불가능자 교육수 ਲ 따 진학자 ठ 亡 w B B B B ਲ ਛ 은 은 찬 일 약 정 亞 도 罗 応 희교 취업자 프리랜서 ਲ 따 장(수)업 자 자 **を** 応 8 亡 사 *** *** **** ਲ ਧ % % * * 罗吐 # 전 작업수 건강보험 및 국세DB 연계 취업자 B 고 B 고 졸업^자
 보다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
 이 등</th 자연³ 사 유 사회

자 시기 2014. 12.31. 기준 건강보험 및 및 국세DB연

2015. 12.31. 기준 건강보험 및 및 국세DB연

| | 성의 선근 전의 전교 전의 설계 | ਲ ਹਾਂ ਲ | | | | | | | | | | |
|--|---|---------------|----|-------|--------|-----------------|------|----|-------|----|--------------|----|
| | 미상 취업 대상자 | ाट फ | | | | | | | | | | |
| | 中 | 式 を 式 | | | | | | | | | | |
| 건강 | 면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 ठ क्ट | | | | | | | | | | |
| | 수 의 야 다 현 의 왕 | ਲ ਧਾ | | | | | | | | | | |
| | 입 대 출가승자 자 | 西 | | | | | | | | | | |
| | 전 한 자 지 | 罗 虻 | | | | | | | | | | |
| | 를 শ 실 일 시 일 시 일 시 일 시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일 | ठ क | | | | | | | | | | |
| | 이 아 차 티 양 정 亞 도 도 | ठ क्ट | | | | | | | | | | |
| | - R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 B 亡 | | | | | | | | | | |
| | 표 프리램서 | र ट स | | | | | | | | | | |
| | 수 자 자 자 | ਲ ਘ ਲ | | | | | | | | | | |
| 취업자 | 자 양하자 사가 사가 사가 사가 가 나는 사가 가 나는 사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o m फ | | | | | | | | | | |
| | 가 아 아 아 수 아 수 | 立 立 ප | | | | | | | | | | |
| | 는 변합 | ம் க | | | | | | | | | | |
| | <u> </u> | 此 罗 | | | | | | | | | | |
| -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18 | | 하하 | 야[| 후 | 왕 | 자연 ³ | 소계 | 이놈 | 예체능 | 하하 | 함계 | |
| | 전 수 1 1 | | | 2016. | 12.31. | Ւ | 건강보험 | =ĸ | 국세DB연 | _ | 사 오피 배 | 11 |

월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자 대상 취업률, 2016.12.31.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률은 2015년 8월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자 대상 취업률임 계열 기준은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 학과 분류 기준(7대 계열)을 적용하며,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 의학 관련 학과(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등) 제외 교내취업자의 경우 취업대상자의 최대 3%까지만 인정하며 3% 초과 인원은 취업대상자와 취업자에서 제외 의학 관련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5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대상자: 조사기준일 당시 직장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니어서 취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재의료급여 수급자, 여자군인 중 임관 훈련생,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종교지도자 양성학과, 경찰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소방공무원 채용 후보자 중 훈련생)

幺

⁶ 취업대상자수: 졸업자 – (진학자 + 입대자 + 취업불가능자 + 외국인유학생 + 건강보험직장가입제외대상자) ※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자는 입학당시 취업자를 제외한 자료

〈표 5-2-2〉 2차 유지취업률

(단위: 명, %)

| 조사시기 ¹ | 계열 ² | |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자 | | 2차 유지취업자 | | 유지취업률 |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 공학 | | | ////// | | | | |
| | 교육 | | | | | | | |
| 2015.6.1. | 사회 | | | | | | | |
| 기준 | 의약 ³ | | | | | | | |
| 건강보험 가입 | 자연 ³ | | | | | | | |
| 취업자의 | 소계 | | | | | | | |
| 2차 | 인문 | | | | | | | |
| 유지취업률 | 예체능 | | | | | | | |
| | 의학 | | | | | | | |
| | 계 | | | | | | | |
| | 공학 | | | | | | | |
| | 교육 | | | | | | | |
| 2016.6.1. | 사회 | | | | | | | |
| 기준 | 의약 ³ | | | | | | | |
| 건강보험 가입 | 자연 ³ | | | | | | | |
| 취업자의 | 소계 | | | | | | | |
| 2차 | 인문 | | | | | | | |
| 유지취업률 | 예체능 | | | | | | | |
| | 의학 | | | | | | | |
| | 계 | | | | | | | |
| | 공학 | | | | | | | |
| | 교육 | | | | | | | |
| 2016.12.31. | 사회 | | | | | | | |
| 기준 | 의약 ³ | | | | | | | |
| 건강보험 가입 | 자연 ³ | | | | | | | |
| 취업자의 | 소계 | | | | | | | |
| 2차 | 인문 | | | | | | | |
| 유지취업률 | 예체능 | | | | | | | |
| | 의학 | | | | | | | |
| | 계 | | | /////// | | | | |

 ^{2015.6.1.} 기준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은 2014년 8월 졸업자 및 2015년 2월 졸업자의 2015.6.1. 기준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중 3개월 및 6개월 후 취업유지자 비율이며, 2016.6.1. 기준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은 2015년 8월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자의 2016.6.1. 기준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중 3개월 및 6개월 후 취업유지자 비율이며, 2016.12.31. 기준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은 2015년 8월 졸업자 및 2016년 2월 졸업자의 2016.12.31. 기준 건강보험 가입 취업자 중 3개월 및 6개월 후 취업유지자 비율임

ㅇ 작성 지침

(1) 〈표 5-2-1〉, 〈표 5-2-2〉는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진 단주관기관에서 작성함

² 계열 기준은 2017년 한국교육개발원 학과 분류 기준(7대 계열)을 적용하며 인문계열 및 예체능계열, 의학 관련 학과(의학, 치의학, 한의학, 수의학 등) 제외

³ 의학 관련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 건강보험 및 국세DB연계 취업자는 입학당시 취업자를 제외한 자료

항목: 5. 교육 성과

지표: 5.3.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배점: 2

□ 진단 방향

○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노력을 진단

□ 진단 요소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체계 운영 (정성)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정성)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화류 실적 (정성)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대학이 제공하는 정규 학위과정과 관련된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교육과정, 교수학습 등)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확인·점검하기 위해 대학 본부 및 단과대학 차원에서 진행하는 조사, 분석 활동

- 추진 주체: 대학 본부 및 단과대학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한함(부속·부설기관과 학과에서 실시한 조사는 제외하되, 대학 본부의 지원과 관리에 의해 정기적·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부속·부설기관 실시 조사는 포함 가능함)
- 조사 대상: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반드시 포함하되, 산업체, 졸업생 등 교육 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기술할 수 있음
- 조사 기간: 2015-2017학년도 내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 한함
- 조사 내용: 교육과정, 교수학습의 질, 교육 시설 등 교육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등(특정 교육·훈 련 프로그램 참가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강의 평가를 통한 만족도 조사는 제외함)
-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학생, 산업체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과정·교수학습의 질·교육시설 및 교육 서비스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조사 방법(표본 크기, 표집 방법 등)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높음을 의미함

※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수준(수치)의 높고 낮음은 진단 취지와 무관한 것으로 진단 대상에서 제외함

□ 진단의 주안점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체계 운영: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체계 운영의 주기성과 체계성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조사 대상 및 내용의 다양성, 조사 방법의 타당성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실적: 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 체계
 의 적절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의 구체성

□ 진단 자료

| 구분 | 자료 | 해당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관련 자료 | 2015년 | | 001514 001 101 | |
| 전체 |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 | 2017년 | | 2010년 2월 20월 | |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Α | В | С | D | Е |
|----|----|------|------|------|------|
| 점수 | 2점 | 1.6점 | 1.2점 | 0.8점 | 0.4점 |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체계 운영

[기술 5-3-1]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체계 운영

-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체계의 운영
 - 대학 전체 및 단과대학 차원에서 주기적·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리 체계의 운영 내용

[증빙자료]

-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2)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체계 운영 현황 관련 증빙자료

- 진단 요소 2: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표 5-3-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현황

| 학년도 | 조사 기간 (~부터~까지) | 대상 | 조사 방법 ¹ | 조사 내용 또는 조사 영역 | 주요 결과2 | 결과 처리 및 후속 조치 ² |
|------|-------------------|----|--------------------|-------------------|--------|-------------------------------|
| 2015 | | | | | | |
| 2016 | | | | | | |
| 2017 | | | | | | |

¹ 조사 방법에는 표본 크기, 표집 방법 등에 대해 기술

 $^{^{2}}$ 주요 결과와 결과 처리 및 후속 조치는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술

[증빙자료]

(1) <표 5-3-1>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진단 요소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실적

[기술 5-3-2]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환류 실적

|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활용 체계 |
|---|
| □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 개선 노력 및 효과 |
| [중빙자료] |
|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보고서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2)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유·무형의 교육 서비스 개선 관련 증빙자료 |
| |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5-3-1] | | |
| [기술 5-3-2] | | |
| | | |
| <班 5-3-1> | | |

ㅇ 작성 지침

- (1) [기술 5-3-1], [기술 5-3-2]의 기술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각 A4 2쪽 이내로 기술 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 (2) 〈표 5-3-1〉에서 '주요 결과'와 '결과 처리 및 후속 조치'는 간략하 게 요약하여 기술하고, 자세한 내용은 [기술 5-3-2]에서 기술함

2단계 진단

항목: 6.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표: 6.1. 교양 교육과정(핵심역량 제고)

배점: 5

□ 진단 방향

○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이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진단

* 핵심역량

각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역량(예: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동능력, 문제해결력,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능력 등)

** 교양 교육과정

각 대학의 「OO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편성·운영된 교양 교과목으로, 학점당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강의 중 전공과 교직 강의를 제외한 일체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교육 과정 외에 비정기적으로 개설되는 특강, 세미나 등 제외)

□ 진단 요소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구체적 설정 (정성)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정성)

□ 진단의 주안점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구체적 설정: 핵심역
 량 설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도출된 핵심역량 내용의 적절성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개설 및 운영 실적의 우수성

□ 진단 자료

| 구분 | 자료 | 해당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 그사 그 0 기 기 0 0 0 | 2015년 | | 201514 201 101 |
| 전체 | 교양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자료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인인 자료 | 2017년 | | 2010년 2월 20월 |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Α | В | С | D | Е |
|----|----|----|----|----|----|
| 점수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작성 방법

ㅇ 작성 양식

[기술 6-1-1] 핵심역량의 설정과 핵심역량과 연계된 교양 교과목 개설

| Г | \neg | 핵심역량 | 서저으 | 이하 | 그制저 | 저 flol | нғы |
|---|--------|------|-----|----|-----|--------|-----|
| | | 액심역당 | 일잉글 | 귀안 | 구세식 | 실사와 | 땅밥 |

- 대학의 인재상, 산업 수요, 사회적 흐름 등 대내·외적 여건 분석, 학생 요구 분석 등의 내용
- 위 분석 결과를 반영한 핵심역량 설정의 절차와 방법
- 위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도출된 핵심역량의 내용
-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의 절차와 방법
 -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의 절차와 방법(관련 조직 포함)

[증빙자료]

- (1) 최근 3년간(2015-2017학년도) 1, 2학기 교양 교육과정 개설표 또는 편람
- (2)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표 6-1-1〉핵심역량과 교양 교과목 간 연계성 및 운영 실적

| 핵심역량 | 관련 교양 교과목명 ¹ | 핵심역량과 교양 교과목 간 | ^무 간 학점 | | 운영 강좌 수 ³ | | |
|------|-------------------------|------------------|-------------------|------|----------------------|------|--|
| 엑심적당 | 선인 파양 파파극경 | 연계성 ² | 작업 | 2015 | 2016 | 2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¹ 한 교과목에 2개 이상의 핵심역량이 연계된 경우에는 주된 핵심역량을 기재함

[증빙자료]

- (1) 2015-2017학년도 1. 2학기 교양 교육과정 개설표 또는 편람
- (2)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6-1-1] | | |
| <班 6-1-1> | | |

² 해당 교양 교과목이 학생들의 핵심역량 제고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기술함

³ 폐강된 강좌, 계절학기 개설 강좌는 제외함

ㅇ 작성 지침

(1) [기술 6-1-1]의 기술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A4 6쪽 이내로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항목: 6.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표: 6.2. 전공 교육과정(전공능력 배양)

배점: 6

□ 진단 방향

○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 분야별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진단

* 전공능력

각 단과대학 또는 계열, 학과의 관련 분야에서 요구하는 직무, 과업,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 종합적 능력

** 전공 교육과정

각 대학의 「00대학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편성·운영된 전공 교과목으로, 학점당 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운영되고 학점이 부여되는 강의 중 전공 과정으로 분류되는 일체의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

□ 진단 요소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공능력의 구체적 설정 (정성)
-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정성)

□ 진단의 주안점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공능력의 구체적 설정: 전공능력 설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의 타당성, 설정된 전공능력 내용의 적절성
-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전공 교육과정 체계의 우수성, 전공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

□ 진단 자료

| 구분 | 자료 | 해당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 | 2015년 | | |
| 전체 | 전공 교육과정 운영 관련 자료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22.7 | 2017년 | , | 2010 년 2 월 20 년 |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А | В | С | D | E |
|----|----|------|------|------|------|
| 점수 | 6점 | 4.8점 | 3.6점 | 2.4점 | 1.2점 |

□ 작성 방법

ㅇ 작성 양식

[기술 6-2-1] 전공능력의 설정과 전공능력과 연계된 전공 교과목 개설

- ※ 대학 전체 차원에서 대표적이고 우수한 2-3개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전공 분야를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함
 □ 전공능력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 대학의 인재상, 지역사회, 지역산업, 국가산업 등 대내·외적 여건 분석, 학문 변화 분석, 학생 요구 분석 등의 내용
 - 위 분석 결과를 반영한 전공능력 설정의 절차와 방법
 - 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도출된 전공능력의 내용
- □ 전공 분야(또는 단과대학)별 능력과 연계된 전공 교과목 개설 및 운영의 절차와 방법
 -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체계
 - 전공능력과 연계된 전공 교과목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절차와 방법(관련 조직 포함)

[중빙자료]

- (1) 제시된 사례의 2015-2017학년도 1, 2학기 전공 교육과정 개설표 또는 편람
- (2)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6-2-1] | | |
| | | |

ㅇ 작성 지침

(1) [기술 6-2-1]의 기술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A4 10쪽 이내로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항목: 7. 지역사회 협력·기여 지표: 7.1. 지역사회 협력·기여

배점: 5

□ 진단 방향

○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노력과 성과를 진단

* 지역사회

각 대학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1개(최대 2개) (선택한 지역 범위를 넘어서는 실적 또는 사례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함)

| 협력·기여 유형 | 주요 내용(예시) |
|----------|---------------------------------------|
| | ▶ 지역기업 지원 실적(공동연구, 기술지도 등) |
| 지역산업 연계 | ▶ 지역산업 발전 지원(공업, 농/축/어업, 관광업, 출판업 등) |
| | ▶ 창업 활성화 지원(재학생 대상 제외) 등 |
| | ▶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지원 |
| 지역사회 봉사 | ▶ 지역 학생(초·중·고) 지원 |
| 시작사회 중사 | ▶ 노인·장애인·청소년 복지 등 |
| | ▶ 주민 시설 개방 및 지역 문화 선도 활동 |
| | ▶ 문해 교육 등 성인 기초 교육 |
| 평생교육 제공 | ▶ 만학도, 교양 목적 등 성인학습자 교육 |
| | ▶ 직업 교육, 이직 교육 등 직장인 재교육 수요 발굴 및 제공 등 |
| 지자체 협력 | ▶ 지역종합발전 계획 하에서 대학의 역할 및 기능 부여 |
| 시사세 합국 | ▶ 지자체 사업 지원, 전문 인력 제공 등 |
| 기타 | ▶ 상기 유형에 포괄되지 않는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 |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은 대학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 한 정례적·지속적 활동을 의미함(단, 개인 차원 활동 및 일회성 활동은 포함하지 않음)

□ 진단 요소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수요 분석 (정성)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대학의 지원 및 실적 (정성)
- 환류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의 개선·보완 (정성)

□ 진단의 주안점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수요 분석: 지역사회 수요 분석의 체계성, 분석 결과 반영의 체계성, 지역사회 수요 분석과 대학의 협력·기여 활동 간의 연계성 및 적합성, 대학의 협력·기여 활동의 희소성 등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대학의 지원 및 실적: 지역사회 협력·기

- 여 활동 관련 근거의 체계성, 지원체제의 구축 및 운영, 지원 인력의 전문 성,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 실적의 우수성
- 환류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의 개선·보완: 환류의 주기성과 체계성,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 개선·보완 실적의 우수성

□ 진단 자료

| 구분 | 자료 | 해당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 지역사회 | 2015년 | | 001513 001 101 |
| 전체 | 협력·기여 활동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관련 자료 | 2017년 | | |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А | В | С | D | E |
|----|----|----|----|----|----|
| 점수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지역사회 협력 기여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수요 분석

[기술 7-1-1]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수요 분석

-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수요 분석
 - 지역사회 수요 분석 시행 여부
 - 지역사회 수요 분석 절차 및 내용
 - 지역사회 수요 분석 결과의 특징

[증빙자료]

- (1)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 관련 사전 조사 및 분석 관련 자료
- (2)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 수립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진단 요소 2: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대학의 지원 및 실적

〈표 7-1-1〉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 실적

| 협력· 기여 유형 ¹ | 학년 도 | 활동명 | 활동 지역 ² | 활동 내용 | 활동 대상(수) ³ |
|------------------------------|---------|-----|-----------------------|-------|--------------------------|
| | 2015 | | | | |
| | 2016 | | | | |
| | 2017 | | | | |
| | 2015 | | | | |
| | 2016 | | | | |
| | 2017 | | | | |

¹ 진단 방향에 제시된 협력 기여 유형을 참고하여 기재함

[증빙자료]

(1) 상기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기타 근거자료

[기술 7-1-2]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대학의 지원 및 실적

-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대학의 지원 및 실적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원과 관련된 근거(기본계획, 운영 규정 및 지침, 양해각서 등) 또는 지원 조직 확보 내용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의 성공 또는 우수 사례

[증빙자료]

- (1)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원과 관련된 규정 또는 지침, 조직 구성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2)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 결과 보고 관련 자료(예: 성공 또는 우수 사례집 등)

² 대학이 선택한 지역명(예: 충북, 대전광역시)을 기재함

³ 대학의 활동 대상(수)은 활동 대상을 기재하고, 기능할 경우 개수도 기재함

- 진단 요소 3: 환류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의 개선·보완

[기술 7-1-3] 환류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의 개선·보완

- □ 환류를 통한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의 개선·보완
 - 환류의 내용과 절차(예: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 활동 개선 설문조사, 성과 분석 등)
 - 환류를 통한 활동 개선 실적

[중빙자료]

- (1)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의 개선·보완(예: 평가회, 만족도 조사, 성과 분석 실시 등)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2)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 개선 과정 및 개선 실적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중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7-1-1] | | |
| [기술 7-1-2] | | |
| [기술 7-1-3] | | |
| <班 7-1-1> | | |

ㅇ 작성 지침

- (1) 대학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 또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1곳(최대 2개)을 선택하고, 선택한 지역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 협력·기여 실적만 기재함 (선택한 지역 범위를 넘어서는 실적 또는 사례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됨)
- (2) 대학이 자율적으로 협력·기여 유형을 선택하여 관련 내용을 기술함. 이 때 협력·기여 유형의 선택 개수에는 제한 없음
- (3) [기술 7-1-1], [기술 7-1-3]의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각각 A4 2쪽 이내로 기술하되, 증빙 가능한 것이어야 함
- (4) [기술 7-1-2]의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A4 5 쪽 이내로 기술하되, 증빙 가능한 것이어야 함
- (5) 캠퍼스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캠퍼스별로 작성 가능함. 단, 이때 [기술 7-1-1]-[기술 7-1-3]의 작성 분량은 캠퍼스수와 상관없이 (3)과 (4)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함

항목: 8. 대학 운영의 건전성 지표: 8.1. 구성원 참여·소통

배점: 5

□ 진단 방향

○ 대학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내부 구성원의 참여·소통을 통해 자율적 운영체로서 기능하여, 주체적 반성, 환류, 능동적 운영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추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진단

□ 진단 요소

- 구성원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규정, 지침 등) 마련 (정성)
- 주요 의사 결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준수 (정성)
- 주요 의사 결정에 학생의 참여가 구현된 실적 및 노력 (정성)
- 구성원 간의 합의·소통을 통한 의사 결정 및 개선 사례 (정성)

□ 진단의 주안점

- 구성원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규정, 지침 등) 마련: 구성원 의견 제시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체계성
- 주요 의사 결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준수: 참여 주체의 대표성,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협의·논의 절차 마련 여부 및 활용, 합의 과정의 투명성
- 주요 의사 결정에 학생의 참여가 구현된 실적 및 노력: 주요 의사 결정 및 계획 수립 과정에서 학생 참여 절차의 체계성, 절차 및 내용의 우수성
- 구성원 간의 합의·소통을 통한 의사 결정 및 개선 사례: 구성원 간 합의·소통을 통한 의사 결정 및 개선 사례의 우수성

□ 진단 자료

| 구분 | 자료 | 해당 연도 | 출처 | 자료 기준일 |
|----|-------|-------|-----------|-----------------------------|
| | 구성원 | 2015년 | | 2015년 3월 1일 ~ |
| 전체 | 참여·소통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8년 3월 1일 2018년 2월 28일 |
| | 관련 자료 | 2017년 | | 2010년 2월 20년 |

□ 점수 산정: 진단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Α | В | С | D | E |
|----|----|----|----|----|----|
| 점수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구성원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규정, 지침 등) 마련

[기술 8-1-1] 구성원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규정, 지침 등) 마련

- □ 구성원의 의견 제시 관련 규정 또는 지침 마련 여부 및 활용
 - 구성원 의견 제시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마련 여부
 - 구성원 의견 제시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과 특징

[중빙자료]

(1) 구성원의 의견 제시 관련 규정과 지침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진단 요소 2: 주요 의사 결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준수

[기술 8-1-2] 주요 의사 결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준수

- □ 주요 의사 결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준수 노력
 - 참여 주체의 대표성 확보 관련 규정, 절차 및 운영 내용
 -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관련 규정, 절차 및 운영 내용
 - 의사 결정 시 대학 구성원 간 협의·논의 프로세스의 수립 여부
 - 의사 결정 시 대학 구성원 간 협의·논의 프로세스의 절차 및 내용

[중빙자료]

- (1) 참여 주체의 경력 등이 포함된 교내 인사 기록 서류(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자료 제출)
- (2) 참여 주체 간 합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 체계 관련 공문, 조직도, 기타 근거자료
- (3)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 협의·논의 프로세스 수립 관련 규정 및 지침
- (4)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 협의·논의 프로세스 관련 공문, 기타 근거자료
- (5) 의사 결정 과정 시 구성원 간 협의·논의 프로세스 운영 현황 관련 증빙자료

- 진단 요소 3: 주요 의사 결정에 학생의 참여가 구현된 실적 및 노력

[기술 8-1-3] 주요 의사 결정에 학생의 참여가 구현된 실적 및 노력

- □ 학생들을 주요 의사 결정 및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
 - 대학의 주요 의사 결정 및 계획 수립 시 학생 참여 여부
 - 대학의 주요 의사 결정 및 계획 수립 시 학생 참여 절차 및 내용

[중빙자료]

(1) 대학의 주요 의사 결정, 계획 수립 시 학생 참여와 관련된 공문, 기타 근거자료

- 진단 요소 4: 구성원 간의 합의 소통을 통한 의사 결정 및 개선 사례

[기술 8-1-4] 구성원 간의 합의·소통을 통한 의사 결정 및 개선 사례

| 구성워 | 가의 | 합의·소통을 | 통한 의사 | 결정 | 민 | 개선 | 사려 |
|---------|----|--------|-------|----|---------------|---------|----|
| 100 | | | 0 | | $\overline{}$ | 7 II L. | |

- 구성원 간의 합의·소통을 통한 대학의 의사 결정 실행 사례
- 구성원 간의 합의·소통을 통한 대학의 운영 개선 사례

[증빙자료]

- (1) 구성원 간 합의·소통을 통한 대학 의사 결정 실행 사례와 관련된 공문, 기타 근거자료
- (2) 구성원 간 합의·소통을 통한 대학 운영 개선 사례와 관련된 공문, 기타 근거자료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8-1-1] | | |
| [기술 8-1-2] | | |
| [기술 8-1-3] | | |
| [기술 8-1-4] | | |

ㅇ 작성 지침

(1) [기술 8-1-1]-[기술 8-1-4]의 기술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 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각각 A4 2쪽 이내로 기술 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항목: 8. 대학 운영의 건전성 지표: 8.2. 재정·회계의 안정성

배점: 4

□ 진단 방향

○ 대학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진단

□ 진단 요소

- 재원의 적정성 (1점, 정량)
 - * 재원의 적정성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 재정의 건전성 (2점, 정량)
 - * 재정의 건전성 개선 정도 (가산점, 정량)
-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 (1점, 정성)

□ 진단 자료

ㅇ 모든 진단 요소는 사립대만 진단

| 구분 | 자료 | 공시(해당) 연도 | 출처 | 자료기준일 |
|-----|------------|-----------|--------------|-------------------------------|
| | -1) () () | 2016년 | 대학정보공시 8-바-2 | 2015년 회계연도 결산 |
| | 재원의 적정성 | 2017년 |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 2016년 회계연도 결산 |
| | 700 | 2018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회계연도 결산 |
| | 재정의 건전성 | 2016년 | 대학정보공시 8-바-2 | 2015년 회계연도 결산 |
| 사립대 | | 2017년 |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 2016년 회계연도 결산 |
| | (선생) | 2018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7년 회계연도 결산 |
| | 재정·회계 | 2015년 | | 001514 001 101 |
| | 관리체계 | 2016년 | 대학별 제출 자료 | 2015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 |
| | 운영 | 2017년 | | 2010년 2월 20월 |

□ 산출식

< 재정・회계의 안정성 지표 점수 산출 방법 >

재정・회계의 안정성 지표 점수

- = ① 1 재원의 적정성 점수 + ① 2 재원의 적정성 개선 정도 점수
- + ② 1 재정의 건전성 점수 + ② 2 재정의 건전성 개선 정도 점수
- + ③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 점수
- ※ 각 정량 진단 요소별 점수와 가산점을 합한 점수는 각 정량 진단 요소의 배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1 재원의 적정성* 점수

* 재원의 적정성

각 대학 교비회계 수입재원의 등록금 의존율이 전체 사립대학의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이며, 대학의 수입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정량적으로 진단

- < 재원의 적정성 점수 산출 방법 >
- ▶ 재원의 적정성 점수
 - 등록금 의존율 사립대 3년 평균 이하 대학: 1점
 - 등록금 의존율 사립대 3년 평균 초과 대학: 1점 × 사립대 3년 평균 해당 대학 3년 평균
- < 연도별 등록금 의존율 산출 방법 >

등록금 의존율(%) = 등록금수입총액(천원) 수입총액(천원)

① 2 재원의 적정성 개선 정도 점수

- 재원의 적정성 개선 정도(최근 3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 재원의 적정성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강분 ≥ 시립대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강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시립대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재원의 적정성 점수 × 0.01

② 재정의 건전성* 점수

* 재정의 건전성

교육비 투자 수준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재정 조달 능력(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¹)을 갖추고 있는지와 적정수준 이상의 교육비 투자(재학생 1인당 교육비)에 대하여 진단

¹ 교육투자기여수입: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 수강료 수익, 기부금 유치, 국고 보조금 수주, 안정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 등 수익. 산학협력을 통한 재정수입 등 각 대학의 여건 및 특성을 활용한 교육투자를 위한 수입 확보 금액

- 진단 하위요소
 - a)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1점, 정량)
 - b) 재학생 1인당 교육비 (1점, 정량)

- 점수 산출 방법
 - a)_1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1점, 정량)
- <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점수 산출 방법 >
- ▶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사립대 3년 평균 이상 대학 1점
- ▶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시립대 3년 평균 미만 대학

: 1점 × 해당대학 3년 평균 사립대 3년 평균

< 연도별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산출 방법 >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천원) = $\frac{ 교육투자기여수입(천원)^*}{ 학생정원(명)^{**}}$

- *교육투자기여수입: 평생교육원 및 국제교육원 수강료 수익, 기부금 유치, 국고 보조금 수주, 안 정적 자금운용을 통한 이자 등 수익, 산학협력을 통한 재정수입 등 각 대학의 여건 및 특성을 활용한 교육투자를 위한 수입 확보 금액
- **학생정원: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학부 및 대학원 학생정원 수의 합
 - a) 2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개선 정도
 -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의 개선 정도(최근 3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시립대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시립대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점수 × 0.01
 - b) 1 재학생 1인당 교육비 (1점, 정량)
- <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점수 산출식 >
- ▶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시립대 3년 평균 이상 대학: 1점
- ▶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사립대 3년 평균 미만 대학

: 1점 × 해당대학 3년 평균 사립대 3년 평균 < 연도별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방법 >

재학생 1인당 교육비(천원) = <u>총교육비(천원)</u> 재학생(명)

- b) 2 재학생 1인당 교육비 개선 정도 점수
 - 재학생 1인당 교육비의 개선 정도(최근 3년)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 < 재학생 1인당 교육비 개선 정도 점수 산출 방법 >
- ▶ 해당 대학의 연도별 증감분이 아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해당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 시립대 전체 대학의 1차년 대비 2차년 증감분 평균
 - 해당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 시립대 전체 대학의 2차년 대비 3차년 증감분 평균
 - ※ 가산점 = 해당 대학의 재학생 1인당 교육비 점수 × 0.01

③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 점수

- 진단 하위요소
 - a) 재정·회계 관리를 위한 규정·지침 수립
 - b) 재정·회계 관련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노력
 - c) 재정·회계 관련 내·외부 관리·통제 체계 마련 여부 및 운영 내용
- 진단의 주안점
 - i) 재정·회계 관리를 위한 규정·지침 수립: 예산 편성, 계약, 경비 집행, 보수규정, 결산, 재산 관리 등 재정회계 영역별 규정·지침 제정 여부
 - ii) 재정·회계 관련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노력: 관련 조직의 구성, 학교 법인·교비회계·산학협력단 등 회계 단위별 및 예산·결산·기본재산 등 기 능별 전담인력 확보 정도 및 업무분장, 재정·회계 관리 인력의 전문성
 - iii) 재정·회계 관련 내·외부 관리·통제 체계 마련 여부 및 운영 내용: 내부 감사 및 예·결산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 내용, 외부 회계 감사 운영 내용, 감사 선임 절차 및 역할의 적절성

- 점수 산정: 진단 하위요소를 종합적으로 평정

| 기준 | A | В | С | D | E |
|----|----|------|------|------|------|
| 점수 | 1점 | 0.8점 | 0.6점 | 0.4점 | 0.2점 |

□ 작성 방법

- ㅇ 작성 양식
 - 진단 요소 1: 재원의 적정성

〈표 8-2-1〉 등록금 의존율

(단위: 천원¹, %, %p)

| 회계 |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_전 | | | | 교육 교육외 | | 등록금 의존율 | 전년대비 등록금 의존율 | |
|------|------------------------------|--------------|---------|-------------|-----------|------------------------|------------------|--------------------|--|
| 연도 | 등록금 수입(A) ² | 수강료 수입(B) | 기부수입(C) | 부대수입 (D) | 수입 (E) | (F) F=A+B+C+D+ E | (G) G=A/F×100 | 증감분 | |
| 2015 | | | | | | | G1/// | | |
| 2016 | | | | | | | G2/// | G2-G1 | |
| 2017 | | | | | | | ///G3/// | G3-G2 | |
| | 3년 평균 등록금 의존율 | | | | | | (G1+G | 2+G3)/3 | |

¹ 원 단위의 모든 계산 과정 완료 후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입력함

[증빙자료]

-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교비회계)
 - 진단 요소 2: 재정의 건전성

〈표 8-2-2〉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단위: 천원¹, %)

| | 교비회계 ² | | | | 산학협력단회계 ³ 학생 정원 | | 학생정원 1인당 | 전년대비 학생정원 |
|----------|-------------------------|---------------------|-------------------|------------------|-------------------------------|--------------------------------|------------------------------------|-------------------------|
| 회계 연도 | 수강료 수입 (A) | 전입 및 기부수입 (B) | 교육부대 수입 (C) | 교육외 수입 (D) | 운영활동 현금유입 (E) | 이 등 년 (학부 및 대학원)⁴ (F) | 교육투자기여수입 (G) G=(A+B+C+D+E)/F | 1인당 교육투자기여 수입 증감분 |
| 2015 | | | | | | | G1 | |
| 2016 | | | | | | | G2 | (G2-G1)/G1 |
| 2017 | | | | | | | G3 | (G3-G2)/G2 |
| | 3년 평균 학생정원 1인당 교육투자기여수입 | | | | | | (G1+G2+ | G3)/3 |

¹ 원 단위의 모든 계산 과정 완료 후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입력함

² 등록금 수입(학부 및 대학원): 수강료 수입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

²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의 수강료수입, 전입 및 기부수입, 교육부대수입, 교육 외 수입

- ³ 산학협력단회계 현금흐름표의 운영활동현금유입(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간접비수익, 전입 및기부금수익, 운영외수익)을 기재함
- 4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학부 및 대학원 학생정원 수의 합

[증빙자료]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표 8-2-3〉 재학생 1인당 교육비

(단위: 천원¹, %)

| 회계연도 | 총 교육비 ² (A) | 재학생 (학부 및 대학원) ³ (B) | 재학생 1인당 교육비 (C) C=A/B | 전년대비 재학생1인당 교육비 증감분 |
|-------------------|---------------------------|---------------------------------------|-----------------------------|------------------------|
| 2015 | | | CN /// | |
| 2016 | | | <u>©2</u> | (C2-C1)/C1 |
| 2017 | | | <u>C3</u> | (C3-C2)/C2 |
| 3년 평균 재학생 1인당 교육비 | | | (C1+C2 | 2+C3)/3 |

- 1 원 단위의 모든 계산 과정 완료 후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천원 단위로 입력함
- ² 총 교육비: 교비회계 교육비(자금계산서의 보수 + 관리운영비 + 연구학생경비 입시관리비), 산학협력 단회계 교육비(현금흐름표의 산학협력비, 지원금사업비, 일반관리비, 간접비사업비), 도서구입비, 기계기 구매입비(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의 최근 5년 평균), 건축비(최근 5년간 교비회계 자금계산서의 건설 가계정 및 건물매입비의 5년 자료 평균값의 2.5%)의 합
- 3 해당연도 4월 1일 기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수의 합

[증빙자료]

- (1) 2017년 회계연도 결산서(교비회계, 산학협력단회계)
 - 진단 요소 3: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

〈표 8-2-4〉 재정·회계 관련 행정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 구 분 | 관련 부서 | 업무분장별 담당 인력 |
|-----------------------|-------|-------------|
| 학교법인 회계 (일반, 수익사업) | | |
| 교비회계 | | |
| 산학협력단 회계 | | |
| 학교기업 회계 | | |
| 부속병원 회계 | | |

※ 행정조직, 부서, 담당인력 등은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

[기술 8-2-1]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

- □ 재정·회계 관리를 위한 규정·지침 마련
 - 예산 편성, 계약¹, 경비집행, 보수규정, 결산, 재산 관리² 등 재정·회계 영역별 규정·지침 제정 여부
 - 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법령 및 대학 내 자체 규정을 준수한 계약 업무
 - 2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대장*에 의한 관리, 정기 재물조사 등
 - *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별지 제4호의8서식(유형고정자산명세서) 참조
- □ 재정·회계 관련 전담인력의 확보 및 운영
 - 관련 지원조직의 구성(개요)
 - 학교법인·교비회계·산학협력단 등 회계 단위별 전담인력 확보 정도 및 업무 분장
 - ※ 대학의 각 회계단위별 재정 규모, 역할 수행 범위 등에 따라 각 대학의 여건에 맞추어 작성함
 - 예산·결산·기본재산별 전담인력 확보 정도 및 업무분장
 - 재정·회계 관리 인력의 전문성 (예: 관련 경력 및 학위 소지 여부,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교육훈련 참여 등)
- □ 재정·회계 관련 내·외부 관리·통제 체계 마련
 - ※ 동 사항은 회계 단위별로 구분하여 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규모, 요건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제시 가능
 - 내부 감사 및 예·결산 모니터링 제도의 운영 내용
 - ※ 계획 수립 → 집행 → 운영 결과 진단 → 환류·개선 내용을 기술
 - 외부 회계 감사 운영 내용
 - % 계획 수립 \rightarrow 집행 \rightarrow 운영 결과 진단 \rightarrow 환류·개선 내용을 기술
 - 감사 선임 절차 및 역할, 전문성 등

[증빙자료]

- (1) 재정·회계 업무 관리(또는 전담)조직의 구성 관련 공문, 조직도, 기타 근거자료
- (2) 재정·회계 담당 인력의 자격증, 경력 및 학위가 포함된 교내 인사 기록 서류(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자료 제출)
- (3) 재정·회계 영역별 규정 또는 지침
- (4) 재정·회계 관련 내·외부 관리·통제 체계의 운영 관련 보고서, 공문, 기타 근거자료
- (5)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 (6) 감사 선임 관련 이사회 회의록, 감사의 주요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료(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자료 제출), 기타 감사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

[증빙자료 목록]

| 구분 | 증빙자료 번호 | 자료명 |
|------------|---------|-----|
| [기술 8-2-1] | | |
| <班 8-2-4> | | |

ㅇ 작성 지침

- (1) 〈표 8-2-1〉-〈표 8-2-3〉의 2015-2016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대학정보 공시자료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진단주관기관에서 작성하며, 201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는 대학정보공시 및 한국사학진흥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와 일치되도록 대학이 작성하며, 해당 결산자료 에 대한 증빙을 함께 제출함.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 2015-2017년 결산자료를 대학이 모두 작성함
- (2) [기술 8-2-1]의 기술 내용은 2015-2017학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고, 제시된 세부 항목을 중심으로 A4 4쪽 이내로 기술하되, 도표 및 그림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함

Ⅲ. 주요 일정 및 진단 자료 작성·제출 방법

1.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주요 일정

□ 추진 일정

- 2018년 진단 위원 공모: '17.12.18 ~ '18.1.12 (1차)※ 대학평가본부 홈페이지(공모 시스템) 신청, 1차 조사 적격자에 한해 추후 2차 조사 예정
- 진단대상 대학 확정 및 세부 일정 안내: '18. 1월 중 ※ 자체진단보고서 편집양식 파일(한글) 제공: 대학평가본부 홈페이지 등
- 대학 실무자 대상 진단자료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 '18. 1월 중 ※ 자체진단보고서 및 정량 자료 작성·제출 세부 사항, 전산실습 등
- 1단계 자체진단보고서(정성 진단용) 제출: '18.3.27(수)
- 실태조사 자료 제출(〈부록〉 참조): '18.3.27(수)※ 증빙자료가 주석으로 처리된 PDF 파일 별도 제출
- 정량 자료 제출·확인·수정: '18. 3~5월
 - (1차 제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 온라인 입력: '18. 3~4월
 - ※ 과년도 자료(일부): '18. 3월
 - ※ 학생 및 교원 현황 관련 최근년도 자료: '18. 4월
 - ※ 1차 제출 정량 자료 확인 및 수정 요청: '18. 3~4월
 - **(2차 제출)**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시스템 온라인 입력: '18. 5월
 - ※ 2017년 대학별 회계 결산자료에 한함
 - (진단 자료 확정) 정량 자료 확인 및 동의서 제출: '18. 5월
- 1단계 진단 및 대학관계자 면담: '18. 4~5월 중
- 1단계 진단 가집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8. 6월 중
- 1단계 진단 결과 확정: '18. 6월 중
- 2단계 진단 설명회: '18. 6월 말
- 2단계 자체진단보고서 제출: '18. 7월 중
- 2단계 진단 및 대상 대학별 현장방문: '18. 7~8월 중
- 2단계 가집계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8. 8월 중
- 2단계 진단 결과 확정: '18. 8월 말
- ☞ 상기 일정은 진단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표별 진단 자료 제출 일정표

- 8개 항목 20개 지표, 총점 100점
 - 정성 자료 제출 시기: 3월 27일(1단계), 7월 중(2단계)
 - 정량 자료 제출 시기: 3월 중(과년도 자료 일부), 4월 중(학생 및 교원 현황 관 련 최근연도 자료), 5월 중('17년 결산 관련 자료 추가 제출)

| | | | | | 자료 제출 시기 | | | | |
|--------|---|---|---|--|----------|-----|----|----|----|
| | | | | | 정성 | | 정량 | | ŧ |
| 구분 | 항목 | · 진단 지표 | 진단 요소 | 양식 번호 | 1단계 | 2단계 | 1 | 차 | 2차 |
| | | | | | 3.27 | 7월 | 3월 | 4월 | 5월 |
| | 발전 계획 및 성과 (2) |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2) | -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 - 발전 계획의 추진 실 적 및 성과 - 발전 계획의 개선 및 조정 - 발전 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운영 간 연계성 | [기술 1-1-1] [기술 1-1-2] [기술 1-1-3] [기술 1-1-4] <표 1-1-1> <표 1-1-2> | 0 | | | | |
| |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21) | 전임교원 확보율 (10) | - 전임교원 확보율 | <班 2-1-1a> <班 2-1-1b> | | | 0 | 0 | |
| | | | | <丑 2-1-2> | | | 0 | 0 | |
| | | | - 전임교원 보수수준 | [기술 2-1-1] <표 2-1-3> | 0 | | | | |
| 1 단 | | 교사 확보율 (3) | - 교사 확보율 | <班 2-2-1> | | | | 0 | |
| 계 | | 교육비 환원율 (5) | - 교육비 환원율 | <班 2-3-1> <班 2-3-2a> <班 2-3-2b> | | | 0 | | 0 |
| | | 법인 책무성 | - 법인 책무성 실적 | <班 2-4-1> <班 2-4-2> | | | | | 0 |
| | | (2) | - 법인 책무성 확보 계 획 | [기술 2-4-1] <표 2-4-3> | 0 | | | | |
| | | 구성원 참여·소통 (1) | - 법령상 위원회 등의 법적 요건(위원의 대 표성, 위원회 구성 절 차 등)에 부합하는 위 원회 구성 계획 - 법령상 위원회 등의 회의 운영 등과 관련 된 투명성 확보 계획 | [기술 2-5-1] [기술 2-5-2] | 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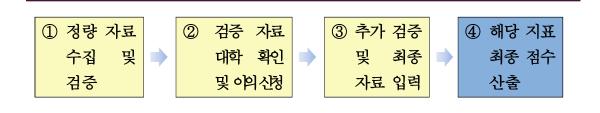
| | | | | | 자료 제출 시기 | | | | | |
|----|------------|-----------------------|--|--|----------|-----|----|----|-----|--|
| | | 진단 지표 | | | 정성 | | 정링 | | ļ . | |
| 구분 | 항목 | | 진단 요소 | 양식 번호 | 1단계 | 2단계 | 1: | 차 | 2차 | |
| | | | | | 3.27 | 7월 | 3월 | 4월 | 5월 | |
| | 수업 및 교육과정 | 교육과정·강의 개선 (10) | - 교양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체계적 노력의 전공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체제 구축과 주기적 환류·보완 등체계적 노력의 대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의 개선을 위한 체계적 노력 | [기술 3-1-1] [기술 3-1-2] [기술 3-1-3] | 0 | | | | | |
| | 운영 (20) | | - 강의 규모의 적절성 | <丑 3-2-1> | | | - | - | - | |
| | (20) | | - 시간강사 보수수준 | <班 3-2-2a> | | | 0 | | 0 | |
| | | | 1201-112 | <丑 3-2-2b> | | | | | 0 | |
| | | | - 수업 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 학생 평가의 적정성 및 운영 성과 | [기술 3-2-1] [기술 3-2-2] [기술 3-2-3] [기술 3-2-4] [기술 3-2-5] [기술 3-2-6] | 0 | | | | | |
| | 학생 | 학생 학습역량 지원 (5) | - 학습역량 강화 프로 그램 개발·운영 - 학습역량 강화 지원 체계 구축·운영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학습역량 강 화 프로그램 개선 실적 | [기술 4-1-1] [기술 4-1-2] [기술 4-1-3] [기술 4-1-4] <표 4-1-1> | 0 | | | | | |
| | 지원 (16) | 진로·심리 상담 지원 (3) | - 진로·심리 상담 프로 그램 개발·운영 - 진로·심리 상담 지원 체계 구축·운영 -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환류 체계(성과 분석 등)를 통한 진로·심리 상담 프로그램 개선 실적 | [기술 4-2-1] [기술 4-2-2] [기술 4-2-3] [기술 4-2-4] <표 4-2-1> | 0 | | | | | |

| | | 진단 지표 | 진단 요소 | | 자료 제출 시기 | | | | | |
|-------------|------------------|-----------------------------|---|--|----------|-----|----|----|----|--|
| | | | | 양식 번호 | 정 | 성 | 정링 | | ļ. | |
| 구분 | 항목 | | | | 1단계 | 2단계 | 1: | 차 | 2차 | |
| | | | | | 3.27 | 7월 | 3월 | 4월 | 5월 | |
| | | 장학금 지원 (5) | - 장학금 지급률 | <班 4-3-1> | | | | | 0 | |
| | | 취·창업 지원 (3) |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 취·창업 지원 체계 구축·운영 -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환류 체계(성과 분석등)를 통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개선 실적 | [기술 4-4-1] [기술 4-4-2] [기술 4-4-3] [기술 4-4-4] <표 4-4-1> <표 4-4-2> | 0 | | | | | |
| | | 학생 충원율 (10) | - 신입생 충원율 - 재학생 충원율 | <田 5-1-1> <田 5-1-2> <田 5-1-3> <田 5-1-4> | | | | 0 | | |
| | 교육 성과 (16) | 졸업생 취업률 (4) | - 졸업생 취업률 - 유지취업률 | <丑 5-2-1> <丑 5-2-2> | | | - | - | _ | |
| |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2) |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체계 운영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 사를 통한 환류 실적 | [기술 5-3-1] [기술 5-3-2] <표 5-3-1> | 0 | | | | | |
| 2 단 계 | 전공 및 교양 | 교양 교육과정 (핵심역량 제고) (5) | - 대내·외적 여건 변화 에 따라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의 구체적 설정 - 핵심역량 제고를 위 한 교양 교육과정 교 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 [기술 6-1-1] <표 6-1-1> | | 0 | | | | |
| | 교육과정 (11) | 전공 교육과정 (전공능력 배양) (6) | -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전 공능력의 구체적 설정 -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실적 | [기술 6-2-1] | | 0 | | | | |

| | | | | | 7 | 나료 제 | 출 시기 | | |
|----|---------------------------|-------------------------------|---|--|------|------|------|----|----|
| | | | | | 정 | 성 | | 정링 | ļ. |
| 구분 | 항목 | 진단 지표 | 진단 요소 | 양식 번호 | 1단계 | 2단계 | 17 | 차 | 2차 |
| | | | | | 3.27 | 7월 | 3월 | 4월 | 5월 |
| | 지역사회 협력 · 기여 (5) | 지역사회 협력·기여 (5) |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지역사 회 수요 분석 - 지역사회 협력·기여 활동을 위한 대학의 지원 및 실적 - 환류를 통한 지역사 회 협력·기여 활동의 개선·보완 | [기술 7-1-1] [기술 7-1-2] [기술 7-1-3] <표 7-1-1> | | 0 | | | |
| | 대학 운영의 건전성 (9) | 구성원 참여·소통 (5) | - 구성원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규정, 지침 등) 마련 - 주요 의사 결정에서 민주적 절차의 준수 - 주요 의사 결정에 학 생의 참여가 구현된 실적 및 노력 - 구성원간의 합의·소통 을 통한 의사결정 및 개선 사례 | [기술 8-1-1] [기술 8-1-2] [기술 8-1-3] [기술 8-1-4] | | 0 | | | |
| | | 건전성 (9) - 자 정 | 재원의 적정성: 등록 금 의존율 재정의 건전성: 학생 정원 1인당 교육투자 기여수입, 재학생 1인 당 교육비 | <班 8-2-1> <班 8-2-2> <班 8-2-3> | | | | | 0 |
| | | (4) | - 재정·회계 관리체계 운영 | [기술 8-2-1] <표 8-2-4> | | 0 | | | |

2. 정량 자료 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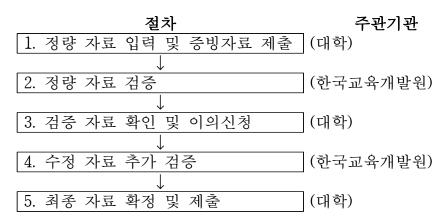
가. 정량 자료 진단 개요



1) 과년도 정량 자료



2) 최근년도 정량 자료



※ 과년도 관계기관 연계 자료 확인 및 최근년도 입력 자료 검증 후 별도의 이의신 청이 없는 대학의 경우, 마지막 절차인 최종 자료 확정 및 제출로 바로 이동함

나. 온라인 시스템에 의한 정량 자료 입력 및 조회 방법

□ 기능

- 본 온라인 시스템(http://uces.kr)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정량 자료를 항목별로 입력하여야 하고, 과년도 관계기관 연계 자료를 조회하며, 필요시 수정 요청할 수 있음

□ 사용자 지정

- 진단대상 대학이 확정되면 대학별 사용자 지정을 요청하는 공 문이 발송될 예정임
- 대학별로 한 명의 대표 담당자에게만 사용자 권한이 부여됨
- 사전에 등록된 휴대폰에 문자 전송으로 받은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함

□ 보안 조치

○ 매번 로그인할 때에 [개인·금융/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 의에 휴대폰 SMS 인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용법 안내

○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 매뉴얼은 홈페이지 (http://uce.kedi.re.kr)에 게시할 예정

□ 로그인 화면



※ 이 화면은 안내를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 정량 자료 등록 화면 예시



※ 이 화면은 안내를 위한 예시 화면입니다.

3. 자체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가. 작성 및 제출 개요

□ 제출 자료

- 인쇄본 3부: 자체진단보고서(통권)
 - 대학 개황 + 자체진단 결과 보고(지표별 순서대로 작성)
- 다음 파일이 저장된 이동식 저장매체
 - ① 자체진단보고서 통권 PDF 파일
 - ② 지표별 한글(HWP) 파일(**통권으로 편집된 한글 파일을 지표별로** 분할하여 파일 저장)
 - ③ 중빙 자료가 주석으로 처리된 지표별 PDF 파일(☞ 진단시스템에 탑 재하여 진단시 중점 활용) ※ 진단 대학 확정시 자체진단보고서 및 증 빙자료 PDF 파일 생성 방법에 대한 안내 및 실습 기회 제공 예정

□ 제출 방법: 방문 제출('18. 3. 27)

※ 진단 관계자가 인편으로 직접 제출(제출 장소 및 대학별 제출 시간대는 추후 공지)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① 작성 분량 준수를 위한 진단 지표별 내용 작성 순서

 ※ [기술](분량제한) → 〈표〉 → [증빙자료 목록] → [미주] 순으로 구성

 ※〈표〉, 증빙자료, 미주는 별도의 분량 제한 없음
- ② 자체진단보고서(통권) 인쇄본의 겉표지와 본문은 반드시 흑백으로 제출
- ③ 자체진단보고서 <u>편집 양식</u>(글자 크기, 글자체, 줄 간격, 장평, 자간, 용지 여백, 간지에 별도 내용 기재 불가 등), <u>〈표〉서식</u>, 각 지표별 [기술] 분량 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모두 준수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④ 지표별 주안점에 부합하여 증병력이 높은 자료를 중심으로 증빙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며, 가독성을 고려하여 내용 식별이 가능하도록 증빙 자료 파일(PDF)을 생성

⑤ 이동식 저장매체에 파일을 저장할 경우, 향후 안내될 파일명 부여 기 준을 준수 (예시) 2018#1단계#OO대학#일반대#자체진단보고서#진로심리상담지원#.pdf

□ 보고서 편집 지침

○ 제목 및 본문, 표 편집 양식

| | | 구분 | | 정렬/들여쓰기 | 글자모양/크기/농도 |
|--------|------|----|-----------|------------|-------------|
| 개 | 큰제목 | I | П | 가운데/들여쓰기 0 | 휴먼명조/18/진하게 |
| 요 | 중간제목 | 1. | 1.(항목명) | 양쪽/들여쓰기 0 | 휴먼명조/16/진하게 |
| 표 체 | 소제목 | 1) | 1.1.(지표명) | 양쪽/들여쓰기 10 | 휴먼명조/14/진하게 |
| 계계 | | 가. | (진단 요소) | 양쪽/들여쓰기 20 | 휴먼명조/12/진하게 |
| 741 | | | [기술] 제목 | 양쪽/들여쓰기 20 | 휴먼명조/11/진하게 |
| | | 본문 | | 양쪽/들여쓰기 10 | 휴먼명조/11/보통 |
| | 丑 | 제목 | | 가운데/들여쓰기 0 | 휴먼명조/10/보통 |
| | 717 | | 내용 | 양쪽/들여쓰기 0 | 휴먼명조/10/보통 |

○ 줄 간격 160, 장평 100, 자간 0

○ 용지 및 여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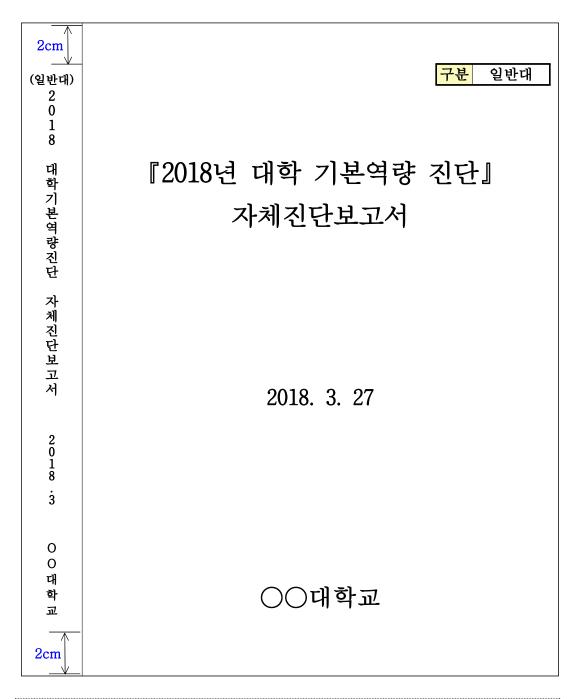
- 용지: 일반복사용지(크기: A4, 두께: 80g/m²)
- 여백: 왼쪽 및 오른쪽 30, 위쪽 20, 아래쪽 15, 머리말 및 꼬리말 15, 제본 0
- 머리말: 좌측 상단 00대학(교), 우측 상단 해당 장과 절(예: Ⅰ-1.
 대학 현황, Ⅱ-1. 발전 계획 및 성과)을 표기
- 0 기타
 - 보고서의 모든 기술 내용은 개조식으로 기술
 - 지표별 작성 지침으로 제시된 [기술]의 분량을 반드시 준수
 - 지표별 [기술]과 〈표〉의 내용 요소 및 서식의 임의적 변경 없이 빠짐 없이 기술

○ 제본 및 인쇄

- 제본: 겉표지 색상은 백색의 소프트커버로 제본하고, 지표별로 구분 가능하도록 색 간지를 삽입(간지에 내용 기재 불허)
- 인쇄: 1도 인쇄, 양면 복사

나. 자체진단보고서 작성 양식(안)

[표지 규격 및 양식]



【작성방법】

- 1) 표지는 백색의 소프트커버로 제본
- 2) 표지 옆면은 위, 아래 2cm 띄우고 위의 예시를 참조하여 제본
- 3) 상기의 기본문구 배치의 이동 및 내용 수정·추가 불가
- 4) 글꼴은 검정색 휴먼명조체를 사용하며, 대학명에 따라 글씨 크기는 조정 가능

[속지 양식]

구분 일반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체진단보고서

2018. 3. 27

이 보고서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에 따른 보고서 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사실과 다른 허위 및 과장의 내용이 보고서와 증빙 자료에 일체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대학교 총장 (성명) (직인)

【작성방법】

- 1) 기본문구 배치의 이동 및 내용 수정·추가 불가
- 2) 글꼴은 휴먼명조체 사용, 대학명에 따라 글씨 크기는 조정 가능
- 3) 총장 직인이 날인된 속지 원본을 제출용 인쇄본 3부에 각각 포함시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양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인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H인 |
|---|-----|
| | |
|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
| OL JUL | |
| - 아래 - | |
| | |
|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행정 처리 및 업무연락(연락, 공지 전달 ! | 등) |
| 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 성명, 소속기관,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 |
|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 |
| 라. 동의 거부 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관련 안내 및 진단 운영 등 p | 백정 |
| 업무에서 지장이 초래됨 | , , |
| 마구에서 사용이 소대음 | |
| 004017 081 01 | |
| 2018년 3월 일 | |
| ○○대학교 총장 : (서명/9 | 인) |
| | |
| | |
| 군교육개박워장 귀중 | |

【유의사항】

- 1) 자체진단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인사의 조직 및 연락처의 기재 시, 반드시 당사자들에 게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사전에 제출 받은 후에 기재
- 2) 자체진단보고서 제출시 총장 외에 관계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대학에서 자체 보관(보존 기간: 작성 시점으로부터 5년)

[목차 양식]

- 목차 -

| I. 대학 개황 ······(시작 | 페이지) |
|--|--|
| 1. 대학 현황(시작 | 페이지) |
| 2. 대학 연혁(시작 | 페이지) |
| 3. 대학 기구표(시작 | 페이지) |
| 4. 정부재정지원사업 실적(시작 | 페이지) |
| 5. 단과대학 개황(시작 | 페이지) |
| 6. 자체진단 추진 현황(시작 | 페이지) |
| Ⅱ. 자체진단 결과 보고(시작 | 페이지) |
| ※ 항목·지표별 순서대로 작성(항목·지표 번호와 명칭 기제) | |
| | |
| 1. 발전 계획 및 성과(시작 | 페이지) |
| 1. 발전 계획 및 성과 ······(시작 1.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시작 | |
| | 페이지) |
| 1.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시작 | 페이지) 페이지) |
| 1.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시작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시작 |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
| 1.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시작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시작 2.1. 전임교원 확보율 ·····(시작 |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
| 1.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시작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시작 2.1. 전임교원 확보율 ······(시작 2.4. 법인 책무성 ······(시작 |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
| 1.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시작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시작 2.1. 전임교원 확보율 ·······(시작 2.4. 법인 책무성 ········(시작 |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
| 1.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시작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시작 2.1. 전임교원 확보율 ······(시작 2.4. 법인 책무성 ······(시작 1) ·······(시작 |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
| 1.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발전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시작 2.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시작 2.1. 전임교원 확보율 ·····(시작 2.4. 법인 책무성 ·····(시작 1) ······(시작 2) ······(시작 |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

[개요 체계 구분]

- ※ Ⅰ. 대학 개황의 개요 체계: Ⅰ, 1, 1), 본문
- ※ Ⅱ. 자체진단 결과 보고의 개요 체계: Ⅱ, 1(항목), 1.1(지표), 진단 요소, [기술], 본문

[대학개황 양식]

I. 대학 개황

1. 대학 현황

| 총장 성명 | | | 전화번호 | | | | | |
|---------------------------------------|---------|------|----------|-----|------------|----|---------|-------|
| ————————————————————————————————————— | | | 신확인의 | - | | | | |
| 설립자 성명(사립) | | | 설립연도 | | | | | |
| 종류 | | | 본교/캠퍼스 | | | | | |
| 소재지 | | | 설립유형 | | | | | |
| | 학생수 | | | 교직 | 원수 | | | |
| 편제정원 | 재호 | 학생 | 7101-701 | |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 | n] — 6] | 7] ó] |
| | 정원 내 | 정원 외 | 전임교원 | 미선위 | 김꼬원 | 직원 | | |
| 명 | ⊶ | 玛 | 玛 | | 명 | 명 | | |
| | 단과대학 | | | | | 개 | | |
| 한파네티 박파 무 | 학과(부) | | | | | 개 | | |
| | '16년 결산 | | | | | 천원 | | |
| 재정 현황 | '17년 결산 | | | | | 천원 | | |
| | '18년 예산 | | | | | 천원 | | |
| 주소 | | | | | | | | |
| 홈페이지 | | | | | | | | |

2. 대학 연혁

...(중략)...

- 6. 자체진단 추진 현황
 - 1) 주요 연락처

...(이하 생략)...

[지표별 자체진단 결과 보고 양식]

₽. 기본 편집 폰트 예시

| II. 자체진단 결과 보고 (가운데정렬/휴먼명조/18/진하게) | | | | | | |
|---|--|--|--|--|--|--|
| 1. 발전 계획 및 성과 (양쪽정렬/휴먼명조/16/들여쓰기0/진하게) | | | | | | |
| ∨1.1. 특성화 계획 또는 중장기 계획 등 (양쪽정렬/휴먼명조/14/들여쓰기10/진하게) | | | | | | |
| ✓ ✓ 진단 요소 1: 발전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적절성(양쪽제발취임조기의들에서) | | | | | | |
| ∨ V[기술 1-1-1] 발전 계획 수립의 적절성 (양쪽정렬/휴먼명조/11/들여쓰기20/진하게) | | | | | | |
| | | | | | | |
| _ | | | | | | |
| | | | | | | |
| 〉 ∨∨진단 요소 2: 발전 계획의 추진 실적 및 성과 | | | | | | |
| ▼ ▼ 선턴 효소 2. 발전 계속의 구선 결식 옷 3와 (중략) | | | | | | |
| | | | | | | |
| (새로운 폐이지) | | | | | | |
| [증빙자료 목록] | | | | | | |
| 구분 증빙자료 번호 자료명 | | | | | | |
| [기술 1-1-1] | | | | | | |
| [기술 1-1-2] | | | | | | |
| [기술 1-1-3] | | | | | | |
| [기술 1-1-4] <표 1-1-1> 2015-2018학년도 입학정원 운영표 | | | | | | |
| <표 1-1-2> | | | | | | |
| > | | | | | | |

[미주]

1)

2)

₽. <표>가 포함된 지표별 내용 구성 방법

4. 학생 지원4.1.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진단 요소 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술 4-1-1]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략).....

〉 진단 요소 3: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 ※ 편람 순서에 따른 위치에는 〈표〉제목만 기술하고 내용이 기재된 페이지 명시 (위아래 한줄 띄우기/가운데정렬/휴먼명조/11/들여쓰기0/진하게/밑줄 강조)
- ※ 모든 [기술]의 내용 기재가 끝난 이후 새로운 페이지에서 해당 〈표〉의 내용을 작성

[기술 4-1-3]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정량적·정성적 실적

(새로운 폐이지) 진단요소 3의 〈표 4-1-1〉의 내용을 기재

〈표 4-1-1〉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 학년 도 |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명 | 주요 내용 | 재학생 수 | 참여 학생 수 | 재학생 대비 | 프로그램 예산 |
|---------|------------------|---------|-------|------------|---------------|------------|
| | | | (명) | (명) | 비율(%) | 집행액(천원) |
| | | | | (B) | | |
| 2015 | | | (A) | (C) | | |
| | | 소 계 | | (B+C) | [(B+C)/A]×100 | |
| | | | | | | |
| 2016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 |
| 2017 | | | | | | |
| | | 소 계 | | | | |

| > | |
|-----------|--|
| [중빙자료 목록] | |
| (생략) | |
| > | |
| [미주] | |
| (생략) | |

다. 보고서 지표별 PDF 파일 작성 방법 안내(관련 동영상 제공 예정)





〈프로그램 활용 방법〉



Acrobat Reader DC 활용 기능

1 편진사외

2. 주석 → 클립 모양 버튼(파일 첨부)

3. 압정 표시(주석) 위치 조정

1. 편집 사용

Acrobat Reader DC or Pro로 pdf 파일 편집 작업 시 편집 사용 기능 설명

2. 주석 → 클립 모양 버튼(파일 첨부)

Acrobat Reader DC or Pro로 pdf 파일 편집 작업 시 편집 사용 기능 설명

3. 압정 표시(주석) 위치 조정

Acrobat Reader DC or Pro로 pdf 파일 편집 작업 시 편집 사용 기능 설명

〈프로그램 활용 방법〉



하컨오피스 하극 확요 기는

1. 주석 (미주(후주)) 기능

2. 인쇄 기능(PDF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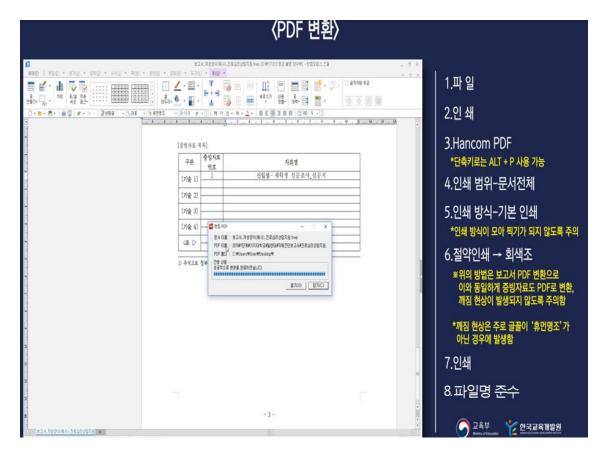
1. 주석 (미주(후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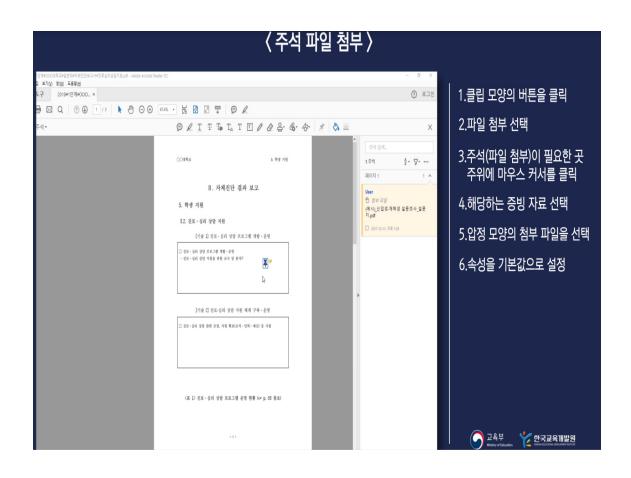
보고서 작성 간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할 위치에 주석(미주(후주)) 삽입이 필요하여 관련 한글 기능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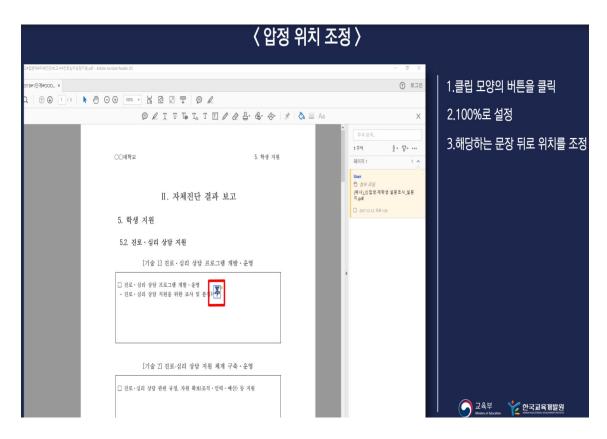
2. 인쇄 기능(PDF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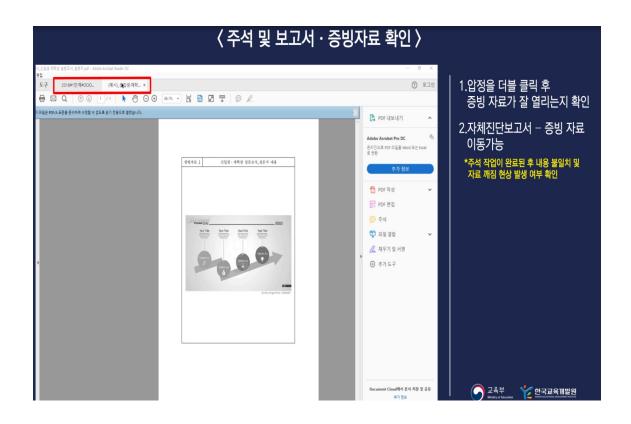
문서 작업(보고서,증빙자료 등)이 끝난 후 PDF 파일로 변환하기 위해 한글에 인쇄기능 활용 시 유의할 점 설명

| 〈 보고서 작성 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할 위치에 | '미주 삽입'〉 |
|--|---|
| YAM RESPONDED SEED - YAMD - COLD - AND - AND - YESS - SEED - SE | · 1.입력 |
| D. b. E. G. F. C. 2009 A. C. | 2.주 석 |
| (五 1) 건로・심리 상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 변동 전로-성리 상당 프로그램 운영 현황 기계 | 3.미 주 *단촉키로는 CTRL + N, E 사용 가능 |
| (a) (b) (c) (c) (d) (d) (d) (d) (d) (d) (d) (d) (d) (d | 4.주석으로 첨부될 증빙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 기재 |
| 2017 <u> </u> | 5.증빙자료 번호 및 자료명 기재 *증빙자료와 미주번호가 일치해야 함 *증빙자료와 미주의 수가 일치해야 함 |
| [중영국교 목명] | |
| 구분 축임자료 자료명 [기술 1] 1 스윙링·제작정 설문조사,설문제 | |
| [7/6 1] | |
| [7(金3) | - |
| [7] (4) | |
| (A D | |
| 1) 주석으로 청부월 충청자로에 다한 간약한 성정 1) 구석으로 청부월 충청자로에 다한 간약한 성정 | 교육부 설치교육개발원 Maday of Macaday Commissions Assessment |









부록

전임교원 운영 실태조사 양식

※ 다음 사항은 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진단 위원에게 제공되지 않 고 진단 결과에도 반영되지 않음

1. 정년/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 현황

- ㅇ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 현황
 - ※ 아래 <표>의 내용을 활용하여 현황을 간략히 기술

〈표〉 정년/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 현황

(단위: 명, %)

| 학년도 | 구분1 | 직급 | 인원 ² | 소계 ³ |
|------|-----------------|-----|-----------------|-----------------|
| | | 교수 | | |
| | 정년 트랙 | 부교수 | | 명(%) |
| | | 조교수 | | |
| 2016 | | 교수 | | |
| | 비정년 트랙 | 부교수 | | 명(%) |
| | | 조교수 | | |
| | 합계 ⁴ | - | _ | 명(100%) |
| | | 교수 | | |
| | 정년 트랙 | 부교수 | | 명(%) |
| | | 조교수 | | |
| 2017 | | 교수 | | |
| | 비정년 트랙 | 부교수 | | 명(%) |
| | | 조교수 | | |
| | 합계 ⁴ | - | _ | 명(100%) |
| 2018 | | 교수 | | |
| | 정년 트랙 | 부교수 | | 명(%) |
| | | 조교수 | | |
| | | 교수 | | |
| | 비정년 트랙 | 부교수 | | 명(%) |
| | | 조교수 | | |
| | 합계 ⁴ | - | - | 명(100%) |

¹ 대학 자체 규정이나 기준 등을 적용하여 구분함

² 해당 인원수를 기재함

³ 연도별 정년 트랙 교수 인원수와 비정년 트랙 교수 인원수의 소계를 기입하고 전체 교수 인원수에 서 정년 트랙 교수 인원수의 비율과 비정년 트랙 교수 인원수의 비율을 입력함

⁴ 연도별 정년 트랙 교수 인원수와 비정년 트랙 교수 인원수의 합계를 입력함

[※] 정년/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현황은 각 학년도 4월 1일자 기준임

2.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관련 제도 운영 현황

□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관련 규정

ㅇ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 관련 규정 또는 지침의 내용

□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운영 실태

-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종류 및 채용 기준
- 0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임용 계약 및 조건
-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임금 및 처우, 업적 진단
- ㅇ 기타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의 인사관리 제도

[증빙자료]

- (1) 비정년 전임교원 관련 규정 및 지침
- (2) 기타 관련 자료

[참고사항]

- (1) 2016-2018년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성함
- (2) <표>의 경우 지정된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되, 교원 구분 및 직급 등에 대해서는 대학의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함
- (3) 별도의 분량 제한은 없음

연구자료 CRM 2017-117-02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설명회 자료잡: 일반대학

발 행 2017년 12월

발 행 인 원장 직무대행 류방란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교학로 7 (27873)

전화: (043) 530-9114 주 소

FAX: (043) 530-9819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년 6월 13일, 제16-35호

인 쇄 처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02)6401-8891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